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

(총괄보고서)

장혜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8-01

2008 연구보고서-13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2008.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 장혜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영란 (본원 전문연구위원)

김필숙 (본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18-01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8-02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8-03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한국조세연구원
08-18-04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8-18-05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용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hil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변숙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가정 양육을 대신할 사회양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육서비스는 사회적재화이나 외부성(externality)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로 공공 부문에서 생산·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보육정책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더불어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보육관련 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중심 지원으로는 고용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시간 근로의 증가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보육욕구의 변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한국의 보육지원 제도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보다 넓었다는 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상 가구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선별주의적이라기보다 재정지원에 있어 취약 집단을 우선시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육정책 목표의 핵심은 일·가정의 양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아동에게는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과 부모의 취업형태 등 개별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아동돌봄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돌봄 지원이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자의 근로시간 다양화 등으로 인한 가정내 보육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히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둘째, 가족 내 아동 돌봄 시장에 대해 실태와 수요에 근거하여 가족 내 돌봄과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가족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민간 아동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및 인력 양성체계를 파악하여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개념 정의

가.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 도우미

- 가정내 양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을 포함하는 가정 중심 보육(Home-Based Child Care)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공식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육아지

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과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 가정보육시설은 공식보육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연구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가정 중심 보육의 보육제공자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서문희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중심 보육을 개인양육지원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자로는 이웃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개별방문지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제내니협회에서 가정내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크게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Nursery Nurse, 오페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으로 나누고 있다. 가정 중심 보육의 제공체계는 크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유형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공공보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리유형은 대부분 민간 시장에 의한 것으로 민간영리사업자가 베이비시터인력과 희망부모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이다.
- 가정중심 보육에서 보육제공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아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인척과 그 외 사람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제공자를 아동돌봄도우미라고 하고 있는데 비공식 보육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주로 베이비시터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부지원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모든 비공식 보육제공자가 아동돌봄도우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화

- 가족내 아동돌봄은 크게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공식 돌봄의 돌봄제공자는 주로 어머니나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등이다. 최근에는 부모, 도우미 등 급여를 지불받는 형태의 가족내 돌봄도 늘어나고 있다. 공식영역의 가족내 아동돌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YMCA 아가야 사업 등이 있다. 민간 영리기관에서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나 관리 감독 등이 전무한 실정이며 베

이비시터의 자격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의 수준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되 국가는 민간영리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한편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를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경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수행체계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관련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총괄하는 주제는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로 설정하였으며 총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과제1.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제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한국조세연구원)」, 과제3.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제4.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국제심포지움 개최는 앞의 과제1, 과제2, 과제3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인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들이 각각 수행한 연구결과를 총괄한 보고서의 특징을 갖는다.

4.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을 정의하였다. 가정내 양육의 의미와 가정 중심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돌봄도우미와 아동돌봄 제도화의 수준에 대해 정의하였다.

- 둘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우선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전국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자녀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및 인력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내 아동 돌봄지원 제도 및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종합 정리하였다.
- 셋째, 한국과 외국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과 경제적 지원제도,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및 베이비시터와 업체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정책과 관련한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넷째, 가족내 아동돌봄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내 아동 돌봄 실태는 아동 돌봄 형태를 직접돌봄,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비율에 대해 아동연령 및 소득별,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 돌봄형태별 선택사유,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유료가정보육이용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통해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 다섯째, 보육이용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비용지원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파악해 내하고자 하였다.
- 여섯째,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화 과제들로 아동돌봄 서비스 다양화, 경제적 지원,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5.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조사
 - 서울과 경기지역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및 이용 행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 아동돌봄 서비스 공급자 조사

- 전국의 아동돌봄도우미와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중 임의 할당 추출을 통한 업체 50개와 아동돌봄도우미 100명을 대상으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및 업체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다.

□ 국제심포지움

-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파악함으로써 본 협동연구의 주제인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 이슈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돌봄 정책 아젠다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주요 발표 주제는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 “유럽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 “미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 등이다.

□ 협동연구 관리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자문회의

- 3개 기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협동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전반에 대한 자문단으로 활용하였다. 각종 보고회 등에서 협동연구 관리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을 함으로써 개별과제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협동연구 전체 흐름과 개별과제 수행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 관련

- 아동보육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로는 서문희 외(2005)의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보고」가 대표적이다. 서문희 외(2005)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시설위탁보육은 30.8%, 친인척보육은 14.7%, 유료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 자녀 교육 및 보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수(초등학교 3학년 이하), 거주 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취업형태와 자녀 보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의 취업상황, 즉 출·퇴근 시간이나 직종 등에 따라 자녀 보육 실태와 만족도, 욕구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상황, 즉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 또는 직종 등에 따라 자녀 보육 실태와 만족도, 욕구 등에 차이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 아동돌봄 서비스 공급자 관련 연구는 베이비시터 업체 및 인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서문희·이상현, 2002)”, “한국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서문희외, 2007)” 등이 있다. 두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은데, 이용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은 높은 편이며 이용아동의 연령은 3세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베이비시터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법적인 위치가 불분명하며 가정의 사업주가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베이비시터의 실태를 보면 여성이 많으며 40대가 다수이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아동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효과 관련

- 가정내 보육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 중, 우선 이옥(2004)은 0-1세아의 가정 보육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써의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민자 외(2006)는 아이돌보미 사업 도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윤옥(2007)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해온 가정과건 보육서비스 사업의 보육도우미와 무료 보육도우미 이용가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 보육서비스는 사적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이다. 따라서 공공재처럼 정부가 제공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에는, Heckman의 분석법에 따라 연령대별 투자효과를 추정하여 영유아기 투자가 다른 연령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효과에 비하여 4~8배의 수익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유희정(2006)의 연구와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양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해질 것을 감안한 보육서비스의 시장 공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현진권(2004)의 연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현숙(2005)은 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모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책임지기에는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민간의 주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 보육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owell(2000)은 아동보육비용과 임금이 기혼여성의 근로 및 아동보육형태(센터, 돌보미, 친척, 남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임금은 기혼여성의 근로형태에 대한 선택 가능성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고, 각각의 아동보육형태에 대한 가격은 근로와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Lokshin(2004)은 아동양육, 러시아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가구 수요에 대한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가족수당은 아동양육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족수당을 아동양육비에 대한 보조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강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aujot(1997)의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각 가정의 근로 및 양육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일상 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일과 양육의 형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족의 직접양육, 공식적 기관에 의한 양육, 비공식 양육 등 3가지 형태로 융통성있게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I. 한국의 아동돌봄 지원 정책 현황

-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이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최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육시설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는 영아 보육, 유아 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등 대상에 따라 구별되고,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 운영 시간과 시각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대상만을 보육하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차별화되고 있다.

- 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 제도로는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 제도가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육아비용지원 제도인 차등보육료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계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2006년 2월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전액 지원, 만5세아 보육비용 전액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장애아 보육비용 전액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의 사이에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재정에 대해 살펴보면 공보육 실현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총예산은 2조 2,918억원으로 2002년에 비하여 약 5.3배가 증가했다. 2007년 보육예산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보육료 지원 예산 역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방과 후 이용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보육료 지원율은 2002년 21.1%에서 2005년 44.2%로 증가했다.
- 그러나 정책 변화 및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로 보육수요자가 보육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를 표명하는 보육정책에서 정부의 낮은 보육비용 부담의 문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보육예산이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는 문제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했다. 또한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아 보육예산의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예산의 균형

있는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보육예산의 47% 정도가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모 부담 보육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IV. 외국의 정책 동향

- OECD 국가의 보육서비스 관련 보조금의 형태나 수혜범위 등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급자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의 수혜계층이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띤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바우처(voucher)와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수요자 보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급자 보조금을 주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를 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고용주에게 피고용인 가구 아동의 보육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보육선진국들은 몇 가지의 정책 수단을 혼합하여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현재 OECD의 영유아 돌보미 관련 사업은 ECEC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운영·관리·분석되고 있는데, ECEC는 재원, 운영시간, 서비스 내용에 따른 구분 없이 법정취학연령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육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
- ECEC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한 차이 등 각 국가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관련 제도 또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공적 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대신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 ECE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수혜자 원칙에 따르나, 소득·자산 등에 근거하여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CEC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 내 비용부담의 규모는, 특히 0-3세에 있어서, 국가별로 재정, 복지프로그램 수준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각국의 ECEC 제도 및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베이비시터 및 Nanny의 고용이 영유아 보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데, 일부 주에서는 이들 가정내 고용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바우처 방식을 이용해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Head Start 프로그램 등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몇 가지 특징을 2004년 기준 연령별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를 통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적인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해결하고 4세 이후부터 공공 유치원에 등록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2-3세 아동의 경우 가정내(at home) 보육 혹은 친척에 의한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줄어들고 가정내 보육 또는 유아원(nursery school)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3-6세 아동의 경우, 3세 아동은 3%, 4세 아동은 약 16%가 pre-kindergarten을 이용하고 있으며 5세 아동은 90% 정도가 유치원(kindergarten)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아동 보육비용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 및 부양 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가 있다. 세제지원과 더불어 아동 보육과 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을 재원으로 하여 각 주별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아동돌보미와 관련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시간과 로드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 영국의 연령별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첫째, 1세 미만 아동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 보육되고 있다. 둘째, 1-3세 아동은 30%가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모(childminder) 서비스를, 30%는 놀이집단(playground)을 이용한다. 셋째,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

료 조기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주로 민간 부문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이나 친지 등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외로 가정보육모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며 유모(nanny)나 오페어(au pair)를 고용하기도 한다. 유모 등과 같이 보육을 위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나 보조금 등 국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한편 공적 지원을 받는 ECEC로 Sure Start program, 유아원(nursery education), 예비학교(reception class)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로가족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를 통해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70%, 최고 135파운드까지, 2명인 경우에는 200파운드를 한도로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통적으로 유모제도가 발달되어 온 프랑스는 이를 체계적인 가정탁아제도로 연결시켜 가정내 보육을 제도화하였으며, 가정내 보육수당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 공공 부문의 ECEC 제도로 보육시설(Creche)과 모성학교(Ecole Maternelle)가 있다. 이 외에 부모 또는 기타 가족구성원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한 사적 보육서비스는 등록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와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사적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서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과 등록 보육모 고용지원제도(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nante maternelle agreee)가 있다.
- 스웨덴은 아동보육 분야 뿐 아니라 복지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1세 이하 아동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받은 어머니에 의해서 보육되며 1-6세 아동은 파르스콜라(forskola)유치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파르스콜라 이용료는 첫째 아동의 경우 가구 소득의 3%, 둘째와 셋째 아동의 경우 각각 2%와 1%가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실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가족종일보육(family day care) 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치원 이용료와 동일한 상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스웨덴은 잘 정비된 복지제도 즉, 충분한 기간 동안 보장되는 육아휴직과 전일제 파르스콜라 등이 마련되어 있어 베이비시터·유모(nanny) 등

사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 노르웨이는 0-6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도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이다. 공적 ECEC 서비스 중 하나인 barnehage에 의해 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200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0-1세 아동은 주로 부모에 의해 보육되는데, 이는 잘 정비된 육아휴직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3세 아동 중 42%는 부모에 의해 전일 보육되고 48% 정도가 ECEC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3-6세 아동의 88%가 ECEC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다.
 - 노르웨이는 유치원 및 기타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10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공적 ECEC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 영국 및 프랑스는 베이비시터 등의 이용이 활발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베이비시터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중 프랑스의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이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현황 및 기타 경제적 효과 분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보육모 및 일시적 또는 단시간의 보육서비스 충족을 위한 방문(drop-in) 형태의 시설보육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도 프랑스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시터자격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시간제 베이비시터가 반드시 보육 관련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일제 내니 등은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시터, 내니와 같은 가정내 보육 제공자에게 현실적으로 일률적 자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 미국은 민간 관련 업체가 연령, 흡연, 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시터의 연령, 성숙도, 베이비시터로서의 경험, 자녀의 연령과 수, 경험, 자녀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 등을 고려하여 시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결정하게 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다. 내니에 대해서도 정해진 자격조건은 없고, 사업체마다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대부분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hild Care Referral and Resources Agencies: 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다.
 -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 인증 신청 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등이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으로 적용된다.
 -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 제공자 대부분이 등록 보육모인데, 등록보육모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가정내 고용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등록보육모는 모자보건국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을 부여하는데, 가족상황, 물리적·환경적 조건, 이전 직업, 학력, 아동들과 함께 했던 교육적 활동이나 기타 활동, 희망하는 보육 유형을 기록하여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격을 받은 후 보수교육 역시 받아야 한다.
 - 일본은 전국베이비시터 협회에서 단기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을 통해 아동보육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에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편 8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또는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자발적인 등록대상이 된다. 미국 역시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등의 일부 주에서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하고 있다.
- 가정내 돌봄에 대한 비용지원관련 정책을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로,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만큼 비용도 지원한다. 프랑스의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양육수당(APE),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 가정내 보육수당(AGED)등이 있으며 이는 2004년 PAJE로 통합되었다.

- 미국은 보육 공급자와의 계약방식에 의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서 친인척 보육 및 시터에 의한 비공식 보육도 부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친인척과 비혈연, 즉 베이비시터/내니를 포함하고 있다.
- 캐나다도 주정부의 사회 부조 예산은 내니 및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내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제공되며, 아동 수당 역시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일본은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리 베이비시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 단기 시간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로서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종일제 등 장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각종 노동법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대상이 된다. 각국의 일자리로서의 시터 인력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가정에서의 1인 고용자도 근로자로서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한다. 노동법전(2003) 중 가사사용인에 관하여 적용하는 조항으로는 노동절 휴무,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가족과 관련된 결근할 권리 및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
- 미국은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고용법은 가정내 근로자에 대해서 그들이 반일제 근무이건 전일제 근무이건 그리고 입주하거나 출퇴근하거나 모두 법 아래 같은 권리를 가짐을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동을 보육하는 시터는

가정내 근로자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 영국은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으며(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50~60시간이 보편적),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의 적용을 받는데, 주당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받을 경우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부모는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인에 대신하여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V.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및 공급자 조사

1.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조사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과의 관계 및 연령, 학력,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조사응답자 전체 1,000명 가운데 995명이 아동의 어머니이다. 나머지 5명은 아동의 아버지이며 모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족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이며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각각 55.9%, 42.7%였다.
- 응답자 중 취업자는 40.4%, 가사양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59.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아동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아동수는 평균 1.66명이며 2명(50.5%), 1명인(41.8%)인 경우가 많았다.
- 응답자의 배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였고 학력수준은 대졸이 68.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98.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180만원-350만원 미만(45.9%), 350만원-500만원 미만(41.0%)이 많았다.

나. 돌봄형태 관련 기본적 특성들

- 자녀의 수와 순번을 포함한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가장 많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이용 서비스 조합은 ‘직접돌봄+시설돌봄’, ‘직접 돌봄’, ‘직접돌봄+유료가정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돌봄 및 이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914로 전체의 약 91.4%를 차지하고 있었다.

- 한편,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내 직접 돌봄 이용률이 낮아지고 시설보육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료가정돌봄 이용 빈도는 1-2세에 가장 높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 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경우 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요구되는 보육서비스가 유료 가정내 보육에 의해 충족되다가, 이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시설돌봄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다.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 아동 돌봄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하루 중 아동을 돌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직접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8.4%, 시설돌봄이 전체의 57.4%,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15.0%, 친인척돌봄은 8.1%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라 조사된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연령별 돌봄형태를 살펴 보면 직접돌봄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우 높았고 시설돌봄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아졌다.
- 소득에 따른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득의 경우, 시설돌봄은 100-150만원미만 일 때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다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용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월평균소득과 돌봄형태는 응답자의 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라.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 보면, 오전 시간 대에는 직접돌봄이 가장 많았고 낮 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

대를 기점으로 하여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활동이 돌봄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 이전인 2~3시를 기점으로 직접돌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시설돌봄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일 수 있음도 나타내고 있었다.

- 아동의 연령과 하루 시간대별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돌봄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설돌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세이하 아동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유료가정돌봄이 시설돌봄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개별 돌봄이 선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세 아동의 경우 1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설돌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돌봄시설 운영시간의 제한과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시설에 장시간 두는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1세이하 아동의 경우 처럼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직접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 등의 개별 돌봄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3세이상 아동과 4-5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형태가 1세 이하 아동과 2세 아동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직접돌봄보다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아동들의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오후 3시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지는 아동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조사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 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그러나 비취업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높는데,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인척돌봄은 취업자의 경우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친인척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보다 이용율이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형태를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는 하루 시간대 대부분 직접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설돌봄으로 나타났다.
- 2세 아동의 경우 1세 이하 아동과 유사한 돌봄형태를 보였다.
- 3세 아동은 1세 이하, 2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전10시-오후3시에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직접돌봄보다 약간 상회했다. 이는 3세 아동의 경우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세 이하, 2세 아동의 경우와 달리 취업자의 경우 오후 6시에서 7시에 시설돌봄이 직접돌봄보다는 적지만 유료가정돌봄과 친인척돌봄보다는 높았다. 이것은 직접돌봄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에서 돌봐주는 것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4-5세 아동의 경우,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낮 시간대 시설돌봄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은 비취업자의 경우 매우 낮았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이용비율이 낮다. 다만 오후 3시부터 오후6시까지 16%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돌봄 시설이용이 끝난 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마.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 4가지 돌봄형태 각각에 대하여 선택한 이유 역시 조사되었다.
- 직접돌봄의 경우 많았던 응답은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이었다.
- 시설돌봄을 택한 이유로 많았던 응답은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시

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음이 나타났다.

-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한 사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였는데, 직접돌봄의 경우처럼 유료가정돌봄도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많아 직접 돌봄을 하는 이유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한편, 사례수가 적었으나 시설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에 관해서도 조사되었다. 결과,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돌봄의 경우 운영시간 문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비용과 교육적 효과 부분에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 돌봄담당자와 시설유형

- 친인척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돌봄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친인척돌봄의 경우 대다수가 아동의 조부모였으며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 유형은 어린이집(57.9%), 유치원(30.0%)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주변의 소개를 통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와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즉, 실제로 가정에서는 유료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업체를 통하기 보다는 개인적 경로를 통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월평균 비용은 친인척돌봄의 경우 23만8천원, 시설돌봄은 월평균 이용비용은 2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과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16만7천원, 베이비시터는 66만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 실태

1)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

- 유료가정돌봄 중 아이돌보미가 아닌 유료 베이비시터의 경우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을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 그리고 베이비시터의 업무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베이비시터의 평균 연령은 47.3세이며 40대가 50.0%로 가장 많고 학력은 고졸(63.1%)이 가장 많았다. 베이비시터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없다고 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도 39.0%로 나타났다.
- 베이비시터의 업무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아이와 놀아주기’, ‘먹이기’ 등이 많았고,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와 ‘가사’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시터가 해주기를 바라는 업무로 ‘가사’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여 베이비시터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2)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 기준

-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해 만족도에 있어서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베이비시터 업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입회비용,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용 비용, 베이비시터 관련 불만접수처리, 안전사고시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해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인성, 육아경험,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 등이 베이비시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시터에 관하여 학력, 건강진단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증명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동을 돌보는데 학력보다는 자격

증이나 교육이 더 신뢰할만하며 정신병력, 건강, 신원보증 등을 중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 아동돌봄 서비스 공급자 조사

가. 아동돌봄서비스 업체 실태

- 조사대상인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총 50개소로, 서울·경기 지역에 54%가 소재하고 있었고, 설립연도는 2년 이상인(72%)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근직원 10명(54%)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업체(58%)들이 프랜차이즈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의 42% 정도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52% 정도가 유료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관련 업체가 운영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는 대부분 여성(97.3%)이고 그 중 40대 이상(62.5%)이 많고, 학력은 고졸 이상(71.6%)이 많았다. 또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67.8%로 전반적으로 아동돌봄도우미의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 업체의 인력모집은 우선 본인의 희망에 따른 접수가 94%로 가장 많았다. 모집 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인성(84%)이며, 학력 수준은 고졸 이상(70%)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업체(80%)가 경력을 고려하며, 연령 제한도 82%로 나타나고 있어 도우미의 경력과 연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모든 업체가 도우미의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도우미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선호하는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78%)이 가장 많았고, 모집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은 인터넷 광고(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시 약관(96%)이나 관련 약식을 사용하여 서면계약(90%)을 하고 있어 조직의 공식화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부분의 업체(98%)가 새로 등록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담당자는 자체 직원(57.1%)으로

교육하거나 외부 강사(40.8%)를 활용하고, 교육 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교육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반면에 교육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여 업체(82%)들은 대부분 교육이 아동돌봄도우미의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73.5%로 보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업체 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3시간당 2~3만원(64%)으로 시간당 추가 비용은 5천원(88%)으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았다. 한편 종일제의 경우 9~12시간(60%)로 임금은 3~5만원 미만(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일제 한 달은 90~100만원(50%) 정도로 파악되었다. 보험 등록의 경우 아동 대상 보험에는 업체의 64%가 가입되었고, 아동돌봄도우미는 46%, 회사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6%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단체 가입 지원의 필요성은 94%가 공감하고 있어 관련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

- 조사대상자인 아동돌봄도우미는 100명으로 30~40대가 64%였으며, 2년 미만 경력자가 77%로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57%, 초대졸 이상이 43%였으며, 응답자의 84%가 기혼자로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 아동돌봄도우미의 근로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돌봄도우미의 48% 정도는 고정적인 종일제이며, 시간제가 35%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도우미의 활동이 점차 전업의 형태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50%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50%)이며, 주 평균 근로 횟수는 응답자의 56%가 5회였다. 월 급여는 응답자의 63%가 50~100만원, 16%는 월 30~50만원 정도였다. 월 평균 급여로 50~100만원을 받는 이들의 특성은 30대(74.1%)의 1~2년 경력자(73.2%)로 초대졸 이상(69.8%)임을 고려해 볼때 저임금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전 직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무직이고, 직업이 있던 경우의 28%는 아동 양육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

타나 이는 도우미 활동 등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우미를 선택한 이유는 응답자의 59%가 '적성에 맞아서'라는 응답하고 5%만이 이직에 관심이 있어 도우미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점과 현재의 업체에서 이 업무만 종사한다는 응답이 92%를 나타냈다는 점은 도우미가 전문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돌봄도우미의 교육훈련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9%가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경력이 1~2년 정도로 짧을수록(69.4%) 많은 교육 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의 교육 시간은 응답자의 66.7%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는데 경력별로 1~2년(72.2%)차와 기혼(71.2%)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서 좀 더 보장되어야 할 분야로 실습(39.1%)을 꼽고 있어 향후 교육 내용에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보수 교육의 주기는 3개월 혹은 6개월에 1회로 실시하는 방안에 30.1%가 응답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6개월에 한번(41.9%), 30대는 한 달에 한번(44.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수교육의 내용은 응답자의 40.5%가 '연령별 놀이'를 꼽고 있다. 한편, 아동돌봄도우미 활동에 대한 만족은 응답자의 44% 정도가 만족하며, 보통은 51%로 나타났다. 도우미 활동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만족의 이유로 가장 높은 의견은 '아이가 좋아서'(25%)이다.

3. 요약 및 함의

- 돌봄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가정내 돌봄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특히 부모의 취업여부와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본 조사결과 친인척돌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 오전 이른 시간 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는 점,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가정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아동의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이용의 경우 돌봄과 교육적 효과 두 가지 모두 충족되기를 희망한다는 점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료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아동돌봄서비스 업체 및 인력에 대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돌봄도우미가 이미 전문성을 지닌 업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업체는 향후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위상 및 사회적 지위 제고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법제화가 미흡하여 사기 저하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 특히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보육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고, 복지도 매우 열악하며, 업무 보장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은 낮아지고, 이직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관련 인력 양성 공급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전체 보육 환경 및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관단위가 보육 종사자의 양성, 재직훈련, 전문 역할 및 지위, 전문자격증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되고, 적시에 법규의 적용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보육기관 평가 및 고품질 보육 서비스 등이 지표로 정착되어야 한다.

VI. 보육 서비스 선택 행위 결정 요인 분석

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분석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기 및 비정기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사업과 기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정내 유료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 보육을 위해 가정내 유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서비스 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 의향이 있는 금액, 혹은 효용 수준은 대상 아동의 특성(연령, 장애 여부), 가구 구성 변수의 특성(맞벌이 부부, 가구 소득, 가구내 기타 영·유아동 존재, 가구내 부모 제외한 다른 성인 존재)에 의존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 어머니의 직접돌봄에 대한 기회비용인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연령, 경력 등의 변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의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차이로 상이한 가격 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를 구분한 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아동 연령의 증가는 유료가정돌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킨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 증가는 가정내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증가시켰다. 가구내 다른 어른의 존재 및 5세 이하 아동의 추가적인 존재 역시 가정내 유료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켰다. 어머니의 대학 졸업 여부와 경력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적으로 기대한 결과와 일치하나, 그 크기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돌보미 8시간 이용 비용의 효과가 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돌보미 지원 사업의 경우 2시간과 8시간 이용 비용이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게 설계되어 있어, 두 비용이 서로 선형관계에 있으며, 또한 가구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분석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 결정요인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이때, 우선적으로 단위 시간당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가격이 높을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앞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서비스로부터 누리는 편익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74 가구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 시간당 단위 비용이 100% 증가하면 이용시간은 약 2.7 시간 감소하여,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아동 연령의 증가와 어머니 대학 졸업 여부, 가구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아동 연령 1세 상승에 따라 약 0.67시간의 이용시간이 감소되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3.5시간의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된 돌봄 서비스 유형 결정 모형

-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주된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직접보육’, ‘친척에 의한 보육’,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 ‘유료 가정 보육 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 돌보미 포함)’이라는 대안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돌보미 서비스와 기타 가정 보육 서비스가 제공하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즉 단지 가격 차이 혹은 이용시간에 대한 유연성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여 충족됨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아동보육 욕구가 충족되는 서비스 유형을 파악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유형을 주된 서비스로 정의하고 분석 모형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하였다.
- 주된 보육 서비스 선택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경제 이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는 다르게 개별 서비스의 평균 이용가격이 주된 서비스 선택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아동 연령의 증가는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연령 상승에 따라 시설 교육으로의 이동 및 어머니의 취업 등의 요인을 반영한다.
 - 어머니의 특성 변수와 관련해서는 연령과 경력이 유의한 수준의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돌봄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려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일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다. 이들 요인은 취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취업상황이 실제 직접돌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적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고, 이는 유료 가정보육 서비스 이용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소득과 관련해서는,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든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가정내 5세 이하 아동이 추가적인 존재하는 경우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고, 친인척돌봄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내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의 주 여부는 주된 서비스 유형 결정과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가격 탄력성 추정 결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0.0049로 나타났다. 즉,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가격이 1% 감소하였을 때 실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선택할 확률은 0.49% 증가함을 뜻한다.

4.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분석

- 본 설문조사에서는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가상적 수요를 모든 설문 대상 가구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현재의 제도하에서 개별 가구가 직면하는 가격 체계와 동일하게 최초 2시간 이용에 대한 기본 요금과 추가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을 가격 체계로 하여 4가지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였다.
- 각 가격체계에 따른 희망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시간 분포를 보면, 가격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함이 관측된다.
- 서로 다른 4가지 가격 하에서 가구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수요함수를 프로빗(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우선 비용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용여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할 때, 비용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과 사전적으로 기대되었던 방향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

었으나,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장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의 직장 경력만이 유의수준 5%에서 서비스 이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적인 가격체계하에서 주당 희망 이용시간을 이용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수요를 추정해 보면, 아동돌봄도우미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350만원 이상 더미 변수)과 단위 시간당 비용 변수(로그-평균비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5. 시사점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행태 및 비용관련 분석결과를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가정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사이의 돌봄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영유아를 가정내에서 돌보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유아를 위한 시설돌봄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시설돌봄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보완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1. 제도화의 기본방향

- 우선 가정내 아동돌봄지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지원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원칙임을 밝히면서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국가 보육정책은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가정내 아동돌봄은 시설돌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돌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택권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둘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

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다. 그러므로 인력의 양성, 자격 부여,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의 가정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대 뿐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질 관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넷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같이 소득에 기준한 지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부의 위탁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회사 등의 교류나 협력은 현재 미약한 실정이다.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가. 가정중심 아동돌봄 지원

- 가족내 아동 돌봄 이용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 처럼,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돌봄서비스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서비스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돌봄 이외에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둘째, 공적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장시간 근로나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중산층 보다는도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셋째, 비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유료가정보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다양화되어 이용료 또한 소득수준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넷째, 유료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 등에 서비스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시간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유료가정돌봄시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규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섯째,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돌봄에 있어서는 시설 이용 시간외 가정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당 총지원액수를 정한 뒤 시설과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사람이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인 4인 가구를 예로들면, 시설 보육이 아닌 가정내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 시설보육을 이용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시설돌봄을 이용한 가구에 비해 연간 107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이 시설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유료가정돌봄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도 노정되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행의 아이돌보미지원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가정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 현재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 시스템은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아직 제

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아동돌봄도우미 노동시장의 미성숙과 이를 관리하는 업체의 영세성 및 제도적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동돌봄도우미의 역할과 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제고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으로 모집에서 퇴출까지의 과정에 걸쳐 시스템적 인력관리가 요구된다.

-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활용 관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임금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임금관리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복리후생이란 노동의 대가 이외에,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은 아동돌봄도우미의 저임금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자격기본법」은 자격의 유형을 자격의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주로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민간자격은 국내 아동돌봄도우미 시장이 활성화되고 도우미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성하고자 하면서 도우미가 여성 유망 취업 직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신설되었다. 민간자격은 주로 4~5개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검정을 통해 자격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취득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여 배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을 민간 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격제도가 운영될 수 있고,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경쟁과 국가공인 민간 자격제도를 통해 자격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격 검정을 위한 기관의 인력 및 조직·검정 시행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과 아동돌봄도우미 분야의 전문성 등의 결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반면 국가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 및 자격검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아동돌봄도우미를 배출할 수 있어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여 아동돌봄도

우미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보육교사와 같은 기존의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새로운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아동돌봄도우미는 보육교사와는 다른 내용과 수준의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을 활용하기보다 아동돌봄도우미 직무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과 같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재정보조가 보육시설서비스에 국한되고, 이용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서비스는 제외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아동돌봄형태의 시간대별 이용실태와 이용비용 분석, 그리고 도우미의 인력 특성 등을 통해 시설과 재가 아동보육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모색하려는 어려운 시도를 하였다. 각각의 개별 연구과제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분석의 근거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급돌봄도우미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양육지원 및 여성의 취업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유급돌봄도우미의 재정지원에 대해 모든 이용 가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만을 겨냥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어떻게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돌봄도우미의 고유 업무영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부 연구배경

I.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가. 연구의 필요성	5
나. 연구목적	9
2. 개념 정의	10
가.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 도우미	10
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화	14
3. 연구수행 체계	15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가. 연구내용	17
나. 연구 방법	18
5.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2
II. 선행 연구 검토	25
1.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 관련	27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35
3. 아동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효과 관련	36

제2부 아동돌봄지원정책 동향

III. 한국의 아동돌봄 지원 정책 현황	45
1. 법·제도의 변화	47
2.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48
3. 보육재정	52

IV. 외국의 정책 동향	55
1. OECD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 현황	57
2. OECD 주요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제도와 현황	60
3. 베이비시터 관련 정책동향	74
4. 요약 및 시사점	84

제3부 조사결과 분석

V.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	91
1.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조사	93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3
나. 돌봄형태 관련 기본적 특성들	99
다.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101
라.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04
마.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117
바. 돌봄담당자와 시설유형	121
사.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123
아.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 실태	125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	132
가.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실태	132
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	141
3. 요약 및 논의	148
VI. 돌봄 서비스 선택 행위 결정 요인 분석	157
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분석	159
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분석	162
3. 돌봄 서비스 유형 결정 모형	165
4.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분석(가상 수요 분석)	174
5. 요약 및 논의	179

제4부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VII.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185
1. 제도화의 기본방향	187
2. 정책과제	189
가. 가정중심 아동돌봄 지원	189
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192
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방안	194
VIII. 결론	205
■ 참고문헌	209
■ Abstract	217

표 목 차

<표 I-1> 보육 유형 구분 및 보육제공자	14
<표 I-2> 지역별 표본 할당	19
<표 I-3>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20
<표 II-1> 보육 이용 실태 - 전국	27
<표 III-1> 우리나라의 보조금 현황(2007 기준)	50
<표 III-2> 차등보육료 현황	51
<표 III-3> 연도별 보육예산 추이	52
<표 III-4> OECD 국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분담률	54
<표 III-5> 월평균 부모 실제 부담 보육료	54
<표 IV-1> 국가별 보조금 정책	58
<표 IV-2> 유형별 보조금 형태	60
<표 IV-3> 미시간 주의 보조금 지원 대상	65
<표 IV-4> 미시건주의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기준 자격	66
<표 IV-5> 미시건주의 In-home Day Care Aide 지역별 요금(2008)	67
<표 IV-6> 로드 아일랜드 주의 보육서비스 지원	68
<표 IV-7> 로드아일랜드주 가구소득별 지불금액부담액 RI DHS CCAP Family income and co-payment guidelines(2007)	69
<표 IV-8> 로드아일랜드주의 돌봄서비스 이용 요구율 Legal Non-certified Providers in Child's home service 요금율(CCAP 2007)	69
<표 IV-9> 프랑스의 민간 ECEC 현황	72
<표 IV-10>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78
<표 IV-11> 베이비시터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	81
<표 V-1> 응답자의 연령 및 학력	93
<표 V-2>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월평균 수입	94
<표 V-3> 응답자의 고용형태	94
<표 V-4> 응답자의 주당근로시간	95

<표 V-5> 출근시간대별 퇴근시간 분포	95
<표 V-6> 아동수	96
<표 V-7> 아동출생순위별 성별 및 연령 분포	97
<표 V-8>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경제활동 관련 사항	98
<표 V-9> 가구 월평균소득	99
<표 V-10> 가족내 최연소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	100
<표 V-11> 아동연령별 돌봄 형태	102
<표 V-12> 응답자 월평균 소득과 돌봄 형태	103
<표 V-13> 월평균 가구 소득과 돌봄 형태	104
<표 V-14>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05
<표 V-15> 직접돌봄을 하는 이유	118
<표 V-16> 시설에 보내는 이유	119
<표 V-17>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	120
<표 V-18>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	120
<표 V-19> 돌봄형태별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122
<표 V-20>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124
<표 V-21>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여부	126
<표 V-22>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내용 및 희망업무	127
<표 V-23>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128
<표 V-24>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업체에 대한 만족도	129
<표 V-25>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	130
<표 V-26>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 필요정도	130
<표 V-27> 베이비시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정도	131
<표 V-28> 베이비시터 지원자 증명서 필요정도	132
<표 V-29> 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133
<표 V-30> 업체의 인력모집 특성	134
<표 V-31> 업체의 인력모집 제한 사항	135
<표 V-32> 업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일반적 사항	136
<표 V-33> 업체의 보수교육 및 교육시간	137
<표 V-34> 업체의 교육내용	137

<표 V-35> 업체의 서비스 현황	138
<표 V-36> 업체의 보험 등록 여부	139
<표 V-37>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시간	139
<표 V-38> 육아일지 관련사항	140
<표 V-39>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 불만접수 여부	140
<표 V-40> 업체 운영관련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	141
<표 V-41> 아동돌봄도우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2
<표 V-43> 아동돌봄도우미 경력 및 직업 관련 사항	143
<표 V-44> 아동돌봄도우미의 근로시간 및 급여	144
<표 V-45> 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의 주평균 일하는 횟수	145
<표 V-46> 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의 취득 자격증	145
<표 V-47> 교육현황	146
<표 V-48> 보수교육 관련사항	148
<표 VI-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프로빗 분석	162
<표 VI-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회귀 분석)	164
<표 VI-3>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165
<표 VI-4> 미성년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률 분포	168
<표 VI-5> 서비스 단위 시간당 비용 추정 결과	170
<표 VI-6> 주된 돌봄 서비스 선택 모형 분석 결과	172
<표 VI-7>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가상적 수요 조사 문항	174
<표 VI-8> 패널 구조를 이용한 프로빗 모형	178
<표 VI-9> 패널구조를 이용한 주당 (희망) 이용시간에 대한 토빗 분석	179
<표 VII-1> 아동돌봄 형태별 제도화 방향	187
<표 VII-2> 교육·훈련의 다양한 유형	197
<표 VII-3>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이	199
<표 VII-4> 자발적 이직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200
<표 VII-5>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	203

그림 목 차

<그림 I-1>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협동연구체계	16
<그림 I-2> 조사개요	21
<그림 II-1> 전체아동의 개인양육지원이용률	28
<그림 II-2> 비용지불아동의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29
<그림 III-1> 보육료 지원 예산 및 지원 아동 증가 추이	53
<그림 V-1> 아동연령별 유료 가정보육 서비스 이용률	101
<그림 V-2>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05
<그림 V-3> 1세이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7
<그림 V-4> 2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8
<그림 V-5> 3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09
<그림 V-6> 4-5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9
<그림 V-7> 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10
<그림 V-8> 비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11
<그림 V-9> 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2
<그림 V-10> 비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2
<그림 V-11> 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13
<그림 V-12> 비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14
<그림 V-13> 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5
<그림 V-14> 비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5
<그림 V-15> 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6
<그림 V-16> 비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17
<그림 VI-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161
<그림 VI-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격별 주당 희망 이용시간 분포 ..	175
<그림 VII-1>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 과정 모형(안)	195
<그림 VII-2> 우리나라 자격제도 체계	202

제 1 부

연구배경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개념 정의	10
3. 연구수행 체계	15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5.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양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인해 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서비스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구의 증가이다.

보육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육서비스 자체는 사적재화이나 외부성(externality)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로 공공 부문에서 생산·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의 경우 생산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을 통하여 생산을 규제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생산·제공 필요성은 설득력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사적재화라기 보다 공공재나 준공공재, 또는 가치재(merit goods)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한계,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갖는 사회적 효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은 가족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형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한국의 보육지원 제도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보육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보육정책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더불어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보육관련 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 시설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영아의 경우는 시설보육이외에 가정보육

6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외, 2005 & 2007). 한편 현재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에 대해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경(2005)은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가구 소득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또는 취업여성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승민(2006)은 영유아기의 초기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 진출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공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음을 강조하며 보육이 일부 가정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보육정책이 보육료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를 취약집단에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우선순위가 취약집단이긴 하지만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비해 더 광범위하였다는 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상 가구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보육정책이 선별주의적이라기 보다 취약집단 중심으로 재정지원 대상을 선별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나아가 조운영·김정호(2008)는 보·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아동은 취업모(母)를 둔 자녀나 취약계층의 아동이기 때문에 보육비 보조는 맞벌이 가구 및 근로여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목표의 핵심은 일·가정의 양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과 양질의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아동에게는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

운영·김정호, 2008).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여성 취업률과 영유아 자녀양육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즉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전일제 고용보다 시간제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국가의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육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지성애 외, 2007).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예산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정책목표와 괴리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인건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 등 보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보조금은 맞벌이 가구나 근로여성에게 대한 배려가 없어, 보조금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조운영·김정호, 2008). 이는 보육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의 개별 보육의 확대는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공공 보육시설의 이용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성들은 육아비용을 벌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진출을 모색한 반면에 육아수당을 받고 나서 부터는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서 여성 실업률이 1983년 10.6%에서, 1989년 12.6%로, 1994년에는 14.3%로 증가했고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26%나 감소한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Jenson & Sineau, 2003, 송승민, 2006, 재인용).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입지 위축은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로의 회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우 보육대안 선택의 폭도 줄어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송승민, 2006).

앞선 논의와 비슷한 맥락으로 김현숙(2007)은 보육정책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모두 장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 ‘계층간, 계층내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비용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중요한 전제로 고려할 때 적합한 정부보조금 정책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보육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논쟁의 핵심은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을 가정하고 설정한 정부의 예산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다. 이를 기본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차등 보육료를 확대하는 형태로 흡수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동수당이나 바우처 형태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족정책 수단을 우리나라에 활용할 경우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여성의 고용증가에 대해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보육지원 형태를 차등화된 보육료 지원형식으로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김현숙, 2007).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데, 기본보조금에 반대하는 입장은 확대된 바우처제도¹⁾나 제한된 의미의 아동수당²⁾ 도입을 논하고 있다. 단, 아동수당은 출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성 노동공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현숙, 2007).

이러한 한국의 자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이념적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소득수준과 부모의 취업형태 등 개별 가구별 차이가 있는 아동돌봄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돌봄 지원이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내 보육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현재 가정내 보육은 필요로 하는 가족이 개별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 만으로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일부 비영리 개별서비스와 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가정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
- 1)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관련 바우처를 발행하고 공식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이를 보육시설 이용에 현금급여처럼 이용하고, 비공식적 탁아나 스스로 자녀를 돌볼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 2) 공식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현금급여 형태로 제공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고 논의가 확산되어 왔다.³⁾

나. 연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보육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가정내 아동 돌봄 수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히 가정내 보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를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돌봄형태를 직접돌봄,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의 4가지로 구분하여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하루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가족내 아동 돌봄 시장에 대해 실태와 수요에 근거하여 가족내 돌봄과 시설돌봄을 선택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가족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보육비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나, 민간서비스인 아동돌봄도우미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비영리 부분 가정내 양육지원을 관리·담당하는 부서는 여러 곳으로, 서로 다른 명칭과 목적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돌본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비영리 부문에서의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는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늘리고 저소득 가구에게도 개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가치인 '서비스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조체계의 구축은 미비한 실정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리부분은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07년에 93개소의 베이비시터 전문 파견 회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 제반 관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여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지만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단이 전혀 없다.

10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아인 경우나 근로형태상 보육시설이외에 민간 아동돌봄도우미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가족의 보육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수단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공급 현황 및 인력 양성 체계의 파악을 통하여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개념 정의

가.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 도우미

1) 가정내 양육의 의미

가정 중심 보육(Home-Based Child Care)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아동의 가정에서 친인척 및 그 외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는 보육을 말한다.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가정보육을 공식 보육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은 대부분 비공식 부분의 보육으로 재택보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서문희 외, 2007:17).

이와 달리 공식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있으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국립유치원이 있다. 이 중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인원 규정은 상시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로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과 유사한 시설이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은 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공식보육 시설이며 가정보육은 5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비공식 보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과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 가정보육시설은 공식보육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연구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가) 가정중심 보육의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⁴⁾

(1) 보육제공자 유형

현재 한국에서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서문희 외(2005)에서는 가정 중심보육을 개인양육지원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로 이웃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개별방문지도⁵⁾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탁아모는 이웃사람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단기적으로 교육하여 파견하며, 아동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탁아모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베이비시터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 가입비를 내고 소개받는 사람으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며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한다. 파출부는 주로 가사를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을 병행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조선족이나 외국인 인력이 가정에 입주하여 아동을 돌보는 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 역시 보육제공자의 범주에 속한다.

외국의 경우 국제내니협회에서 가정내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크게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Nursery Nurse, 오페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

4) 서문희 외, 2007:20-23에서 요약 발췌하였다.

5) 개별방문지도는 개인이 아동의 집을 방문하거나 집으로 아동을 불러 과외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의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개별방문지도는 서문희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 보육·교육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돌봄서비스가 주요 연구대상이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2007). 베이비시터는 아동의 가정에 비정기적으로 종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되어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보호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비정기적 고용이므로 아동의 가정에 입주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 내니는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로, 주요 업무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국한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내니는 이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로 대체로 일주일에 40-60시간을 일한다. Nursery Nurse는 영국에서 가정에 고용되어 동거하거나 출퇴근하는 집단으로, 자격기준은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주요업무는 아동돌보기 및 아동돌보기와 관련된 가사일에 국한된다. 이외에 오페어는 외국인으로 일정기간 머물면서 아이돌보기나 가사일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는 자이다. 가정교사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교육수준 이상의 사람들로, 가정에 종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되어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모도우미는 최소 1인 이상의 부모가 주로 집에 있는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어 함께 살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돌보기 및 가사일을 종일제로 하는 자이다.

(2) 제공체계

가정중심 보육의 제공체계는 크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 유형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공공보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리유형은 대부분 민간시장에 의한 것으로 민간 영리사업자가 베이비시터인력과 희망부모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이다. 베이비시터인력과 이용자에 대해 각각 입회비와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베이비시터에 대한 소정의 교육 및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비공식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구하는 방법이나 경로를 보면 주변의 소개나 친인척 등으로 매우 비공식적이다. 또 민간 영리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판단하여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다.

2) 아동돌봄도우미의 개념

가정중심 보육에서 보육제공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아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인척과 그 외 사람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제공자를 아동돌봄도우미⁶⁾라고 하고 있는데 비공식 보육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용어는 가족의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주로 베이비시터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모든 비공식 보육제공자가 아동돌봄도우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비공식보육에서 주로 통칭되고 있는 보육제공자인 베이비시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동만을 보육하는 방문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영리위주의 방문탁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베이비시터는 내니와 구별된다. 베이비시터는 대부분 학생 등이 비정기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를 나타낸다면 내니는 입주 또는 출퇴근의 방법으로 탁아를 일정하게 주된 일로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서문희 외, 2007:17).

아래 <표 I -1>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보육 유형을 공식보육과 비공식보육으로 구분해보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속한 시설 및 보육 형태와 제공자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제시해 본 것이다.

6) 도우미라는 용어는 의미상 노동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며 현재 가정내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가족의 아동돌봄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아동돌봄도우미 개념을 사용하였다.

〈표 I -1〉 보육 유형 구분 및 보육제공자

	유형	제공자		유형	제공자	
					유급	무급
공식 보육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비공식 보육	가정보육	친인척 아동돌봄도우미*	친인척 그외
	유치원	유아교육교사		가정내보육		

* 비공식보육의 보육제공자는 다양한 용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제목을 고려하여 아동돌봄도우미로 제시하였음.

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화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슈로서 부모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는 영아의 경우 부모의 근로시간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영아보육서비스를 시설중심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인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등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주거지 근처에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시설보육을 주요한 보육서비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가족내 아동돌봄은 크게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돌봄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어머니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등이 자신의 집이나 아동의 가정에서 돌봐주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보모, 도우미, 간병인 등 급여를 지불받는 형태의 가족내 돌봄도 늘어나고 있다. 공식영역의 가족내 아동돌봄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YMCA 아가야 사업,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 영리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는 베이비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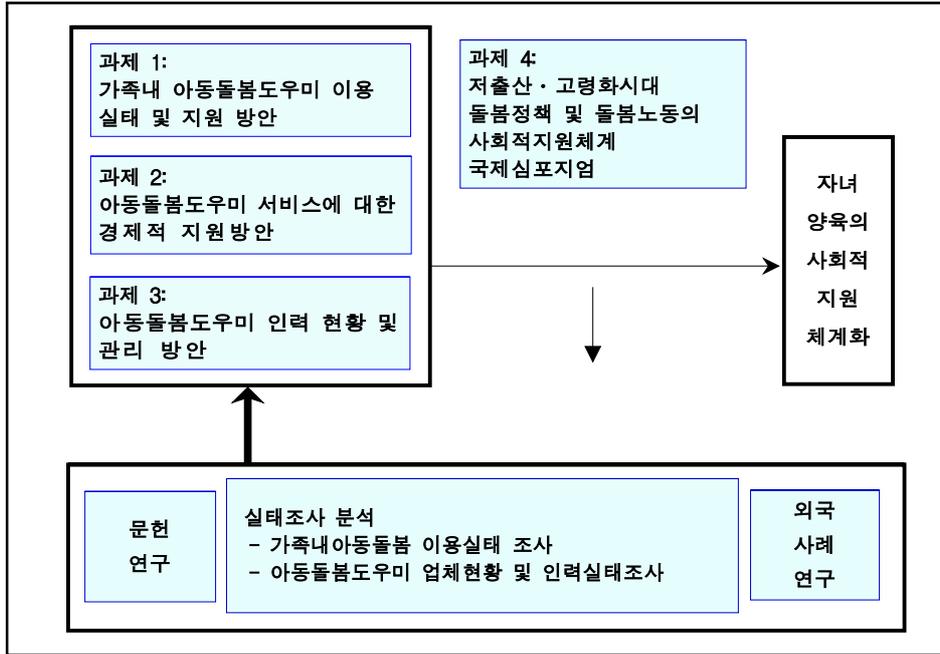
가 있다. 비영리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제외한 민간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규제나 관리 감독 등이 전무한 실정이며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자격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의 수준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되 국가는 민간영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가정보육서비스는 일부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대부분 민간영리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간영리업체의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를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경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민간영리기관의 베이비시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수행 체계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총괄하는 주제는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로 설정하였으며 총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과제1은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돌봄연구팀(팀장: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하였다. 과제2는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연구로 한국조세연구원(팀장: 원종학 연구위원)이, 과제3은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팀장: 강일규 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과제4는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 개최로 과제1, 과제2, 과제3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인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는 주요국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아래 <그림 I-1>은 본 연구가 추진하는 협동연구의 체

16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들이 각각 수행한 연구결과를 총괄한 보고서의 특징을 갖는다.



〈그림 I -1〉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협동연구체계

본 협동연구의 수행에서 아쉬움은 아동돌봄도우미 지원공급체계를 다루지 못한 점이다. 연구기획단계에서는 아동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공급체계 관련 연구과제를 포함하였으나 연구예산비의 축소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 제도화와 추진체계로서 서비스 공급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을 정의하였다. 가정내 양육의 의미와 가정 중심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돌봄도우미와 아동돌봄 제도화의 수준에 대해 정의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우선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전국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자녀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및 인력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내 아동 돌봄지원 제도 및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종합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외국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과 경제적 지원제도,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및 베이비시터와 업체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정책과 관련한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넷째, 가족내 아동돌봄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내 아동 돌봄 실태는 아동 돌봄 형태를 직접돌봄,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비율에 대해 아동연령 및 소득별,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 돌봄형태별 선택사유,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유료가정보육이용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를 통해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보육이용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비용지원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

여섯째,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제도화 과제들로 아동돌봄 서비스 다양화, 경제적 지원,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이론적 배경 및 용어 정의, 해외정책 동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가)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조사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5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이다. 조사응답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어머니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할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자인 사례는 995가구,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사례는 5가구로 나타났다.

(1) 표본설계

조사대상 가구는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하였으며 전체 표본 수는 1,000가구이다. 표본추출 방법은 5세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모수에 비례하여 추출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지역별로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과 인천·경기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묶어 표집하였으며 지역별 표본 할당 수는 아래 <표 I-2>와 같다. 서울은 강북서부, 강북동부, 강남서부, 강남동부의 4대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할당 수는 388명이며 인천·경기는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기위성지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 수는 612명이다.

〈표 1-2〉 지역별 표본 할당

지역		표본 수
서울	강북 서부	62
	강북 동부	120
	강남 서부	117
	강남 동부	89
인천 경기	인천	106
	경기 남부	165
	경기 북부	67
	경기위성지역	274
계		1,000

(2)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조사대상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로 하며 어머니가 없거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가족이 5건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례는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조사 내용은 크게 돌봄형태 및 이용비용과 유료가정돌봄에서 베이비시터 관련 내용, 그리고 조사응답자 및 자녀, 배우자 등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돌봄형태는 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조사대상가구의 5세이하 자녀의 돌봄형태에 대해 하루시간대별로 추이를 살펴보았다. 돌봄형태는 크게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의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접돌봄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친인척돌봄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 외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친인척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이다. 이 때 아동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였다. 시설돌봄에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유치부, 놀이방 등이며 학습보충이나 특기적성을 위한 학원은 돌봄시설에서 제외하였다. 유료가정돌봄은 개별 보육의 형태

20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로 베이비시터나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보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별로 4가지 돌봄형태 해당여부를 알아보고 아동연령별, 응답자 소득 및 가구소득별, 취업상태별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4가지 돌봄형태별로 선택이유를 알아보았다. 직접돌봄과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는 돌봄담당자를,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은 돌봄 이용비용에 대해 돌봄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민간베이비시터와 정부지원아이돌보미로 나누어 이용비용을 조사하였다.

유료베이비시터 관련 사항들은 유료베이비시터 이용자 대상 설문문항과 전체 응답자에 대한 유료베이비시터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분된다. 유료베이비시터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일반적 사항과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 내용과 희망업무 내용, 베이비시터 고용 경로 및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 및 베이비시터 고용시 제공받고 싶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월평균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동은 수, 성, 연령 등,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관련 사항은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월평균가구소득을 조사하였다.

〈표 1-3〉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돌봄형태	· 돌봄형태(직접돌봄/친인척돌봄/시설돌봄/유료가정돌봄)별 이용여부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추이 : 아동연령별/소득별/취업상태별 · 돌봄형태별로 선택이유 · 돌봄담당자 또는 시설유형
돌봄이용비용	· 돌봄 이용비용(친인척돌봄/시설돌봄/유료가정돌봄) · 유료가정돌봄 이용요금 및 희망이용비용 ※ 유료가정돌봄은 민간베이비시터와 정부지원아이돌보미로 나누어 조사함.

항목	세부내용
유료가정돌봄 이용자의 베이비시터 관련	· 베이비시터 관련 사항(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 ·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 베이비시터 고용 경로 · 베이비시터 업체 이용 경로 및 만족도
유료베이비시터 및 업체 관련	· 베이비시터 고용시 선택 기준 · 베이비시터 업체의 베이비시터 고용시 제공 정보 관련
일반적 사항	· 응답자본인 :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 아동 : 수, 성, 연령
	· 배우자 :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배우자동거여부, 가구소득

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및 업체 실태 조사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아동돌봄도우미와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중 임의 할당 추출을 통해 선정한 업체 50개와 아동돌봄도우미 100명이다. 2008년 7월 9일에서 7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온라인 조사·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에 관한 조사 내용은 업체의 일반사항, 아동돌봄도우미의 모집과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 평가 등이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에 대해서는 활동 현황과 교육에 대한 인식, 활동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 전국의 아동돌봄도우미
조사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50개 ■ 아동돌봄도우미 100명
표본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아동돌봄도우미 업체 LIST)에서 임의 할당 추출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온라인 조사/ 개별면접조사 병행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돌봄도우미업체관련 : 일반사항, 모집, 교육훈련, 관리현황, 평가 등 ■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련 : 일반사항, 활동현황, 교육훈련, 활동만족도 등

<그림 I-2> 조사개요

3) 국제심포지움

국제심포지움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와 전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부각시키고자 개최되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을 이미 제도화의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파악함으로써 본 협동연구의 주제인 아동돌봄에 대한 제도화 이슈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정책 아젠다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주요 발표 주제는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과 “유럽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이다. 동 발표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내에서나 시설에서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돌봄 형태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 제도화 되고 있으며, 특히 돌봄노동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부각되고 있으며 확인되어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4) 협동연구 관리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자문회의

3개 기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협동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전반에 대한 자문단으로 활용하였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협동연구 관리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을 함으로써 개별과제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협동연구 전체 흐름과 개별과제 수행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앞서 연구수행체계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제도화 방안 모색에 있어서 아동돌봄도우미 지원서비스 공급체계가 함께 연구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이다. 향후 과제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다음으로 조사규모와 대표성 관련한 문제에서 한계점의 노정이다. 아동돌봄 이용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규모에 있어서 조사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

어 있어 비수도권 실태를 포괄하지 못하여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해야 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서비스업체와 관련한 것인데 인력업체의 조사는 업체의 영세성과 잦은 휴폐업 등으로 전수파악이 매우 어렵다. 또 전반적인 아동돌봄 서비스 인력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부분 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허가업체가 아니라는 점, 직업안정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방경찰서 소관이라는 점 등의 한계로 통계를 획득하기 어렵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도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내용이 연구의 범위 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 보육 제도화, 가정보육 인력의 질적수준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여러 영역의 이슈를 본 협동연구진이 조명하였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세밀한 정책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 관련 27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35
3. 아동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효과 관련 36

1.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 관련

가. 아동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

아동보육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로는 서문희 외(2005)의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보고」가 대표적이다. <표 II-1>는 서문희 외(2005)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국 6,405명 조사대상자 가운데 시설위탁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0.8%,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14.7%, 유료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표 II-1〉 보육 이용 실태 - 전국

구분	한다	안한다	전체
시설위탁보육	1,972(30.8)	4,433(69.1)	6,405(100.0)
친인척보육	942(14.7)	5,463(85.2)	6,405(100.0)
유료가정보육	69(1.1)	6,336(98.8)	6,40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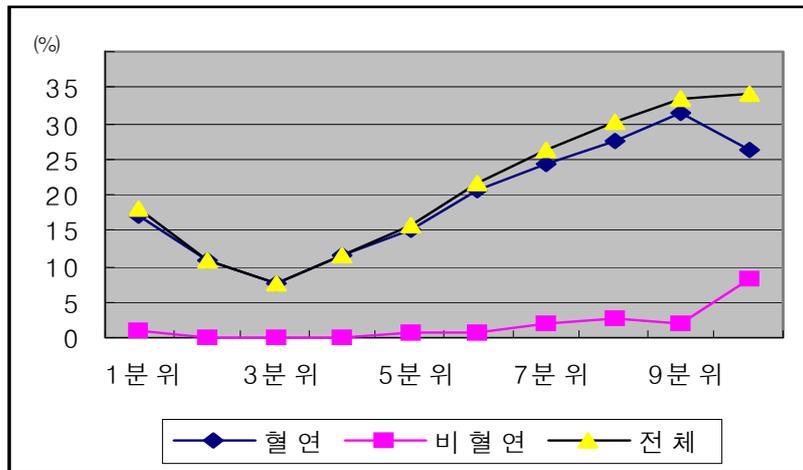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II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보고」 데이터재분석결과임.

영유아가 비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독 이용 아동은 312명,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은 356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독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혈연 관계에 의한 보육이 19.3%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혈연 관계에 의한 보육은 2.6%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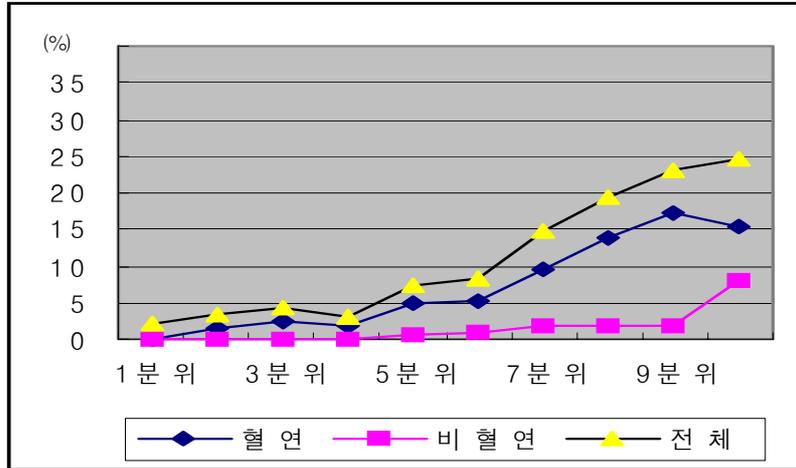
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은 동거 조부모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거 친인척(42.7%), 비동거 친인척(8.9%), 비동거 조부모(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주당 5.1일, 1일 8.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시 보육장소는 보육제공자의 집이 314명(68.8%), 아동의 집이 127명(31.2%)으로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비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은 탁아모가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비시터는 17.6%, 과출부는 7.8% 순이었다. 평균 돌봄일수는 5.4일, 주당 평균 시간은 40.3시간이며 돌보는 장소는 아동의 집이 44.8%, 보육제공자의 집이

55.2%로 거의 비슷하지만 보육제공자의 집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탁아모는 탁아모의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고(72.1%), 베이비시터는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으며(88.9%), 파출부는 모두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88.2%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비용은 전체 평균 44만 5천원이었다. 영아의 경우 평균 55만원선이며 유아는 27만원이었다. 탁아모 비용은 50~59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19.5%)로 나타났고 베이비시터는 60~69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62.5%)로 나타났다(미취학, 취학 모두를 합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혈연은 전체 이용률과 별 차이가 없으나, 혈연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II-1>, <그림 II-2> 참조).



<그림 II-1> 전체아동의 개인양육지원이용률



〈그림 II-2〉 비용지불아동의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비공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는 ‘아이 기관 부적응’(78.5%)이 가장 많으며 유아의 경우는 ‘비용부담’(62.3%)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육제공자별로 만족도를 보면 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제공자의 양육은 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측면에서 집단의 8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혈연관계의 보육제공자의 양육지원 비용 및 양육방식에 대하여는 35%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아이가 기관에 적응 가능할 경우 비혈연관계 보육제공자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에 아이가 적응 가능하다면 비용부담이 적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혈연관계에 있는 보육제공자의 양육지원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3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양육방식의 차이(25.5%)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요구사항으로는 비용지원(45.5%), 인력 양성·교육(36.4%), 관련 정보 제공(3.0%) 순으로 나타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나. 자녀 교육 및 보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1)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보육 이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조애저, 2000; 서문희 외, 2000; Pie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 김지경, 2005, 재인용)에 의하면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구의 형태와 지역,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김지경(2005)은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 이용률에 대해 연구했다. 여기서 조사된 사교육 및 보육시설에는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내 보충, 방과후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일반 유치원 및 기타 유형이 포함되고 있다. 이 조사는 무엇보다도 가구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웠던 교육 및 보육시설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 비용을 자녀별 지출금액의 총합을 통하여 실제적인 가계의 지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김지경, 2005).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수(초등학교 3학년 이하), 거주 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구 소득이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친인척을 비롯한 조력자가 있거나 시설이용에 따르는 지출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되는 가구 등은 시설보육을 차선으로 선택한다(김지경, 2005).

그러나 김지경(2005)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Piecy, et al., 1999; Casper, 1995, 김지경, 2005, 재인용)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경향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상치되는 연구결과로 보이는데 대체로 학력과 소득은 비례관계에 있는 변수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시설 이용률에 가구소득이 부의 관계를 미치고 있다면 학력수준과 시설이용을 선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시설선호율이 높은 것은 시설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는 차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가 미취업한 가구에 비해 취업한 경우 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설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지경, 2005).

한편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의 보육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가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의 영유아들이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이용은 보육시설의 이용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유아가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선행연구결과(서문희, 2001)와는 대조적이다. 즉 영유아들의 학원 이용은 보육기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과 학원이용에 있어 연령에 따라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영향요인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아동들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대체재로서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 있다. 즉, 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법정 저소득층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등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

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원의 이용이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라면 관련 기관의 설립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김지경, 2004).

2) 부모의 취업형태와 보육 이용

자녀 보육에 있어서 부모 취업 형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취업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가정내 자녀의 주양육자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상황, 즉 출퇴근 시간이나 직종 등에 따라 자녀 보육 실태와 만족도, 욕구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상황과 보육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기 보다는 어머니의 취업을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지만 어머니의 취업상황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도 있다. 박은미(2003)는 취업모의 근무형태와 가족유형에 따른 자녀 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무형태를 전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현황을 조사하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 현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보육형태로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43.8%에 그친 반면 반일제 취업모의 경우에는 88.9%를 차지했다. 이것은 전일제 취업모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경혜(1998)는 가족구조, 자녀수, 어머니의 소득·연령·학력 등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어머니의 직업과 보육 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자녀 연령이 만3~6세의 경우에는 취업모 직업이 간호사인 경우 가족에 의한 보육이 많았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은 낮았다. 이것은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특히 야간 근무가 있어 보육시설 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양육자 고용에 있어서 교사와 사무직/공무원이 간호사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사무직/공무원이나 교사, 시간제 형태 취업모가 간호사보다 자유롭게(일정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 시간을 예측하여 자녀

를 맡길 수 있는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모의 ‘직종’이 아닌 ‘근무 시간’과 보육형태와의 관계를 연구한 박은미(2003)의 연구와 분석의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결과 역시 다른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김경혜(1998)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간호사는 3교대를 한다는 면에서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교대, 야간 근무를 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실태와 함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있다. 권경옥(2005)은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중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시설보육만을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9.8%에 그쳤는데, 조사대상자들의 자녀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가 절반정도라 시설보육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3교대 근무로 인해 시설보육과 개인보육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희망보육시간에 대한 응답에도 반영되어 74.3%가 24시간 운영 또는 근무계획에 따른 운영시간을 원했고,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의사 관련 항목에서도 운영시간이 길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교대·비교대 근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민혜윤(2003)의 연구에서 전체 보육 유형은 시설 보육이 55.3%로 나타났으나 근무형태별(교대/비교대)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대 근무자의 보육시설 이용은 44.3%로 교대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백혜리(2004)는 부천의 공장지역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9.9% 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를 응답한 것이 두 번 째로 많았다.⁷⁾ 또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희망 등·하원 시간으로 오전 1시와 오후(밤) 12시로 응답⁸⁾

7)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다른 사유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17.4%), ‘직장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16.8%),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14.2%), ‘가까운 보육시설이 없음’(13.5%), ‘너무 어려서’(5.8%) 순이다.

8) 희망 등원 시간으로는 오전 9시(33.0%), 오전 8시(22.2%), 오전 1시(19.9%), 오전 7시(8.1%), 오전 5시(5.9%), 오전 10시(5.9%)...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 하원 시간은 오후 6시(20.8%), 오후(밤) 12시(19.9%), 오후 7시(17.2%), 오후 3시(11.3%), 오후 5시(8.1%), 오후 4시(5.0%), 오후 10시(5.0%)... 순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모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응답자의 다수(70.6%)가 3교대를 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취업 형태와 자녀 보육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통해서도 언급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을 소득, 즉 경제적 특성으로 해석하는데, 박장하(2007)는 직업에 따라 만족도의 5개 영역(시설, 환경, 교사, 안전, 학습내용 만족도)에서 차이를 밝힘으로써,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에 유사한 직업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의 종류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직의 경우 비숙련직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높고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비용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란(2005) 역시 비슷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사무직/기술직 종사자들이 판매·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노무직 종사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경영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판매·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노무직보다는 높았으나 사무직/기술직 종사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수입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전반적으로 월수입이 많을수록 직장보육시설에 만족하는 정도도 높아지나 고소득자(월평균 250만원 이상)들의 만족 정도는 다소 낮아져 저소득자(150만원 미만)보다는 높지만, 중간 소득자(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곽인숙·홍성희(2000)는 노동공급 및 수요 측면과 가족복지적 측면 등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요구도(보육수당 지급과 직장보육시설 이용 중에서 선택)를 연구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대상자로 여성 뿐 아니라 취업 남성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자녀보육을 위한 요구실태 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67.5%로, 이중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업과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과의 관계 역시 분석되었는데, '기술공/사무직' 보다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자

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녀 보호의 형태나 만족도, 욕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관련 연구는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서문희·이상현, 2002)”, “한국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7)” 등이 있다. 두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시터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법적인 위치가 불분명하며 가정이 사업주가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베이비시터의 실태를 보면, 여성이 많으며 40대가 다수이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고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가장 많다.

시터 파견업체는 사업자 등록 및 직업소개업 등록비율이 매우 낮으며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매우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교육 및 관리 측면을 보면 채용기준에 있어 연령과 경력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학력이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거의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여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지킨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일지 작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써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다. 이용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이용아동의 연령은 3세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베이비시터 이용을 장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

과 일하는 동안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해보면 취업모는 근무시간 중의 대리 양육이 가장 큰 이용 이유이며 비취업모는 사회여가활동이 주된 이유였다.

3. 아동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효과 관련

가. 가정내 보육지원 제도

가정내 보육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이옥(2004), 정민자 외(2006), 임윤옥(2007) 등이 있다. 이옥 외(2004)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 실시를 위한 연구(여성부)”에서 0-1세아의 가정내 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보육교사제도의 도입에 앞서 필요성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가정내 영아 보육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영아 전담의 가정보육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내 돌봄에 대한 보육지원서비스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0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영아 보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보육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및 보육교사 훈련지원, 가정보육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은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대안 중 하나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음 정민자 외(2006)는 가정내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책 과제 및 해결을 위한 연구로 아이돌보미 사업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자녀양육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아이돌보미 제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연구는 가족내 주 양육자인 여성의 아동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내 육아지원 서비스제도로써 아이돌보미와 육아광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할 것,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파견의 신뢰성있는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해온 가정과건보육서비스 사업의 보육도우미와 무료 보육도우미 이용가정에 대한 조사⁹⁾ 결과를 통해 임윤옥(2007)은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보육도우미 과건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보육도우미의 경우, 업무에 비해 보수가 불충분하며 식사문제, 고용인이 가사일을 병행할 것을 기대하는 문제, 양육방식에 대한 갈등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보육도우미 이용가정의 경우 보육시설이 있으나 퇴근이 늦을 때가 많아 이용하기 어려워 도우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용 후 아동의 식습관이나 건강, 성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나. 보육서비스 지원의 경제적 효과 관련

보육서비스는 사적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재화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공공재처럼 정부가 제공을 하거나, 보육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국내외 주요 연구를 살펴보았다.

1) 국내연구

먼저, 유희정(2006)은 보육선진국들은 이미 영유아기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Heckman의 분석 법에 따라 연령대별 투자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연령대별 투자효과에서 영유아기 투자가 다른 연령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효과에 비하여 4~8배의 수익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육아지원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OECD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은 저출산 국가에

9) 임윤옥(2007), 「효과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제안」(한국여성노동자회).

서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Gauthier & Hatzius(1997)은 1970~1990년 동안의 OECD 국가의 출생률 추이와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분석을 통해 OECD 국가의 현금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0.07로 나타나 들어간 재원에 비해 그 효과는 다소 낮은 편임을 지적하였다.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에 관한 현진권(2004)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시장실패를 보이며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장에 의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 양육시장은 민간 개인사업자가 전체 영유아의 70% 수준을 담당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나, 민간시장에 대한 영리법인의 진입차단과 가격규제로 인해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질을 중심으로 한 선점 경쟁의 왜곡현상이 나타나 시장실패가 초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으므로 서비스를 수요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보육서비스에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에만 맡기는 경우 사회적 최적상태의 보육서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 보육서비스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양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해질 것을 감안할 때, 보육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양육서비스는 초기에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영유아 양육서비스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와 시장이 동시에 작동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서비스 시장에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하고, 가격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시장에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중저소득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서비스 질 수준을 정부시설로서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숙(2005)은 우리나라 보육 산업은 민간 중심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

음을 지적하며, 현재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아동의 약 30%를 차지하고, 70%는 민간시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적 여건이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가 모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책임지기에는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정부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음을 감안할 때, 민간의 주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국민조세 부담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 의한 보육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영유아 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보육료 규제 정비가 필요하며, 보육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육료가 적절한 운영비용을 반영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킬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차등보육료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여성노동공급 제고를 위해 보육료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통한 취업도 지원도 제시하였다. 특히 표준보육비용에 의거하여 차등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정부의 재정소요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비용에 해당하는 단가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해 2009년에 약 4~5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005년 보육·교육 이용욕구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 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

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동 1인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7만원으로 조사대상자의 가구소득 대비 8.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이용아동 보호자 중 58.1%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미이용 사유의 15%가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시설 유형별 정부 재정지원이 상이하여 부모 양육비 부담에 차별을 초래하고, 적정수준의 보육·교육비용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민간(사립) 시설의 경우에는 양 비용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표준보육·교육 비용을 감안하여 정부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해볼 수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 및 취업모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와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 부모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2) 국외연구

먼저 Lisa M. Powell(1997)은 1988년 Canadian National Child Care Survey와 1988년 Labour Market Activity Survey 등 2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나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자녀보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시장임금과 아동보육비용은 각각 근로시간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양과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의 아동양육비용 탄력성은 -0.38 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아동보육비용의 탄력성은 -0.32 로 보고하고 있다.

Lisa M. Powell은 또 다른 연구(2002)에서 아동보육 비용과 임금이 기혼여성의 근로 및 아동보육형태(센터, 돌보미, 친척, 남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역시 1988 Canadian National Child Care Survey와 1988 Labour Market Activity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과 일반로짓선택모형(universal logit choice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은 기혼여성의 근로형태에 대한 선택 가능성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고, 각각의 아동보육형태에 대한 가격은 근로와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감도분석에서는 노동에

대한 아동양육 자체에 대한 가격은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탄력성에 대해서는 안정적(robust)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임금보조, 특정 형태의 아동양육보조, 또는 무조건적인 양육보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에 대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 Lokshin(2004)은 아동양육, 러시아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시간에 대한 가구 수요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모형에서는 아동양육비용과 기혼여성의 임금, 가구소득이 가구의 행태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시간은 아동양육비용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달라지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빈곤을 줄이기 위한 가족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형태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수당을 아동양육비에 대한 보조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강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빈곤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Roderic Beaujot(1997)의 연구에서는 1988 Child Care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아동양육 및 근로형태와 선호하고 있는 아동양육 및 근로 형태가 비교되었다. 분석에서는 다양한 일과 양육 형태를 가정하여 모형이 설계되었다. 분석 결과 각 가정의 근로 및 양육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일상 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일과 양육의 형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족에 의한 직접양육(immediate family), 공식적 기관에 의한 양육(formal sector), 비공식(informal sector) 양육 등 3가지 형태로 융통성있게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 2 부

아동돌봄 지원 정책 동향

III

한국의 아동돌봄 지원 정책 현황

- | | |
|----------------|----|
| 1. 법·제도의 변화 | 47 |
| 2.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 48 |
| 3. 보육재정 | 52 |

1. 법·제도의 변화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제도가 적극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탁아사업은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어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취업 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9월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탁아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를 부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추진되어 1991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되었다. 이로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법령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1990년대는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1990년대에 영유아보육법은 만5세아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했을 뿐 그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설치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설 설치의 진입을 개방하였다. 몇 년간에 걸쳐 시행된 이러한 법개정 조치들은 급격하게 증가된 보육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1995~1997년 3년 동안 보육확충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아동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 낮고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설의 난립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4년 1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정, 교사자격제도, 평가인증 등 그 동안 논의된 개선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¹⁰⁾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아 보육, 유아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 등 대상에 따라 구별되고, 또한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 운영 시간과 시각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일반 보육시설과는 달리 특정한 대상만을 보육하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차별화되고 있다.

2.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 제도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다각도로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표 III-1>).

10)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인가제로 환원하면서 설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고 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 취약보육 강화, 건강·영양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강화 이외에도, 보육과정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었다.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종사자 자격기준 및 자격 획득 조건이 달라지며, 시·군·구에서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시설장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 조항이 추가되는 등의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등보육료 제도를 들 수 있다. 도입 당시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계층까지 포함하는 한편 계층별 수혜 비중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 2월 기본보조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기본보조금은 영유아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정액지원 보조금으로 보육시설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기 시작했다.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민간보육시설의 부모 부담보육료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조정하여 아동 연령별 보육료를 경감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정부 지원을 통해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표 Ⅲ-1〉 우리나라의 보조금 현황(2007 기준)

수요자 보조금	기준 및 지원방식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차등보육료 (만0~4세)	소득계층별로 6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007)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편적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007)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12세 이하 장애아 전체	장애아 전담시설 및 혼합시설 이용아동	일반 유치원 이용아동
입양아 무상보육료	시설이용 입양아 전체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병설, 사립 유치원
공급자 보조금	기준 및 지원방식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시설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정액지원	국공립, 법인 : 인건비 영아반 80%, 유아반 30%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간연장시설 : 인건비 80% 민간 : 영아에 대해 정액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차량운영비 지원	정액지원(월 15만원)	농어촌, 장애전담시설	없음
교재교구비 지원	정액지원(연 100만원)	민간시설	없음
육아지원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확충, 증개축, 개보수비	국공립, 장애아전담, 보육정보센터 설립 등	국공립 유치원, 통합육아지원시설, 농어촌 시설
취업모 관련 시설지원	취업모 이용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시간연장형, 민간시설 영아반	종일제 운영유치원
기본보조금	아동별로 연령에 따라 시설에 차등지원, 보편적 지원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없음

자료: 김현숙(2007)에서 재인용

2005년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 영아에게 지원되던 정부보조금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를 정부가 기본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표준보육비용이라 함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비용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을 기존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육료를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부담이 더 크므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의 사이에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07년 및 2008년 차등보육료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표 Ⅲ-2>과 같다.

<표 Ⅲ-2> 차등보육료 현황

종류별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361천원 / 월 만1세 : 317천원 / 월 만2세 : 262천원 / 월 만3세 : 180천원 / 월 만4세 : 162천원 / 월	만1세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지원비율	5계층(100, 100, 80, 50, 20%)	5계층(100, 100, 80, 60, 30%)

3. 보육재정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예산은 공보육 실현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표 Ⅲ-3>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총예산은 2조 2,918억원으로 2002년의 4,355억원에 비하여 약 5.3배가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Ⅲ-3〉 연도별 보육예산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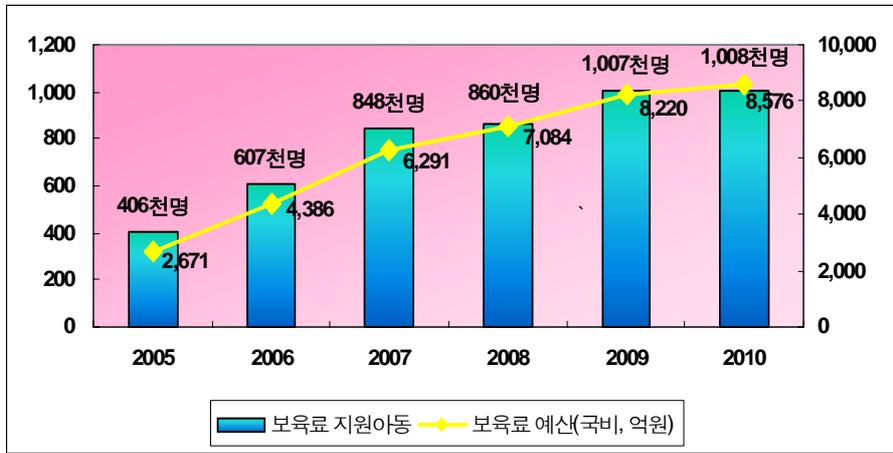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예산	4,355	6,551	8,752	13,355	17,249	22,918
국 비	2,102	3,120	4,050	6,001	7,910	10,435

자료: 1)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2006. 12. 31일 현재)

2) 총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비용임

2007년 보육예산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보육료 지원 예산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방과 후 이용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보육료 지원율은 2002년 21.1%에서 2005년 44.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동안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비롯하여 차등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 각종 지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결과이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예산 규모는 <그림 Ⅲ-1>과 같다.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 7. 27

〈그림 Ⅲ-1〉 보육료 지원 예산 및 지원 아동 증가 추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 및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로 보육수요자가 보육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를 표명하는 보육정책에서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이 낮은 문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보육예산이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는 문제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보육정책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 교육 이용욕구(서문희 외, 2005)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4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

히 높아 예산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률이 평균 60%를 넘는 OECD 국가에 비하여 정부지원 수준이 미흡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육비용 중 재정분담률은 35.8%에 불과하고 유아교육예산을 합하여도 재정분담률이 3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4〉 OECD 국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분담률

(단위: %)

구 분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호주	한국
재정분담률	91	88	73	70	66	38

자료: 여성가족부(2007)

보육예산이 균형 있게 투입되지 않아 지역, 시설, 계층 간 불화감이 조성되는 등 보육예산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보육예산의 47% 정도가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모 부담 보육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5〉 월평균 부모 실제 부담 보육료

(단위 : 천원)

구 분	국공립	민 간	가 정
전체비용	151.0	175.6	218.0
순보육비	124.2	141.8	207.6
추자비용	26.8	33.8	10.4

자료: 서문희 외, 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 조사 보고」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월평균 급여수준은 92만원에 불과해 146만원 수준인 국공립시설 교사에 비하여 턱없이 낮고 이에 따라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IV

외국의 정책 동향

1. OECD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 현황	57
2. OECD 주요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제도와 현황	60
3. 베이비시터 관련 정책동향	74
4. 요약 및 시사점	84

I. OECD 국가의 보육비용 지원 현황

세계 각국은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수행하면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창의적 인력개발로 국가 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OECD는 그 이유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② 조화로운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 지원, ③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 ④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가난과 차별 금지, ⑤ 모든 영유아들의 건강·영양·안전 보장이 그것이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일본의 엔젤플랜(1994~1999) 및 신엔젤플랜(2000~2004), 영국의 Sure Start Project(1997)와 Child Challenge Project(1998), 그리고 미국의 Head Start Project(1965)와 Early Head Start Program(1994) 등이 대표적이다.

OECD 국가의 보육서비스 관련 보조금의 형태나 수혜범위 등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급자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조금의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띤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바우처(voucher)와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는 수요자 보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자 보조금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용된다.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급자 보조금을 주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급자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보면 주로 정부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로서 전체 보육시설 또는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 직접 보조금이 제공된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를 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급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요자 보조금의 형태로 중간소득층까지 혜택이 제공되는 세액공제제도(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도 포함)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조해 준다. 이와 함께 공급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저소득층 관련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며 일반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한편 고용주에게 피고용인 가구 아동의 보육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고용주가 보육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한 보육비용을 세부담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 국가별 보조금 정책

국가	수요자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고용주 부담 및 공제
영어권 국가			
호주	◎	△	고용주 부담 공제
뉴질랜드	○	◎	×
영국	◎	△	고용주 부담 공제
미국	◎	△	고용주 부담 공제
캐나다	◎	△	
북유럽 국가			
덴마크	×	◎	×
핀란드	*	◎	×
노르웨이	*	◎	×
스웨덴	×	◎	×
유럽대륙			
벨기에	○	◎	고용주 부담
프랑스	○**	◎	고용주 부담
독일	○	◎	×

국가	수요자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고용주 부담 및 공제
이탈리아	×	◎	고용주 부담
네덜란드	○	○	고용주부담 공제
포르투갈	○	◎	×
스페인	○	◎	×

- 주 : 1. ◎는 그 나라의 주요한 보조금 형태임을 표시
 2. ○는 보조금 형태가 존재함을 의미하나 주요한 형태는 아님을 의미
 3. △는 보편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등의 특별한 목적의 기금 등을 이용하는 보조금임을 의미
 4.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
 5. 고용주 부담은 보육비용의 일부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
 6. 고용주 부담 공제는 보육비용의 고용주 부담분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
 7. *는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한 연령 이하의 영아나 유아에게 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인 보육 비용을 충당하도록 함을 의미
 8. **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용과 사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을 세금에서 공제함을 의미

<표 IV-2>에서도 보듯이 보육선진국들은 몇 가지의 정책 수단을 혼합하여 보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급자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시설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급자 보조금의 지급대상 시설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 편이다(프랑스 제외). 공급자 보조금이 중심이 되는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수요자 보조금은 세액공제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직접 보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수요자 보조금을 주요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세액공제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 유형별 보조금 형태

	수요자 보조금 형태	공급자 보조금 형태
수요자 보조금 중심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 영국, 미국, 캐나다 ○ 소득공제 : 미국, 캐나다 ○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인가받은 시설 이용자에게만 제공 - 미국은 주단위의 프로그램만 존재 - 영국은 제도 없음 ○ 바우처 도입('96.4) 및 페지('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받은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 호주 ○ 인가받은 국공립 및 비영리사립 : 캐나다 퀘벡주 ○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 미국, 영국 ○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0%(미국)~30%(호주)
공급자 보조금 중심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 벨기에, 프랑스 ○ 소득공제 :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 벨기에, 독일, 뉴질랜드, 포르투갈 ○ 사립보육수당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덴마크 사립시설 거의 전무 - 핀란드, 노르웨이 사립시설 제한적으로 존재(10% 미만) -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립시설 존재 ○ 인가받은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 노르웨이 ○ 인가받은 국공립 및 비영리 사립 : 포르투갈 ○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 소득공제	○ 일반적인 보육시설

2. OECD 주요국의 아동돌봄서비스 제도와 현황

가. 개요

현재 OECD의 영유아 돌봄 관련 사업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운영·관리·분석되고 있다. ECEC는 재원, 운영시간, 서비스 내용에 따른 구분 없이 법정 취학연령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육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제도를 의미한다¹¹⁾.

11) OECD(2001)

대상 아동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은 개념상으로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육은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대상 아동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교육은 아동들의 지적·정서적 발달을 도와 학교교육을 준비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유아 대상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배제한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 서비스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의미에서 보육과 교육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CEC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각 국가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연관 제도 또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시 발생하는 서비스 욕구가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지 혹은 비전통적인 방식 즉, 시장 및 공적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지에 따라라도 차이가 나타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 욕구 해결방식은 크게 전통적인 가족 내 구성원에 의한 방식과 시장을 통한 서비스 구입 방식으로 양분된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이나 친지에 의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가족 외에서 찾는 경우에는 사설업체 등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공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보육수요를 해결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적 부문이 직접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또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대신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대체하든지 양자 간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 범위가 결정된 후에도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지원과 공급자에 대한 지원 간의 결정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에 대한 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도 바우처 (voucher) 등을 이용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또는 세제상 소득공제 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수요 자에 대한 지원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여성의 노동 참가를 증진시키고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며, 바우처 방식은 저소득층의 시설 이용 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시설 선택을 통해 시설 간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시설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낮춰주므로 보다 많은 시설의 시장공급 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정원·설비·교사비율 등과 관련하여 지급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ECEC에 직접적으로 포함되 지는 않지만 육아 휴직(childcare leave) 등에 의한 지원 방식 역시 영유아 보 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CE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수혜자 원칙에 따르나, 소득·자산 등에 근거하여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CEC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 내 비용부담 규모는 국가별로 재정, 복지프로그램 수준 등 이 상이함으로 인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비용부담 측면에서 각 국가별 차 이는 특히 0-3세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0-3 세 영유아로 한정하는 경우 핀란드의 가구 부담율은 10-15% 수준인 반면, 영국과 미국은 최고 60% 수준까지 가구에서 부담한다. 4-6세 아동 보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가 크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가구 부담비율 측 면에서의 차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각국의 아동 보육 서비스 현황

1) 미국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 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몇 가지 특징을 2004년 기준 연령별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를 통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적인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해결하고 4세 이후부터 공공 유치원에 등록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Kamerman & Gatenio(1996)에 의하면 1세 이하의 아동 중 50% 이상은 친척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22%는 재택 보육서비스를, 9%는 센터기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2-3세 아동의 경우 가정내(at home) 보육 혹은 친척에 의한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줄어들고 가정내 보육 또는 유아원(nursery school)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세 아동의 경우에는 48%가 유아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6세 아동의 56%가 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pre-primary) 과정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의 3세 아동과 약 16%의 4세 아동이 pre-kindergarten을 이용하고 있으며 5세 아동의 경우 90% 정도가 유치원(kindergarten)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 및 유모(nanny)의 고용이 영유아 보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베이비시터 및 유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는 다른 보육서비스와 함께 이용되고 있어 이들 서비스가 보완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apizzano & Adams, 2000). 베이비시터 및 유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보편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각 업체들이 개별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들 가정내 고용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바우처 방식을 이용해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¹²⁾ 이하 소득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이 있다. Head Start는 대부분의 수혜자가 4세 아동이며, 1999년 기준으로 매년 826,000명(대상 아동의 약 36% 수준)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3세 이

12) 2008년도 4인 가구 기준 연방정부 빈곤선은 24,800달러이다. 단,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경우 각각 26,500달러와 24,380달러로 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 Vol. 73, No. 15, January 23, 2008, pp. 3971 - 3972를 참조.

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Early Head Start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모의 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은 무료이며, 일부 주의 경우 4세 아동의 pre-kindergarten 이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아동 보육비용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 및 부양 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가 있다. 이는 13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007년 현재 1명의 아동에 대해 최대 3,000달러 혹은 2명의 아동에 대해 최대 6,000달러까지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정받은 비용 중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제지원과 더불어 아동 보육과 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을 재원으로 하여 각 주별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주별 중간가구소득(median family income) 대비 85%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되는 보조금의 수준은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적으로 결정된다.

아동돌보미와 관련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미시간과 로드아일랜드이다. 미시간 주의 경우 <표 IV-3>에서 보듯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육서비스 중 아동의 집에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day care aide가 돌보미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미시간 주의 보조금 지원 대상

유형	특징
child care centers	DHS의 허가(license)를 받아 1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facility). preschools, nursery schools, before and after school programs, Head Start programs 등이 운영되고 있음.
group child care homes	2명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집(private home)에서 12명 이하의 아동을 돌봄. DHS의 license가 필요.
family child care homes	성인 1명이 자신의 집(private home)에서 1~6명의 아동을 돌봄. DHS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registered).
relative care provider	아동과 동거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아동의 친인척(예:(고)조부모, 이모, 삼촌, 형제, 자매 등. 이에 해당하지 않은 친인척은 돌볼 수 없음)이 자신(친인척)의 집에서 아동을 돌봄. 돌보미는 한 가정의 아동을 6명까지 돌볼 수 있음. 주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으려면 친인척은 반드시 DHS에 등록(enrolled)해야 함.
day care aide	아동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돌보미를 고용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보게 하는 것. 돌보미는 한 가정의 아동을 6명까지 돌볼 수 있음. 피고용인이 주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DH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미시간주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 ②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③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라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DHS(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DHS는 통상 수급대상 서비스 비용의 70~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보조율은 <표 IV-4>에 나타나 있다.

〈표 IV-4〉 미시건주의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기준 자격
(Child Development and Care Program Income Eligibility Chart, 2005)

세전 총소득 (Gross Monthly Income)					
Family Group Size of 1 or 2	\$0- \$1496	\$1497- \$1533	\$1534- \$1570	\$1571- \$1607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1607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3	\$0- \$1847	\$1848- \$1895	\$1896- \$1943	\$1944- \$1990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1990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4	\$0- \$2198	\$2199- \$2255	\$2256- \$2311	\$2312- \$2367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2367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5	\$0- \$2551	\$2552- \$2616	\$2617- \$2681	\$2682- \$2746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2746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6	\$0- \$2902	\$2903- \$2976	\$2977- \$3050	\$3051- \$3123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3123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7	\$0- \$3253	\$3254- \$3336	\$3337- \$3418	\$3419- \$3500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3500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8	\$0- \$3604	\$3605- \$3695	\$3696- \$3786	\$3787- \$3877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3877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9	\$0- \$3955	\$3956- \$4055	\$4056- \$4155	\$4156- \$4254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4254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Family Group Size 10 +	\$0- \$4309	\$4310- \$4417	\$4418- \$4525	\$4526- \$4634	No DHS assistance if gross monthly income is over\$4634
% of DHS Rate Paid	95%	90%	80%	70%	

출처: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_7143-20878--,00.html

돌보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대 시간당 임금은 아동이 거주하는 카운티 및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해진다. 단, 30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25센트의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미시간 주에서 시행하는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150센트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서비스 공급자가 청구한 금액과 DHS가 부담하는 보조금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표 IV-5> 미시건주의 In-home Day Care Aide 지역별 요금(2008)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Shelter Area I	\$1.40	\$1.40
Shelter Area II	\$1.40	\$1.40
Shelter Area III	\$1.40	\$1.40
Shelter Area IV	\$1.66	\$1.66
Shelter Area V	\$1.66	\$1.66
Shelter Area VI	\$1.66	\$1.66

- * 출처: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_7149-21172--,00.html 로부터 재구성
- * Shelter Area I : Alger, Baraga, Gogebic, Huron, Iron, Keweenaw, Luce, Mecosta, Menominee, Presque Isle, and Schoolcraft Counties.
- * Shelter Area II : Arenac, Chippewa, Delta, Houghton, Iosco, Lake, Manistee, Oceana, Ontonagon, Osceola, and Oscoda Counties.
- * Shelter Area III : Alcona, Benzie, Cheboygan, Crawford, Dickinson, Gladwin, Hillsdale, Jackson, Kalkaska, Mackinac, Mason, Missaukee, Montcalm, Muskegon, Newaygo, Ogemaw, Sanilac, and Wexford Counties.
- * Shelter Area IV : Allegan, Alpena, Antrim, Berrien, Branch, Calhoun, Cass, Charlevoix, Clare, Emmet, Gratiot, Ionia, Isabella, Marquette, Montmorency, Roscommon, St. Joseph, Shiawassee, Tuscola and Wayne Counties.
- * Shelter Area V : Barry, Bay, Clinton, Eaton, Grand Traverse, Kalamazoo, Kent, Lapeer, Leelanau, Lenawee, Midland, Otsego, Ottawa, Saginaw, and Van Buren Counties.
- * Shelter Area VI : Genesee, Ingham, Livingston, Macomb, Monroe, Oakland, St. Clair, and Washtenaw Counties.

다음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이 중에서 Legal Non-certified Providers in Child's home 서비스가 돌보미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6〉 로드 아일랜드 주의 보육서비스 지원

유형	특징
DCYF Licensed Centers	DCYF의 허가를 받아 학교나 센터에서 child care programs, school-age programs 등을 운영. 이곳에서는 summer camp programs을 part of day 로 정규 승인 하에 운영하기도 함.
DCYF Certified Family Child Care Homes	DCYF의 허가를 받아 Family Child Care Homes과 Group Family Homes 서비스를 제공함.
Legal Non-certified Providers	DCYF에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이나 이웃에 의해 아동의 가정 혹은 돌보미의 가정에서 돌보는 것.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자녀를 제외하고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금지됨. 자신의 자녀가 포함된다면 6명까지 돌볼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주정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Nursery School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반일(half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pre-school age 아동을 대상으로 함.
Summer camps in or affiliated with licensed CC facilities	DCYF에 child care 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summer camp programs을 운영하는 승인된 시설. 1년에 12주 이상 운영하지 않음

* 출처: DCYF : RI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이 제도는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 18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 준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3인 가구는 30,906달러, 4인 가구는 37,170달러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의 지불금액(co-payment)은 소득 수준과 부모의 근로시간, 정규교육 및 근로이력, 가족 크기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지불금액(co-payment) 부담은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 가정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 수, 등록시간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동일한 co-payment가 지불된다. co-payment 부담은 돌봄서비스를 등록한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일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이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으로 어린 자녀의 서비스 이용 시 쓰일 수 있도록 양도된다. 개별 가구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지불금액(co-payment) 비율을 52주로 나눈 금액이 매주 개별 가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된다.

〈표 IV-7〉 로드아일랜드주 가구소득별 지불금액부담액 RI DHS CCAP Family income and co-payment guidelines(2007)

income level	% of income assigned as co-payment	family size 2	family size 3	family size 4	family size 5	family size 6
0	0	\$13,690	\$17,170	\$20,650	\$24,130	\$27,160
1	1%	\$17,113	\$21,463	\$25,813	\$30,163	\$34,513
2	4%	\$20,535	\$25,755	\$30,975	\$36,195	\$41,415

*출처: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Plan for Rhode Island FFY 2008-2009 State plan for CCDF Services for the period 10/1/07-9/30/09

DHS는 각 가구에서 각출한 co-payment를 제외한 나머지 돌보미서비스 이용요금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표 IV-8>에서 보듯이 아동의 연령, 보육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표 IV-8〉 로드아일랜드주의 돌봄서비스 이용 요구율 Legal Non-certified Providers in Child's home service 요금율(CCAP 2007)

아동 연령 \ 시 간	전일제	3/4일제	반일제	1/4일제
0세 ~ 3세	\$74	\$55	\$37	\$18
3세 ~ 초등학교 미만	\$50	\$37	\$25	\$12
초등학교 1년~13	\$49	\$36	\$24	\$12

* 출처: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plan for RHODE ISLAND FFY 2008-2009

이상에서 미시간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보미와 유사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2개 주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구부담은 현행 돌보미 제도와 유사하게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에는 특히 하게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해당 가구의 부담이 결정되는데, 이는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co-pay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시간 및 로드 아일랜드 주 모두 다른 보육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으로 돌

보육서비스 자체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감안한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하에서 돌봄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부담 또한 이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및 친지에 의한 비공식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시간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연령별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세 미만 아동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 보육되며 약 20% 정도만이 사립보육원 혹은 가정보육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1-3세 아동의 30%가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모(childminder) 서비스를 이용하며 또 다른 30%는 놀이집단(playground)을 이용한다.

셋째,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 조기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연령대에 속하는 아동 중 95% 이상이 유아교육(nursery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주로 민간 부문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이나 친지 등 비공식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보육모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며 유모(nanny)나 오페어(au pair)를 고용하기도 한다. 유모 등과 같이 보육을 위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나 보조금 등 국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적 지원을 받는 ECEC로 Sure Start program, 유아원(nursery education), 예비학교(reception class) 등을 들 수 있다. Sure Start program의 경우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동 보육, 조기 교육, 건강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의 향상을 통해 아동들에게 최상의 삶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1998년 도입되었다. 522개 커뮤니티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출발하였으나 2008년에 2,500개, 2010년에는 3,500개 수준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학군(catchment area)의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

며, 각 지역당 약 8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원과 예비학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 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유아원은 3-4세 아동을, 예비학교는 4세 이상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서비스는 연간 33주, 주간 15시간만 제공되기 때문에 일부 아동의 경우 잔여 시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담당할 보충(wrap-around)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은 근로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를 통해 아동 1명에 대해 보육비용의 최대 70%, 최고 135파운드까지, 그리고 2명인 경우에는 200파운드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프랑스

전통적으로 유모제도가 발달되어 온 프랑스는 이를 체계적인 가정탁아제도로 연결시켜 가정내 보육을 제도화하였으며, 가정내 보육수당을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0-3세 영유아의 약 64%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부모 자신에 의해 보육되고 있으며, 등록 보육모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18%,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약 8%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 부문의 ECEC 제도로 보육시설(Creche)과 모성학교(Ecole Maternelle)가 존재한다. 보육시설은 3개월 이상 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모성학교는 3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모의 부담이 없어 이 연령대 아동의 99%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또는 기타 가족구성원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면 사적 보육서비스는 등록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와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프랑스의 민간 ECEC 현황

	등록 보육모	Garde a domicile
등록 아동비율		
3세 이하	415,000 (20%)	31,000 (1.5%)
3-6세	240,000	49,000
감독체계	PMI 서비스 부서에 의해 면허 부여 후 감독	없음
규제	5년 동안 1-3명의 아동 보육에 대한 면허 부여 건강요건 충족 및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	규제 없음
자격요건	5년마다 60시간의 교육 이수	규정된 교육은 없으나, 자발적인 교육 참여 가능
고용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부모
총비용	17억 유로	1,350억 유로
아이 1인당 비용	6,600 유로	200 유로
비용부담	CNAF와 부모가 분담	CNAF와 부모가 분담
재원	AFEAMA 급여	AGED 급여
이용료	AFEAMA 지급액을 넘는 비용 단, 최소 월 222유로 부담	AGED 급여를 넘는 비용 단, 최소 월 750유로 부담

자료 : French Background Report(2003), OECD(2004)에서 재인용

사적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서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과 등록 보육모 고용지원제도(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nante maternelle agreee)가 있다. 전자는 보육사가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는 개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회보장기여분의 일부가 정부에 의해 보조되며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진다. 후자는 보육모를 개별 가정에서 고용하는 경우 보육모에 대한 사회보장기여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프랑스는 아동 1명당 25%의 보육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가정내 보육수당).

4) 스웨덴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으므로 아동 보육 관련 제도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1세 이하 아동은 대부분 육아휴가를 받은 어머니에 의해서 보육되며 보통 15-18개월 정도에 종일보육(day-care)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두 사람이 총 480일의 육아휴가를 보장받는다.

1-6세 아동의 64%가 전일제 유치원(pre-school)에 등록되어 있으며, 약 11%가 family day care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치원 이용료는 첫째 아동의 경우 가구 소득의 3%, 둘째와 셋째 아동의 경우 각각 2%와 1%가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실직 또는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family day care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치원 이용료와 동일한 상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6세 아동의 경우 93%가 학교 내 유치원(preschool class)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아동의 보호자는 수업과 관련된 비용은 부담하지 않지만 여가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잘 정비된 복지제도 즉, 충분한 기간 동안 보장되는 육아휴직과 전일제 유치원의 운영으로 인해 베이비시터·유모(nanny) 등 민간의 개별적인 이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5)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0-6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도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이다. 25-34세 연령대 여성 중 81.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편인 노르웨이는 공적 ECEC 서비스 중 하나인 barnehage에 의해 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200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0-1세 아동은 주로 부모에 의해 보육되며 단지 3%의 아동만이 시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 연령대에 속한 아동들의 낮은 시설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잘 정비된 육아휴직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르웨이는 52주 동안 80% 수준의 임금 혹은 42주 동안 100% 수준의 임금

을 지급받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1-3세 아동 중 42%는 부모에 의해 전일 보육되고 48% 정도가 ECEC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에 의해서 전일 보육되고 있는 아동 중 일부는 실제 가족 내 다른 구성원 혹은 비공식적 가정보육모(child-minder)에 의해 보육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3-6세 아동의 88%가 ECEC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공적 지원을 받는 ECEC 프로그램으로서 Barnehage, Familiebarnehager, Apen barnhager가 존재한다. Barnehage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서비스로 1-4세 대상 아동 중 약 48%, 4-6세 대상 아동 중 80%가 이용하고 있다. 부모 부담액은 지역, 소득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나, 일반적으로 28-46%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Familiebarnehager는 0-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택보육시설(family day care) 서비스이며, Apen barnhager(open kindergarten)는 0-6세 아동이 대상인 드랍-인(drop-in) 시설 서비스이다.

노르웨이는 유치원 및 기타 유료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10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공적 ECEC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베이비시터 관련 정책동향

가. 시터자격 기준 및 관리

1)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시간제 베이비시터가 반드시 보육 관련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일제 내니 등은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시터, 내니와 같은 가정내 보육 제공자에게 현실적으로 일률적 자격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탄력적으로 적용

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최소한의 베이비시터 자격에 대해 기준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관련 업체가 연령, 흡연, 운전 관련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베이비시터의 연령, 성숙도, 베이비시터로서의 경험, 자녀의 연령과 수, 경험, 자녀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 등을 고려하여 시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결정하게 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다. 내니에 대해서도 정해진 자격조건은 없고, 사업체마다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내니 관련 업체가 제시한 조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연령은 18세 또는 19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미국 시민이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 이외에 업체에 따라서 응급구조자격, 무사고운전면허를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은 신원보증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소한 친인척 이외의 3명의 참고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학대여부 등 범죄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를 요구한다. 신원조회는 대부분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hild Care Referral and Resources Agencies: 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다 (Mogan et al. 2001).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 인증 신청 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등이 자격 기준으로서 적용된다.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 제공자 대부분이 등록보육모인데, 자격 기준은 낮다. 그러나 등록보육모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가정내 고용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등록보육모는 모자보건국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을 부여하는데, 가족상황, 물리적·환경적 조건, 이전 직업, 학력, 아동들과 함께 했던 교육적 활동이나 기타 활동, 희망하는 보육 유형을 기록하여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격을 받은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은 비항시적 보육모는 총 60시간, 항시적 보육모는 총 120시간으로, 이 중 20시간은 자격인증 후 2년

13) URL:<http://www.americannanntyobsearch.com>

이내에 받아야 한다. 비행시적 보육모 자격인증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2년 정도 영유아기 아동 관련 학업 이수자는 6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일본은 전국베이비시터 협회에서 단기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인증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은 5년간이다. 베이비시터로 자격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입연수과정을 수강한 연후에 3개월간 90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고 현임연수과정을 거친 후 인정시험을 치고 인정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인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5지 선다형 40문항, 400자 이내 기술형으로 90분간 실시된다. 신입연수 과정은 13시간 동안 모두 10과목을 수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임연수Ⅰ인 연수Ⅱ 과정은 심층학습으로, 7과목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과정은 1년에 각 6~7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연수 교과내용을 보면, 아동가정복지, 베이비시터 사업, 베이비시터 마음가짐, 보육마인드, 아동발달, 아동의 건강관리, 사고·안전, 영유아보육기술, 유아·아동보호기술,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과목을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외 대학교와 제휴하여 해당자에게 베이비시터 인증서를 주고 있다. 2005년부터 「인정베이비시터 지정교」제도를 실시하여 2006년 현재 전국에 17개 대학을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지정교로 지정하고 있다¹⁴⁾.

2) 베이비시터 자격관리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제공자에 대한 관리 측면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사례이다. 2007년 10월부터 영국의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 관리 업무가 아동보육 인증 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에서 교육기준청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으로 완전 이관되었다. 즉,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을 통해 아동보호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에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 시간 이

14) 동경도 세다가야구에 위치한 昭和女子大學 등으로 이들 대학의 해당 정원은 1,375명이고, 적용시기가 2007년 이후 인 학교가 많아서 앞으로 자격 인정 희망자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여야 한다.¹⁵⁾ 한편 8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또는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자발적인 등록대상으로, 내니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니는 기본적으로 강제적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할지라도 관련 서류들과 자격조건을 확인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 등록 과정에서 다음의 세 영역에 대한 검토가 따르게 된다.¹⁶⁾ 첫째, 보육서비스 제공에의 적합성 여부이고, 둘째는 가정보육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관리자처럼 등록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적합성이며, 셋째는 시설이나 장소가 안전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도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등의 일부 주에서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나. 정부의 비용지원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내 돌봄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만큼 비용도 지원한다. 프랑스의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양육수당(APE)을 차등지급하고, 등록된 자격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혹은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의 현금지원¹⁷⁾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¹⁸⁾

15)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childminder'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정집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daycare provider'로 등록하여야 한다 (www.suffolk.gov.uk).

16) URL:<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17)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지원한다

〈표 IV-10〉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구분	대상 아동연령	사업내용
양육수당 (APE)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 •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지급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 (AFEAMA)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모 자신의 집이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총당해 줌
가정보육수당 (AGED)	6세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비용의 50%를 지급.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 지급

⇒

통합

PAJE

(2004.1.1시행)

이 중 두 번째와 세번째의 경우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서비스가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다.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등록된 보육모(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육교사는 6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족사회지원법(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에서 정의된 바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Fine-Davis, 2004).

등록보육모 고용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6세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 등록보육모는 해당 시·도의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등록보육모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일단위로 환산할 때 영유아 1인당 33.35유로(약 39,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타 부대비용(기저귀, 이유식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액수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등

18) 양육수당(APE)은 1985년, 가정내 보육수당(AGED)은 1987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 (AFEAMA)는 1990년에 각각 도입되었다(Martin, et al. 1998).

록보육모를 고용하는 가정은 가족수당기금(CAF)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분담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다. 사회복지분담금의 경우는 각 가정을 거치지 않고 가족수당기금에서 정수처(URSSAP)로 직접 지불된다. 반면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수당의 경우는 각 가정으로 입금되는데, 그 액수는 영유아의 연령(만3세미만/ 만3세-6세)과 가계수입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3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족수당기금(CAF)에 제출하여야 한다(한지혜, 2002). 이러한 프랑스의 보육지원 체계들은 PAJE¹⁹⁾라는 유아편의수당(infant accommodation benefit)으로 통합되어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대체된다. PAJE는 앞서 언급된 APE, AGED, AFEAMA 등의 보육수당 뿐 아니라 유아수당(APJE), 입양수당(AAD)까지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출생과 보육에 관련된 통합적인 비용지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보육 공급자와의 계약방식에 의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서 친인척 보육 및 시터에 의한 비공식보육도 부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로드아일랜드²⁰⁾와 미시건²¹⁾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대상으로 친인척과 비혈연, 즉 베이비시터/내니를 포함하고 있다. 단,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보육의 공급자인 친인척과 베이비시터 및 내니 등은 각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의 보육자로서 등록(Registration)을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캐나다도 주정부의 사회 부조 예산은 내니 및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내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제공되며, 아동 수당 역시 비공식 보육

19) PAJE에 관한 정보는 http://www.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3.html에서 확인하였다

20) URL: <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gm.htm>.

21) URL: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서비스 이용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경우 보육 보조금 법(Child Care Subsidy Act)에 의하여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이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육, 친척이나 조부모 및 아동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 다른 사람에 의한 아동 가정에서의 보육 등 미인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도 보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보육 보조금은 연령과 아동 보호 유형, 추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한편,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리 베이비시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원 절차를 보면, 먼저 후생노동성에서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다음에 어린이미래재단은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이비시터협회는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하는 한편, 베이비시터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베이비시터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종업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종업원은 베이비시터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재택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종업원은 재택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할인권을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할인권으로 협회를 통하여 재단법인 어린이미래재단이 지원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표 IV-11〉 베이비시터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p>자격 법규 및 기준</p>	<p>·자격 법규</p> <p>-별도의 법규 없음</p> <p>-노동기준법 제89조에 의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취업규칙 적용</p> <p>·자격기준</p> <p>-전국베이비시터 협회 단기 교육, 시험을 통해 자격 인정</p> <p>-대학교 재휴하여 해당자에게 베이비시터 <u>인증서</u> 제공</p>	<p>·자격 법규</p> <p>-보육제공자로 등록(로드아일랜드, 미시건 주 등)</p> <p>-장기 근로자로 일할 경우 노동법, 사회보장 관련 법 대상</p> <p>·일주일 20시간 미만</p> <p>·주당 근무시간 20% 이상 가사업무 경우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안되어도 최저임금 적용</p> <p>·자격기준</p> <p>-연령: 18세 또는 19세 이상</p> <p>-학력 : 고졸이상</p> <p>-금연, 미국시민권, 근로할 수 있는 자격 되어야 함</p>	<p>·자격 법규</p> <p>-아동보호법 자율등록</p> <p>-'07,10. 교육기준청에 등록</p> <p>-장기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사회보장 관련 법 대상</p> <p>·주당 48시간 근무, 출퇴근 내리는 최소 임금 적용, 주당 일정금액 이상 지불 시 세무당국 등록</p> <p>·자격기준</p> <p>-개인이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p> <p>-인증 신청 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적용</p>	<p>·자격 법규</p> <p>-별도의 법규 없음</p> <p>-장기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사회보장 관련 법 대상</p> <p>※단기 베이비시터는 가정내 근로자로 고려되지 않음</p> <p>·자격기준</p> <p>-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기 보다는 인터뷰를 통하여 경험과 위험 시 대처 능력 및 선호도 등 파악</p>	<p>·자격 법규</p> <p>-가족·사회부 조법전</p> <p>-노동법전 제7권 제7편</p> <p>·자격기준</p> <p>-단기 교육(가정내 자녀양육지원 인력 대부분 '등록보육모')</p>
<p>비용지원</p>	<p>·정부지원</p> <p>-베이비시터 협회 교육 지원</p> <p>·정부+기업지원</p> <p>-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을 통한 베이비시터 이용 부모 비용 지원</p>	<p>·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 (로드아일랜드, 미시건 주)</p> <p>※단, 가정에서 개별적 비공식보육공급자는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 보육자로서 등록 절차 필수적</p>	<p>·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 없음</p> <p>·세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p>	<p>·보조금 지원</p> <p>-연령, 아동보호유형, 추가 자녀 여부에 따라 차이</p> <p>-하루 4시간 이용시 \$7.35~19.70, 한달 \$147~\$394</p>	<p>·소요비용 현금 지원</p> <p>-노동 관련법 근거 근로자로서 보호</p> <p>·가정부담의 사회보험료 정부, 기업의 기금으로 마련</p>

다. 일자리로서의 시터 인력

단기 시간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로서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종일제 등 장기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각종 노동법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는 가정에서의 1인 고용자도 근로자로서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한다. 노동법전(2003) 중 가사사용인에 관하여 적용하는 조항은 노동절 휴무,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가족과 관련된 결근할 권리 및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항이다. 먼저 프랑스가 1973년부터 적용하여 온 5월 1일 노동절 휴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매년 5월 1일은 휴일로서 근무하지 않고, 5월 1일의 휴무는 급여 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시급, 일당, 생산율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는 이 휴무로 인해 손실된 액수에 합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일의 특성상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5월 1일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는 당일의 일에 합당한 급여와 더불어 그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다음은 2002년부터 발효한 성희롱과 관련 조항이 역시 적용된다. 개인이나 제 3자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희롱행위(les agissements de harcèlement)를 당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수 등 직·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고,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증언하거나 상세히 기재했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제재, 해고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근엄성을 경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 환경의 점진적 악화를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받아서는 안 되며,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당하거나, 거부, 증언,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육, 복직, 직무할당, 명칭, 분류,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관한 직·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2004년부터 발효한 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고 결근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이다. 임금노동자가 결혼할 경우 4일, 그 가정의 뜻밖의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도착하는 경우 3일,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할 경우 2일,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 부모님, 시부모님(장인, 장모),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1일 결근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정책은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가 당면한 실업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보육모 등록, 인증 제도로 수십만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저변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양육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고용자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무의 수당, 연령 등과 관련하여 1938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초기에 공장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시작된 이 법은 지난 1974년부터 가정내 고용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하여 최저임금을 제시하였다.²²⁾ 그러나 비정규 베이비시터/내니나 동반자적인 고용자는 아이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라는 이름으로 가정내 고용(Domestic services)과 별도로 정의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며 돌보는 아이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공정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조항과는 예외적으로 2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²³⁾ 특히 아기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 중에서도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를 일시 형태(Casual basis)로 구분·정의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으로 두어, 베이비시터업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를

22) 1974년도 당시 최초 최저임금은 시간당 2.30불이었으며,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에 시간당 5.15불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2007년 5월 27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2009년 여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불로 바뀔 예정이다.

23) URL: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12feb20041500/edocket.access.gpo.gov/cfr_2004/julqtr/pdf/29cfr552.1.pdf.

일차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Dept. of Labor, 2001). 단,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영국은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으며(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50~60시간이 보편적),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²⁴⁾의 적용을 받는데, 주당 일정금액 이상을 지불받을 경우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부모는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인에 대신하여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가능한 내니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급여명세표를 함께 주어야 하며, 내니는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내니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에는 질병수당(SSP: Statutory Sick Pay), 모성수당(SMP: Statutory Maternity Pay), 입양수당(SAP: Statutory Adoption pay), 부성수당(SPP: Statutory Paternity Pay), 실업수당(redundancy pay), 유급휴가(Holiday pay), 연금이 있다²⁵⁾.

4.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외국의 가정보육 관련 제도에 대한 요약과 함의이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등록가정보육모 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보육모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에 대해서도 이용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 가정내 보육을 공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 미국은 일부 주에서 주정부 차원의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도 감독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있다.

24) 2007년 현재 시간당 5.35 파운드.

25) 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benefits.html.

전통적으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라인 영국에서도 2006년 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보호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시간 이상 8세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8세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의 집에서 돌보는 사람도 자발적인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일본의 경우 가정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를 총칭하는데 일본의 가정보육제도는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실시요강에 의하면 자격증, 보육아동의 수(3인이하), 보육장소, 보육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가정보육제공자는 민간인 스스로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일본베이비시터 협회가 있으며 이 협회에서 단기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증받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시터 회사 규모는 150여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형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들은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자격인증 및 보육제공자의 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용할인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한국과 다른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용할인권 제도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에 협력하여 근로자의 아동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주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보육모에 대해 공통적으로 응급처치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식교육 또한 직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교육 역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주와 지방정부는 가정보육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를 보면 비록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에서의 자격관리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고 보완적인 보육서비스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이비시터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나 전국베이비시터협회를 통해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현재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즉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및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영리업체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전체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리는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부가 할 수도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요국의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시사점을 보면 우선 외국의 보육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 및 프랑스는 베이비시터 등의 이용이 활발한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공공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보육을 의뢰하는 베이비시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ECE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베이비시터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공공 부문의 ECEC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베이비시터의 이용이 통계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러 국가 중 프랑스의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이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와 가장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가정내보육(garde a domicile)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현황 및 기타 경제적 효과 분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보육모 및 일시적 또는 단시간의 보육서비스 충족을 위한 방문(drop-in) 형태의 시설보육서비스가²⁶⁾ 있다는 점에서도 프랑스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다른 보육서비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적 ECEC 서비스의 제도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보완재적 성격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방, 유치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후에도 베이비시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몇 개 주 및 프랑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ECEC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육아휴직, 세제상의 혜택 등 여러 제도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6) Haltes-garderies가 이에 해당함. 현재 보육시설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2001년 현재 3,230개의 시설에 6세 이하 아동 중 약 600,000 명이 등록되어 있다.

제 3 부

조사결과 분석

V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및 서비스 공급자 조사

1.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조사	93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	132
3. 요약 및 논의	148

1.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 조사

본 장은 가족내 아동돌봄이용실태로서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차이를 파악한 것이다.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이며 30세-34세가 전체의 45.9%로 가장 많다. 다음은 35세 - 39세로 34.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30대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29세 이하는 12.3%, 40세 이상은 7.5%이다. 학력을 보면 대졸이 5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졸(42.7%)이다(<표 V-1>).

<표 V-1> 응답자의 연령 및 학력

		사례수(%)
연령 (평균 33.9세)	29세 이하	123(12.3)
	30세-34세	459(45.9)
	35세-39세	343(34.3)
	40세이상	75(7.5)
	전체	1,000(100.0)
학력	고졸	427(42.7)
	대졸	559(55.9)
	대학원 졸 이상	16(1.6)
	전체	1,000(100.0)

조사응답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면(<표 V-2>) 응답자 가운데 취업자는 40.4%, 가사양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59.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의 경우는 모두 취업자이다. 월평균 수입을 보면 100-150만원미만이 3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150-200만원으로 30.7%로 나타났다.

〈표 V-2〉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월평균 수입

구분		사례수(%)	
경제활동여부	가사양육	596(59.6)	
	취업	여성	363(36.8)
		남성	5(3.6)
	전체	1,000(100.0)	
월평균수입 (가구소득+본인소득 모두 포함)	100만원 미만	35(8.7)	
	100-150만원미만	154(38.1)	
	150-200만원미만	124(30.7)	
	200-300만원미만	70(17.3)	
	300-500만원미만	18(4.5)	
	500만원이상	3(0.7)	
	전체	1,000(100.0)	

〈표 V-3〉은 응답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이다. 남성은 임금근로자가 3명, 자영업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72.4%로 대부분이며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26.5%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족의 사업을 보수없이 도와주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없었으며 여성은 4명이었다.

〈표 V-3〉 응답자의 고용형태

단위 :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3(60.0)	284(72.4)	287(72.3)
내 사업(자영업)	2(40.0)	104(26.5)	106(26.7)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0(0.0)	4(1.0)	4(1.0)
전체	5(100.0)	392(100.0)	397(100.0)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40-50시간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8.4%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미만은 20.9%로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40시간미만으로 전체의 14.1%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46.17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이상인 경

우가 37.2%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략 1/3이상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응답자의 주당근로시간

구분		사례수(%)
주당근로시간 (평균 46.17시간)	40시간 미만	57(14.1)
	40-50시간 미만	192(48.4)
	50-60시간 미만	83(20.9)
	60-70시간 미만	47(11.8)
	70시간 이상	18(4.5)
	전체	379(100.0)

응답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출근시간은 평균 9시 45분이며 퇴근시간은 평균 18시 41분으로 출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퇴근시간은 대체로 정규근로시간에 준하여 늦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근시간을 보면 오전 8시30분에서 10시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84.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퇴근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인 경우가 63.2%로 대부분이며 5시30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21.2%였다. 또 비록 그 비율이 높진 않으나 8시 이전 출근하는 경우가 6.5%,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15.6%로 나타나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 출근시간대별 퇴근시간 분포

단위: 사례수(%)

퇴근시간 \ 출근시간	6시-8시 사이	8시30분-10시사이	11시-5시 사이	계
12시-5시30분 사이	9(34.6)	70(20.8)	5(14.3)	84(21.2)
6시-8시 사이	15(57.7)	223(66.4)	13(37.1)	251(63.2)
8시30분-24시 사이	2(7.7)	43(12.8)	17(48.6)	62(15.6)
전체	26(6.5)	336(84.6)	35(8.8)	397(100.0)

응답자의 아동수는 평균 1.66명이며 2명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고 다음이 1명인 경우로 41.8%를 차지하였다(<표 V-6>). <표 V-7>에서 아동의 성별 분포는 아들이 47.7%, 딸이 50.3%로 딸이 약간 더 많다. 출생 순위별로 성별을 보면 첫째아동은 아들과 딸의 수가 똑같으며 둘째는 딸이 약간 더 많고 셋째는 아들이 약간 더 많으며 넷째 또한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세 이상이 23.2%로 가장 많고 4세(17.3%), 5세(16.4%)의 순이다. 첫째 자녀의 경우 6세 이상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다. 첫째 자녀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편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는 28세였다²⁷⁾.

다음 둘째 자녀는 1세 이하가 20.1%, 4세가 19.1%, 2세 18.2%, 3세 18.0%, 5세 16.3%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 셋째 자녀는 1세 이하가 3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2세로 24.7%였다. 넷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단 2사례이며 각각 2세와 4세였다.

〈표 V-6〉 아동수

구분	사례수(%)
1명	418(41.8)
2명	505(50.5)
3명	75(7.5)
4명	2(0.2)
전체	1,000(100.0)

27) 조사응답자의 자녀 모두를 조사한 결과로 5세 이상의 자녀가 다수 있었으며 돌봄 형태 분석은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V-7> 아동출생순위별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 사례수(%)

구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세째자녀	네째자녀	계
성별	남	500(50.0)	281(48.3)	44(57.1)	1(50.0)	826(47.7)
	여	500(50.0)	301(51.7)	33(42.9)	1(50.0)	835(50.3)
연령	1세이하	96(9.6)	120(20.6)	27(35.1)	-	243(14.6)
	2세	102(10.2)	106(18.2)	19(24.7)	1(50.0)	228(13.7)
	3세	129(12.9)	105(18.0)	10(13.0)	-	244(14.7)
	4세	163(16.3)	111(19.1)	13(16.9)	1(50.0)	288(17.3)
	5세	171(17.1)	95(16.3)	7(9.1)	-	273(16.4)
	6세이상	339(33.9)	45(7.7)	1(1.3)	-	385(23.2)
전체		1,000(100.0)	582(100.0)	77(100.0)	2(100.0)	1,661(100.0)

<표 V-8>은 응답자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들이다. 배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이며 35세-39세가 50.4%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30세-34세였다. 학력수준을 보면 대졸이 6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고졸로 26.6%이다. 경제활동은 98.9%가 하고 있었으며 가사와 양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9명, 기타가 2명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가 77.5%로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22.4%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사업을 보수없이 돕는다고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표 V-8〉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경제활동 관련 사항

구분		사례수(%)
배우자 연령 (평균 36.4세)	29세이하	33(3.3)
	30세 - 34세	260(26.2)
	35세 - 39세	501(50.4)
	40세 이상	200(20.1)
	전체	994(100.0)
배우자 학력	중졸 이하	2(0.2)
	고졸	264(26.6)
	대졸	685(68.9)
	대학원졸 이상	43(4.3)
	전체	994(100.0)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983(98.9)
	가사양육	9(0.9)
	기타	2(0.2)
	전체	994(100.0)
고용 형태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762(77.5)
	내 사업(자영업)	220(22.4)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1(0.1)
	전체	983(100.0)

가구소득은 180만원-3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350만원-500만원 미만으로 41.0%로 나타났다(<표 V-9>). 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가구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가구소득이 180-3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자는 17.0%, 비취업자는 83.0%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가구소득이 350-50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자는 58.3%, 비취업자는 41.7%로 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자가 1/3이 넘어 비취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가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5사례를 제외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홀벌이보다 가구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V-9〉 가구 월평균소득

단위 : 사례수(%)

구분	취업	비취업	전체
180만원미만	7(43.8)	9(56.3)	16(1.6)
180-350만원 미만	78(17.0)	381(83.0)	459(45.9)
350-500만원 미만	239(58.3)	171(41.7)	419(41.0)
500-700만원미만	67(69.8)	29(30.2)	96(9.6)
700만원이상	13(68.4)	6(31.6)	19(1.9)
계	404(40.4)	596(59.6)	1,000(100.0)

나. 돌봄형태 관련 기본적 특성들²⁸⁾

자녀의 수와 순번을 포함한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장 많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이용 서비스 조합은 ‘직접돌봄+시설돌봄’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돌봄’, ‘직접돌봄+유료가정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돌봄 및 이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914로 전체의 약 9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친인척에 의한 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약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8) 아동 돌봄 형태는 조사응답자의 5세 이하 아동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266사례가 수집되었다.

〈표 V-10〉 가족내 최연소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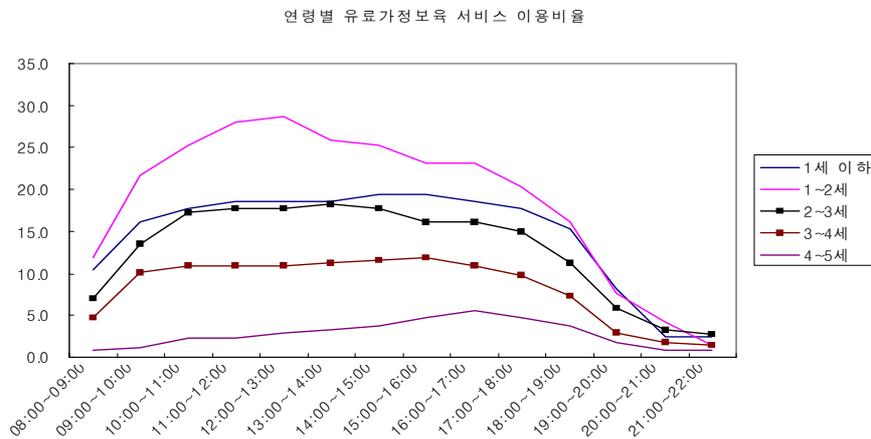
구분 서비스 이용 유형 합계	이용 서비스 종류				빈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1	○	×	×	×	328
	×	○	×	×	22
	×	×	○	×	1
	×	×	×	○	5
소계					338
2	○	○	×	×	23
	○	×	○	×	452
	○	×	×	○	140
	×	○	○	×	13
	×	○	×	○	2
	×	×	○	○	1
소계					618
3	○	○	○	×	23
	○	○	×	○	3
	○	×	○	○	16
	×	○	○	○	0
소계					42
4	○	○	○	○	2
합계	980	81	503	168	1000

따라서 직접 돌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가정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하나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4가지 즉, ① 친인척 보육 선택, ② 시설보육 선택, ③ 유료 가정보육 선택, ④ 아무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선택하지 않음 또는 일을 하는 경우 생기게 되는 수요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접근 가능할 것이다.

[그림 V-1]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내 보육 이용률을 나타낸다.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내 직접 보육 이용률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또 그림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정내 보육을 대신하여 시설보육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치원,

놀이방 등 시설에 등록하는 비율이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료 가정보육 이용 빈도는 1-2세에 가장 높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 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경우 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요구되는 보육서비스가 유료 가정내 보육에 의해 충족되다가, 이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시설보육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림 V-1> 아동연령별 유료 가정보육 서비스 이용률

다.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1) 아동연령별 돌봄형태

다음 아동돌봄형태에 대해 아동연령별로 알아보았다. 아동돌봄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하루 중 아동을 돌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응답이다.

<표 V-11>을 보면 직접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8.4%로 대부분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동을 직접 돌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로 전체의 57.4%이다.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

는 경우는 15.0%로 나타났다²⁹⁾.

아동연령별로 보면 직접돌봄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을 시설에 보내거나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오전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에 아동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친인척돌봄은 8.1%만이 해당된다고 응답하여 4가지 돌봄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2세의 경우에 11.0%로 가장 높지만 연령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시설돌봄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아서 1세 이하는 13.2%에 불과한 반면 2세는 30.4%, 3세는 57.0%에서 4세, 5세는 각각 80.9%, 93.4%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시설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1세 이하는 12.8%인 반면 2세는 24.2%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3세, 4세, 5세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용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2세 아동의 유료가정돌봄 이용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이유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또 시설돌봄은 대략 3세 이상의 이용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1〉 아동연령별 돌봄 형태

단위 : 사례수(%)

연령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세 이하	232(99.1)	2(0.9)	20(8.5)	214(91.5)	31(13.2)	203(86.8)	30(12.8)	204(87.2)
2세	218(96.0)	9(4.0)	25(11.0)	227(93.0)	69(30.4)	158(69.6)	55(24.2)	172(75.8)
3세	242(99.2)	2(0.8)	17(7.0)	227(93.0)	139(57.0)	105(43.0)	43(17.6)	201(82.4)
4세	283(98.3)	5(1.7)	18(5.5)	270(93.8)	233(80.9)	55(19.1)	43(14.9)	245(85.1)
5세	271(99.3)	2(0.7)	23(8.4)	250(91.6)	255(93.4)	18(6.6)	19(7.0)	254(93.0)
전체	1,246(98.4)	20(1.6)	103(8.1)	1,163(91.9)	727(57.4)	539(42.6)	190(15.0)	1,076(85.0)

29) 유료가정돌봄은 서문희 외(2005)의 전국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이용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조사는 1.1%가 하고 있다고 한 반면 본 조사는 1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면 서문희 외(2005)의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유료가정보육 이용 비율에 대한 정보는 서문희 외(2005)의 조사결과가 실태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아동의 연령과 취업여부, 근무시간대 등에 따라 하루시간대별 아동 돌봄 형태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소득별 돌봄 형태

돌봄 형태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과 가구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V-12>, <표 V-13>참조). 우선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직접돌봄 해당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돌봄은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중간 이상이면서 최상위가 아닌 경우에 친인척돌봄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시설돌봄은 100만원-15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79.3%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다시 그 비율이 낮아지다가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용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유료가정돌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율이 높고 시설은 유료가정돌봄보다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이용율이 높다.

<표 V-12> 응답자 월평균 소득과 돌봄 형태

단위 : 사례수(%)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00만원 미만	39(100.0)	-	1(2.6)	38(97.4)	24(61.5)	15(38.5)	13(33.3)	26(66.7)
100-150만원미만	174(97.2)	5(2.8)	36(20.1)	143(79.9)	142(79.3)	37(20.7)	27(15.1)	152(84.9)
150-200만원 미만	136(95.1)	7(4.9)	27(18.9)	116(81.1)	87(60.8)	56(39.2)	53(37.1)	90(62.9)
200-300만원 미만	75(93.8)	5(6.3)	24(30.0)	56(70.0)	35(43.8)	45(56.3)	37(46.3)	43(53.8)
300-500만원 미만	19(95.0)	1(5.0)	4(20.0)	16(80.0)	12(60.0)	8(40.0)	9(45.0)	11(55.0)
500만원이상	3(75.0)	1(25.0)	0(0.0)	4(100.0)	3(75.0)	1(25.0)	3(75.0)	1(25.0)
통계량	$\chi^2=8.126$ df=5; p=.149		$\chi^2=13.620$ df=5; p=.018		$\chi^2=33.792$ df=5; p=.000		$\chi^2=38.178$ df=5; p=.000	

가구 월 평균 소득과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표 V-13>참조) 응답자의 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돌봄은 가구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돌봄은 가구소득이 35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해당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이 18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였다.

<표 V-13> 월평균 가구 소득과 돌봄 형태

단위 : 사례수(%)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80만원 미만	23(100.0)	-	4(17.4)	19(82.6)	14(60.9)	9(39.1)	6(26.1)	17(73.9)
180-350만원 미만	599(99.0)	6(1.0)	27(4.5)	578(95.5)	330(54.5)	275(45.5)	37(6.1)	568(93.9)
350-500만원 미만	495(98.2)	9(1.8)	49(9.7)	455(90.3)	324(64.3)	180(35.7)	87(17.3)	417(82.7)
500-700만원 미만	108(97.3)	3(2.7)	22(19.8)	89(80.2)	47(42.3)	64(57.7)	50(45.0)	61(55.0)
700만원 이상	21(91.3)	2(8.7)	1(4.3)	22(95.7)	12(52.2)	11(47.8)	10(43.5)	13(56.5)
통계량	$\chi^2=10.243$ df=5; p=.037		$\chi^2=35.970$ df=5; p=.000		$\chi^2=22.454$ df=5; p=.000		$\chi^2=134.853$ df=5; p=.000	

라.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표 V-14>와 <그림 V-2>는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동의 일과시간에 따라 돌봄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오전 시간 대에 직접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낮 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8시-9시에는 직접돌봄이 80.8%로 가장 높은 반면 10시부터 4시 사이에는 직접돌봄의 비율이 50% 이하이며 시설돌봄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특히 출근시간대를 기점으로 하여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활동이 돌봄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퇴근 시간 이전인 2~시를 기점으로 직접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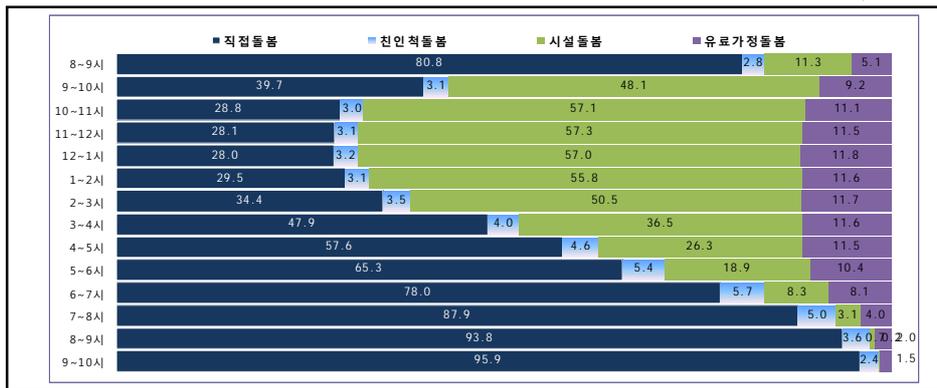
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를 살펴보면 10시에서 6시 사이에 10%대의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낮 시간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V-14〉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단위 : 사례수(%)

하루시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전체
8~9시	80.8	2.8	11.3	5.1	100.0
9~10시	39.7	3.1	48.1	9.2	100.1
10~11시	28.8	3.0	57.1	11.1	100.0
11~12시	28.1	3.1	57.3	11.5	100.0
12~1시	28.0	3.2	57.0	11.8	100.0
1~2시	29.5	3.1	55.8	11.6	100.0
2~3시	34.4	3.5	50.5	11.7	100.1
3~4시	47.9	4.0	36.5	11.6	100.0
4~5시	57.6	4.6	26.3	11.5	100.0
5~6시	65.3	5.4	18.9	10.4	100.0
6~7시	78.0	5.7	8.3	8.1	100.1
7~8시	87.9	5.0	3.1	4.0	100.0
8~9시	93.8	3.6	0.7	2.0	100.1
9~10시	95.9	2.4	0.2	1.5	100.0

(단위: %)



〈그림 V-2〉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1) 아동연령과 시간대별 돌봄 형태

아동의 연령과 하루 시간대별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돌봄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설돌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인척 돌봄의 경우 2세 아동의 이용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유료가정돌봄 또한 2세 아동의 이용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 1세이하 아동

<그림 V-3>은 1세 이하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1세 이하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시간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하루시간 전체에서 매시간 모두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 다른 돌봄유형을 비교하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시간대별로 보면 10시부터 3시까지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약 11%에서 13%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유료가정돌봄도 대략 11%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시설돌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오전 8시에는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6.0%로 시설(3.8%)에 비해 약간 더 높으며, 오후 3시 이후 시간에는 시설돌봄보다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 이를 보면 시설돌봄 이용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 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1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가 대체로 오전 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는 직접돌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낮시간대에도 다른 돌봄형태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직접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낮 시간대 돌봄 추이를 보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비교해보면 아침 시간(10시 이전)과 오후 시간(5시 이후)에는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데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개별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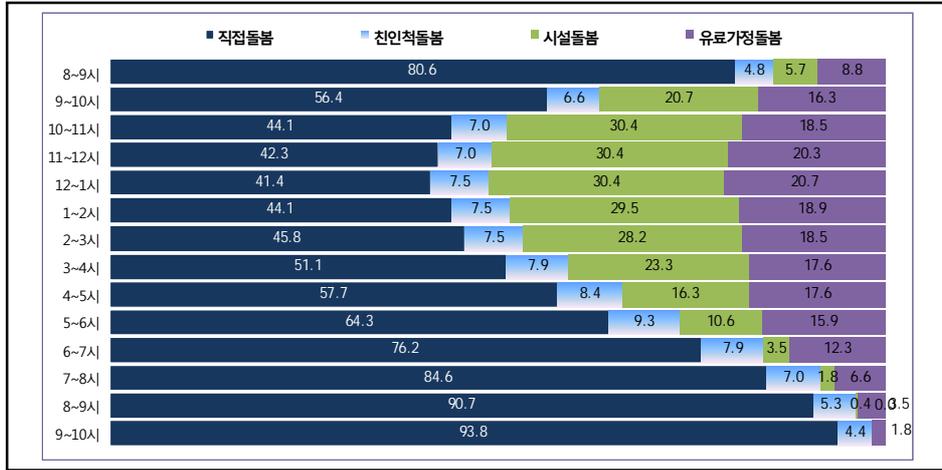


〈그림 V-3〉 1세이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나) 2세 아동

2세 아동에 대해 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자세히 알아보면(<그림 V-4>)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직접돌봄의 비율이 대략 80%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리고 1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설돌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료가정돌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오전 9시-10시시간대를 보면 시설돌봄이 20.7%로 직접돌봄에 이어 두 번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4시까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는 유료가정돌봄(8.8%)이 시설돌봄(5.7%)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4시부터도 시설보다는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를 보면 1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시설돌봄은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대는 직접돌봄을 하거나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료가정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시설 운영시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시설에 장시간 두는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른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직접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과 같은 개별 돌봄 방식을 선호함을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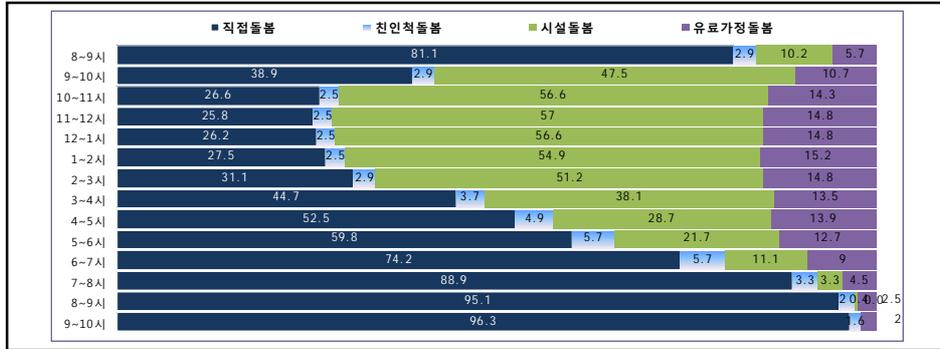


<그림 V-4> 2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다) 3세이상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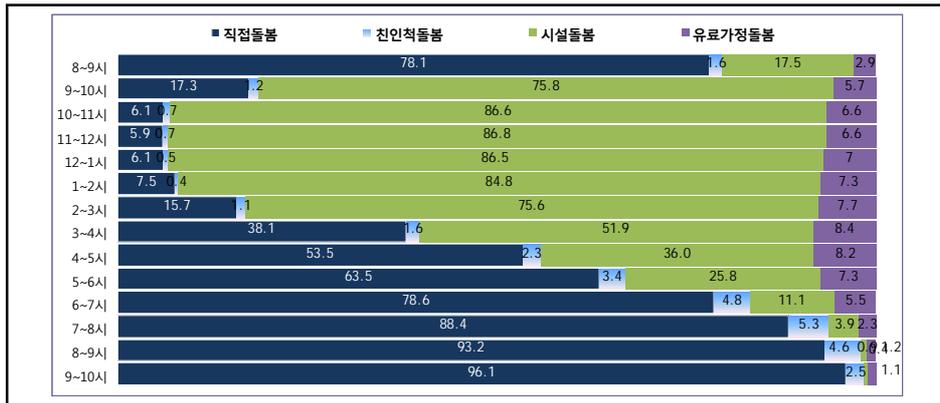
아래 <그림 V-5>와 <그림 V-6>은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에 대해 3세 아동과 4-5세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3세 아동과 4-5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형태에서 1세 이하 아동과 2세 아동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낮시간대(오전 9시이전, 오후 3시 또는 4시이후)에 직접돌봄보다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오전 9시-10시 사이를 보면 3세 아동은 47.5%가 4-5세의 경우 75.8%가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3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4-5세 아동은 2/3 이상이 시설돌봄을 이용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이후 부터는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가는 아동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은 2세 이하 아동에 비해 그 비율이 적으며 특히 4-5세 아동은 매우 적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3세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1세이하 아동보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3세 아동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5세 아동의 유료가정돌봄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역시 낮 시간대 이용비율이 높다.

(단위: %)



<그림 V-5> 3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단위: %)



<그림 V-6> 4~5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2) 취업상태와 시간대별 돌봄 형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조사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V-7>, <그림 V-8>참조). 우선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다. 특히 주로 일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취업자의 경우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50%이상이며 유료가정돌봄의 비율도 약 25% 정도로 1/4수준이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 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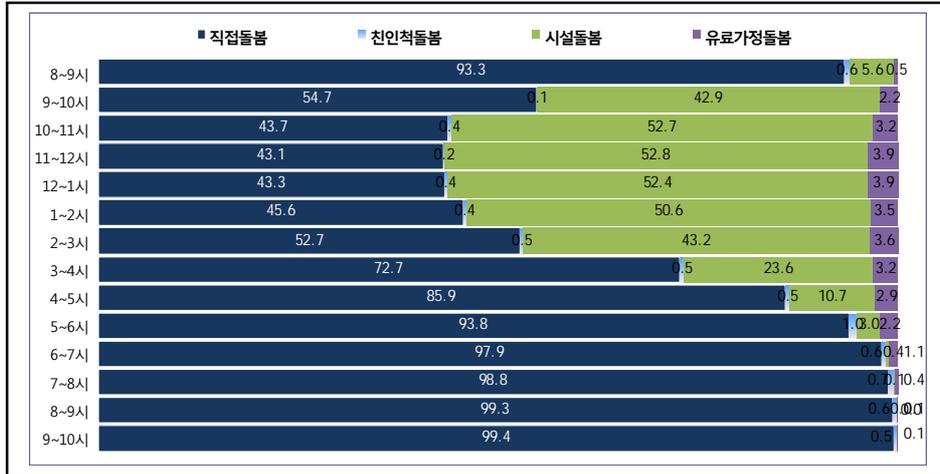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돌봄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며 돌봄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은 비취업자는 이용비율이 매우 낮으며 취업자는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자의 경우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돌봄 형태 가운데 가용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인척돌봄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무시간이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 형태보다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



〈그림 V-7〉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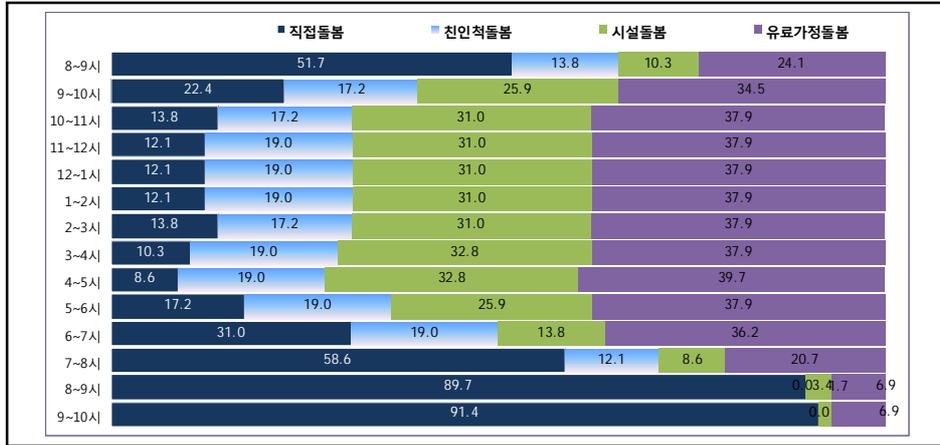
〈그림 V-8〉 비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가) 취업상태별 1세이하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 형태

아래 <그림 V-9>, <그림 V-10> 은 1세 이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취업 상태별 돌봄형태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비취업자는 하루시간대 대부분 직접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설돌봄이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는 직접돌봄이 51.7%, 유료가정돌봄이 24.1%, 친인척돌봄이 13.8%, 시설돌봄이 10.3%로 직접돌봄이외에 유료가정돌봄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이 친인척돌봄이다. 즉 취업자의 경우 오전시간대에 직접돌봄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보다는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가정에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유료가정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높고 다음이 시설돌봄 형태이다. 한편 친인척돌봄은 개인적 요인으로 자원이 없는 경우 이용하기 어려운 돌봄 형태로 전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후 6시-8시 사이의 돌봄형태를 보면 직접돌봄을 제외하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친인척돌봄으로 나타나 돌봄시설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112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단위: %)



〈그림 V-9〉 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그림 V-10〉 비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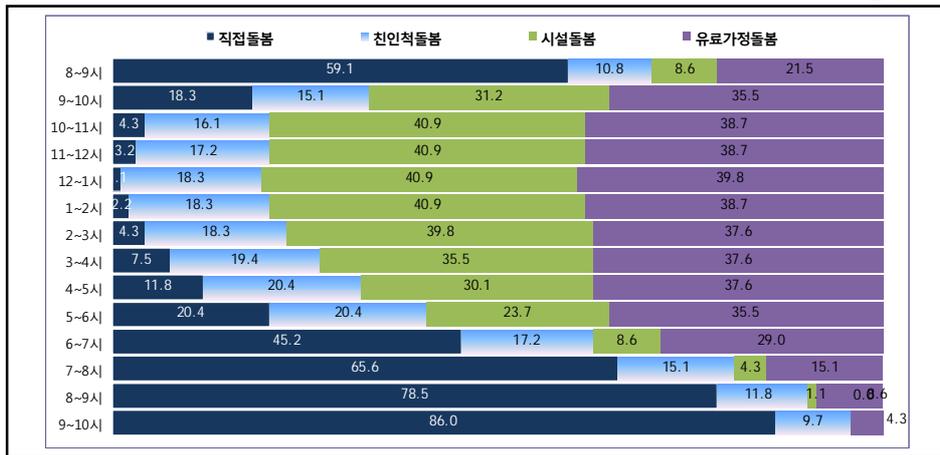
(나) 취업상태별 2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 형태

2세 아동에 대해 취업상태별로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1세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는 직접돌봄비율이 높다.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는 95.5%가 직접돌봄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70%이상이 직접 아

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는 시설돌봄이 두 번째로 많은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20%에서 23% 정도이다.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유료가정돌봄도 매우 적다. 이를 보면 아동이 2세이고 비취업자는 대부분 직접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교육이나 아동의 사회성 등을 목적으로 즉, 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를 보면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직접돌봄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밖의 시간대는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양자의 비율을 비교하면 시설돌봄이 약간 더 높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대에는 아동을 시설에 보내거나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친인척 돌봄은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낮다. 특히 오전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유료가정돌봄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5시-6시에도 시설보다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더 높다. 오후 6시 이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친인척돌봄, 마지막으로 시설돌봄으로 나타나 1세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시설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V-11〉 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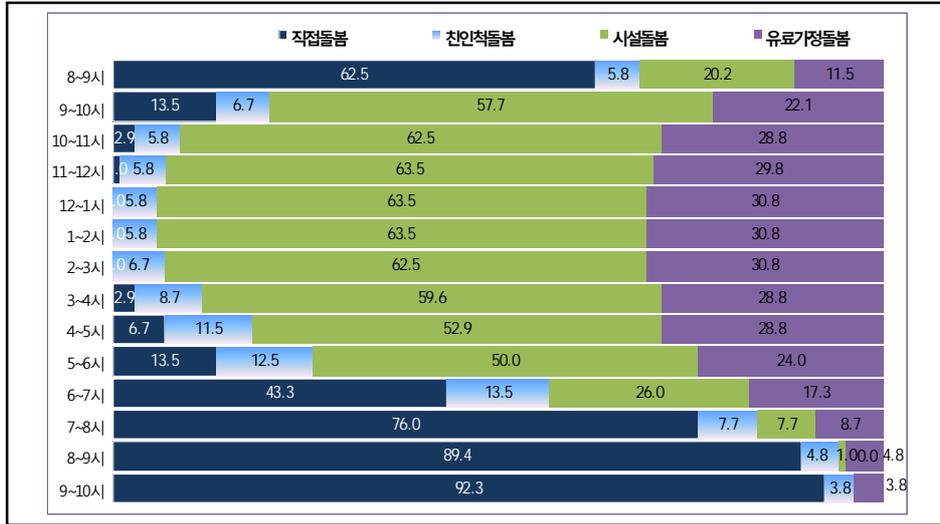
<그림 V-12> 비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

(다) 취업상태별 3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형태

다음 <그림 V-13>과 <그림 V-14>는 3세 아동에 대해 취업상태별로 알아본 것이다. 1세이하와 2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낮시간대(오전10시-오후3시)에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직접돌봄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3세 아동의 경우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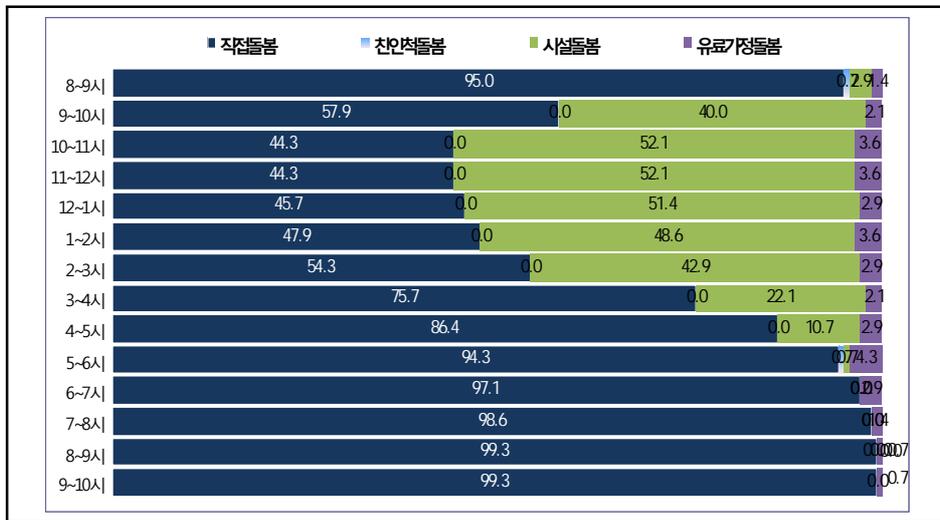
취업자의 경우를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시설돌봄이 60%에 가깝거나 상회한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도 시설돌봄이 50%를 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다. 오후 6시에서 7시에는 비록 직접돌봄이 43.3%, 시설돌봄이 26.0%로 직접돌봄보다는 적지만 유료가정돌봄과 친인척돌봄보다는 높아서 1세이하와 2세 아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2세 이하의 아동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직접돌봄 다음으로 유료가정돌봄이었지만 3세 아동은 시설돌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직접돌봄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에서 돌봐주는 것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위: %)



〈그림 V-13〉 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그림 V-14〉 비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라) 취업상태별 4-5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 형태

취업상태별로 4-5세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낮시간대 시설돌봄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4-5세 아동은 대부분 돌봄시설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대별로 보면 취업자, 비취업자 모두 오전 9시부터 시설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오후 시간은 비취업자는 오후 3시 이후 시설 이용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지만 취업자는 오후 7시 이후 시설 이용비율이 급감한다. 유료가정돌봄은 비취업자의경우 매우 낮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이용비율이 낮다. 다만 오후 3시부터 오후6시까지 16%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돌봄시설이용이 끝난 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V-15〉 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그림 V-16〉 비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마.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돌봄형태별로 각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아동을 직접 돌보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74.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순위 사유 가운데 두 번째는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이다. 이를 보면 아이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직접 돌보거나 비취업인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 사유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30.6%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비용이 부담돼서”이다.

이를 취업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는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가 4사례로 매우 적으며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가 1순위 사유이며 2순위 사유로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2사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부모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가 각각 1사례씩 나타났다. 이중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라고 응답한 사례는 응답자인 아동의 어머니는 취업상태이나 배우자가 비취업상태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음 비취업자의 경우는 1순위의 경우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직접 돌봄을 하는 사례가 전체의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이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서”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중 부모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는 조사응답자인 아동의 어머니가 비취업상태이므로 결국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임을 확인할수 있다. 다음 2순위 응답을 보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많아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유는 “비용이 부담돼서”이며 세 번째는 “부모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설에서 여러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시설의 위생및 안전에 대해 믿을수 없어서”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을 직접 돌보는 사유로는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시설에 보내기는 나이가 어린 경우이거나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직접 돌볼수 있는 여건이 된다거나,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직접 돌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5〉 직접돌봄을 하는 이유

단위 :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취업	비취업	계	취업	비취업	계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50.0)	247(74.6)	249(74.3)	2(50.0)	35(10.8)	37(11.3)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0(0.0)	9(2.7)	9(2.7)	0(0.0)	7(2.2)	7(2.1)
시설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0(0.0)	3(0.9)	3(0.9)	0(0.0)	28(8.7)	28(8.6)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0(0.0)	7(2.1)	7(2.1)	0(0.0)	24(7.4)	24(7.3)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2(50.0)	8(2.4)	8(2.4)	0(0.0)	35(10.8)	35(10.7)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0(0.0)	21(6.3)	23(6.9)	1(25.0)	99(30.7)	100(30.6)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수 없어서	0(0.0)	1(0.3)	1(0.3)	0(0.0)	4(1.2)	4(1.2)
비용이 부담돼서	0(0.0)	12(3.6)	12(3.6)	0(0.0)	53(16.4)	53(16.2)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0(0.0)	23(6.9)	23(6.9)	1(25.0)	38(11.8)	39(11.9)
전체	4(1.2)	331(98.8)	335(100.0)	4(1.2)	331(98.8)	327(100.0)

다음 시설에 보내는 이유를 살펴보면(<표 V-16>) 1순위 사유는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가 41.1%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로 나타났다. 2순위 사유를 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28.2)”,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28.2%)” 이다. 이를 보면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라는 사유 이외에는 대부분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유료가정돌봄을 하는 사유를 보면(<표 V-17>) 1순위에서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49.4%로 가장 높아서 아동의 연령으로 인해 직접돌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료가정돌봄도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 사유에서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직접 돌봄을 하는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시설과 달리 1명의 돌봄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1명의 아동을 돌봐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한 사유를 보면 시설에 보내기에 아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 이용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표 V-16> 시설에 보내는 이유

단위 :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299(41.1)	105(14.5)
비용이 저렴하므로	47(6.5)	78(10.8)
근무 시간과 시설돌봄 시간이 맞아서	53(7.3)	78(10.8)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102(14.0)	204(28.2)
또래들과 활동 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198(27.2)	204(28.2)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재 교구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20(2.8)	44(6.1)
자질있고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못 찾아서	3(0.4)	8(1.1)
베이비시터는 시설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해서	-	2(0.3)
기타	5(0.6)	-
전체	727(100.0)	724(100.0)

〈표 V-17〉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시설을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80(49.4)	11(7.0)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18(11.1)	21(13.4)
시설에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21(13.0)	31(19.7)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14(8.6)	14(8.9)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5(3.1)	14(8.9)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14(8.6)	34(21.7)
시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	6(3.8)
무료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5(3.1)	8(5.1)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5(3.1)	18(11.5)
전체	162(100.0)	157(100.0)

〈표 V-18〉은 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비록 사례 수는 22명에 불과하지만 1순위 사유 가운데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2순위 사유를 보면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7명,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가 6명이다. 이를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료가정돌봄에 비해 저렴하지만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돌봄시설 운영시간이후에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유료가정돌봄을 시간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교육적 목적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설돌봄의 경우 운영시간 문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비용과 교육적 효과 부분에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V-18〉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

단위 :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11(50.0)	3(14.3)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	2(9.1)	6(28.6)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	6(27.3)	7(33.3)
유료베이비시터에게 가사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3(13.6)	5(23.8)
전체	22(100.0)	21(100.0)

바. 돌봄담당자와 시설유형

친인척에게 아동을 맡기는 경우 돌봄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은 무엇인지, 유료가정돌봄을 하는 경우는 누가 아동을 돌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친인척돌봄을 하는 사례는 아동 1,266명 가운데 103명으로 매우 소수이다. 구체적으로 돌봄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 부모가 53.4%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모로 36.9%이다. 다음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그 외 배우자의 친척 등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아동을 돌봐주는 친인척은 거의 대다수가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즉 아동의 조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인척돌봄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적다는 점, 아동의 조부모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인척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동을 직접돌보거나 시설 또는 유료가정돌봄 등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의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경우 시설이나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모 중 1인이 경제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며 대부분 어머니인 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친인척돌봄이 실제로 이용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공적 영역 또는 민간영역에서 선택가능한 시설 또는 유료가정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친인척돌봄을 하는 경우 돌봄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이 거주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61.2%이고 친인척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38.8%로 대략 2:1정도로 나누어진다. 즉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기 하지만 친인척이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돌보는 경우도 1/3이 넘는다. 서문희외(2004)의 전국 보육실태 조사³⁰⁾에 의하면 보육장소에 있어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의 경우 비동거시 보육장소는 보

30) 서문희외, 2005, 「전국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육제공자의 집이 68.8%, 아동의 집이 31.2%이며, 비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의 경우 보육제공자의 집이 55.2%, 아동의 집이 44.8%로 보육제공자의 집이 더 많았다.

시설돌봄의 경우 보내는 시설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설돌봄 이용자는 전체 727명이며 이중 5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유치원으로 30.0%이며 놀이방이 8.8%, 학원유치부가 가장 소수로 3.3%였다.

유료가정돌봄은 이웃을 통해, 주변의 소개를 통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경우가 가장 다수로 전체 190명의 아동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30사례이며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비율이 적어 27건이었다. 이를 보면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제외하면 유료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개인적 경로를 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이 드러났다.

〈표 V-19〉 돌봄형태별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구분		사례수	%	
친인척돌봄	본인과의 관계	본인부모	55	53.4
		배우자의 부모	38	36.9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배우자	7	6.8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배우자	2	1.9
		그외 배우자의 친척	1	1.0
	전체	103	100.0	
	돌봄장소	아동이 거주하는 집	63	61.2
	친인척의 집	40	38.8	
	전체	103	100.0	
시설돌봄	시설유형	어린이집	421	57.9
		놀이방	64	8.8
		유치원	218	30.0
		학원 유치부	24	3.3
		전체	727	100.0
유료가정 돌봄	돌봄담당자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30	15.8
		사실 업체의 베이비 시터	27	14.2
		이웃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133	70.0
		전체	190	100.0

사.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표 V-20>은 돌봄형태별 비용을 살펴본 것이다. 친인척돌봄 비용은 월평균 비용이 23만8천원이며 30만원-50만원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다. 그러나 20만원-30만원도 21.4%, 22건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20만원 미만을 드린다고 한 경우도 19.5%이고 대가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시설돌봄은 월평균이용비용은 2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으며 30만원-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36.7%를 차지하였다. 20만원미만이라는 응답도 17.7%이며 5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우 소수로 2.2%에 불과하다. 유료가정돌봄은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³¹⁾.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모두 28건이며 월평균이용비용은 1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으며 20만원-30만원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다. 베이비시터 이용자는 월평균 이용비용이 66만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전체의 24.8%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0만원-60만원미만으로 23.3%이다.

월평균이용비용에서 최고액수를 살펴보면 친인척돌봄이 100만원, 시설돌봄이 88만원, 아이돌보미가 40만원, 베이비시터가 180만원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장 저렴하고 베이비시터가 가장 비싸다. 평균액수도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으며 가장 비싼 것은 베이비시터이다. 친인척돌봄의 평균비용은 베이비시터와 시설돌봄 다음 순위이지만 실제 가장 고액이 100만원으로 나타나 이용비용에 편차가 심하여 각 개인에 따라 시설이나 아이돌보미에 비해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31) 설문조사에서는 비정기이용자의 경우도 비용을 조사하였으나 친인척돌봄과 시설돌봄의 경우 월평균이용비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월정기이용자의 이용비용만을 제시하였다.

〈표 V-20〉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구분		사례수	%	
친인척돌봄	월평균이용비용 (Mean= 23.8만원 SD= 18.85)	대가 드리지 않음	18	17.5
		20만원미만	20	19.4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22	21.4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26	25.2
		50만원이상	17	16.5
		전체	103	100.0
시설돌봄	월평균이용비용 (Mean= 26.9만원, SD=9.91)	무비용	1	0.1
		20만원미만	129	17.7
		20만원이상-30만 미만	267	36.7
		30만원이상-50만 미만	314	43.2
		50만원이상	16	2.2
		전체	727	100.0
유료가정돌봄 -아이돌보미	월정기이용자 이용비용 (Mean=16.7만원, SD=9.43)	10만원미만	7	25.0
		10만원-20만원미만	9	32.1
		20만원-30만원미만	10	35.7
		30만원이상	2	7.1
		전체	28	100.0
유료가정돌봄 -베이비시터	월정기이용자 이용비용 (Mean=66.9만원, SD=33.78)	20만원미만	9	6.8
		20만원-40만원미만	16	12.0
		40만원-60만원미만	31	23.3
		60만원-80만원미만	25	18.8
		80만원-100만원미만	19	14.3
		100만원이상	33	24.8
		전체	133	100.0

아.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 실태

1)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

가)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

유료가정돌봄에서 아이돌보미가 아닌 유료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를 통해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및 업무 내용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21>은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베이비시터의 평균연령은 47.3세이며 40대가 50.0%로 가장 많다. 다음이 50대로 26.1%이며 세 번째는 30대로 17.6%이다. 학력은 고졸이 6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대졸(15.9%)이며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학력을 모른다고 한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가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격증이 없다고 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으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도 39.2%나 되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76사례 가운데 단 5사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자격증여부에 관계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베이비시터 무료교육수료증이 3사례, 민간베이비시터 자격증이 1사례, 유아교육관련 전공자격증이 1사례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증은 단 1사례에 불과하다.

〈표 V-21〉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여부

	구분	사례수	%
연령 (Mean=47.3세, SD=8.11)	29세 이하	5	2.8
	30-39세	22	17.6
	40-49세	74	50.0
	50-59세	61	26.1
	60세 이상	14	3.4
	전체	176	100.0
학력	고졸미만	15	8.5
	고졸	111	63.1
	대졸	28	15.9
	모름	22	12.5
	전체	176	100.0
자격증소지여부	있다	5	2.8
	없다	102	58.0
	모름	69	39.2
	전체	176	100.0

나) 베이비시터의 업무 내용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해주는 일에 대해 항목별로 나누어 물어 보았다. 아이와 놀아주기가 96.0%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아이먹이기로 90.9%이다. 아이데리고 집근처 놀이터가기는 83.5%이며 동화책 읽어주기, 아이씻기기는 각각 79.5%, 76.7%로 역시 많은 수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아이식사준비, 아이방, 아이물건 정리정돈, 아이병원데려가기 등이 60%이상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가 8.0%만이 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가족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일 전반(13.1%), 기저귀 빨아삶기(18.8%), 아이를 돌봄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기(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이비시터가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것이 가족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일 전반으로 34.1%가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로 전체의 19.9%가 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베이비시터의 업무가 아동을 돌보는 일이 주요 업무임에도 가사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베이비시터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베이비시터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경우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이용자의 희망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가사일은 주요 업무로 규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표 V-22〉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내용 및 희망업무

단위 : 사례수(%)

구분	현재업무	희망업무
아이 먹이기	320(90.9)	2(0.6)
아이 씻기기	270(76.7)	14(4.0)
아이 식사준비(이유식 만들기 포함)	232(65.9)	12(3.4)
아이 젖병 소독 및 그릇 소독	150(42.6)	4(1.1)
기저귀 빨아 삶기	66(18.8)	6(1.7)
아이 옷 세탁	134(38.1)	10(2.8)
아이방·아이물건 정리 정돈	240(68.2)	10(2.8)
아이 학습관련 도움	188(53.4)	34(9.7)
아이와 놀아주기	338(96.0)	2(0.6)
동화책 읽어주기	280(79.5)	18(5.1)
아이 데리고 집근처 놀이터 가기	294(83.5)	2(0.6)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	28(8.0)	70(19.9)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78(22.2)	12(3.4)
아이 병원 데려 가기	218(61.9)	20(5.7)
가족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일 전반	46(13.1)	120(34.1)
없다	-	16(4.5)
전체	352(100.0)	352(100.0)

2)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해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성격, 전문성, 성실성, 지속성, 아이에 대한 애정 등의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비용은 대체로 만족한다가 48.9%, 보통이다가 33.0%로 나타나 비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낮아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성격 또한 마찬가지다. 그 외 성실성, 지속성, 아이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측면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V-23〉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사례수(%)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계
이용시간	28(15.9)	130(73.9)	14(8.0)	2(1.1)	2(1.1)	176(100.0)
비용	8(4.5)	86(48.9)	58(33.0)	22(12.5)	2(1.1)	176(100.0)
양육방식	19(10.8)	99(56.3)	53(30.1)	5(2.8)	-	176(100.0)
성격	32(18.2)	118(67.0)	26(14.8)	-	-	176(100.0)
전문성	8(4.5)	73(41.5)	89(50.6)	4(2.3)	2(1.1)	176(100.0)
성실성	43(24.4)	118(67.0)	15(8.5)	-	-	176(100.0)
지속성	34(19.3)	124(70.5)	18(10.2)	-	-	176(100.0)
아이에 대한 애정	31(17.6)	130(73.9)	13(7.4)	2(1.1)	-	176(100.0)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22사례로 매우 소수이긴 하나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항목은 입회비용, 이용비용, 베이비시터관리감독, 베이비시터 교육가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 베이비시터관련 불만접수처리, 베이비시터 면접, 예약 등 이용규정, 안전사고시 보상책임 등이다. 전반적으로 응답이 대체로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많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낮은 편이다. 입회비용,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라고 하겠다. 이용비용, 베이비시터관련불만접수처리, 안전사고시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표 V-24〉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업체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계
입회비용	-	5(22.7)	14(63.6)	3(13.6)	-	22(100.0)
이용비용	1(4.5)	10(45.5)	9(40.9)	2(9.1)	-	22(100.0)
베이비시터 관리감독	1(4.5)	9(40.9)	12(54.5)	-	-	22(100.0)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 내용	1(4.5)	8(36.4)	13(59.1)	-	-	22(100.0)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	2(9.1)	7(31.8)	13(59.1)	-	-	22(100.0)
베이비시터관련불만접수처리	1(4.5)	12(54.5)	8(36.4)	1(4.5)	-	22(100.0)
베이비시터 면접, 예약 등 이용규정	1(4.5)	11(50.0)	9(40.9)	1(4.5)	-	22(100.0)
안전사고시 보상책임	1(4.5)	11(50.0)	9(40.9)	1(4.5)	-	22(100.0)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해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1순위로는 인성(37.1%), 베이비시터 경력(15.6%), 육아경험(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는 인성(19.9%), 육아경험(19.2%), 전문성(14.3%)의 순이며, 3순위는 육아경험(17.1%), 전문성(16.8%), 인성(12.4%)의 순이었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고려하는 기준은 인성, 육아경험이며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인성과 함께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전문성이나 시터로서의 경력도 갖춘 베이비시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시터의 교육이나 자격관리 등에 참고하여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표 V-26>참조) 매우 필요하다에 44.0%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이다에 54.7%가 찬성하고 있어 대다수가 사전에 면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

단위 :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학력	66(6.6)	36(3.6)	31(3.1)
베이비시터 경력	156(15.6)	140(14.0)	88(8.8)
인성	371(37.1)	199(19.9)	123(12.4)
육아관련 자격증 소지	40(4.0)	56(5.6)	111(11.2)
가정환경	28(2.8)	77(7.7)	57(5.7)
연령	33(3.3)	49(4.9)	42(4.2)
육아경험	119(11.9)	192(19.2)	170(17.1)
비용	64(6.4)	60(6.0)	121(12.2)
전문성	94(9.4)	143(14.3)	167(16.8)
활동가능시간	28(2.8)	42(4.2)	80(8.0)
종교	-	2(0.2)	-
아이에 대한 애정	1(0.1)	2(0.2)	1(0.1)
외모인상	-	1(0.1)	1(0.1)
전체	1,000(100.0)	999(100.0)	995(100.0)

〈표 V-26〉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 필요정도

구분	사례수	비율(%)
매우 필요하다	440	44.0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547	54.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학력, 연령, 자격증, 교육관련내용,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정신병력여부(71.6%), 신원보증(69.3%), 건강진단서(62.1%)의 순이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믿을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육관련내용, 자격증 등이 학력이나 연령보다 매우필요하다는 응답비

율이 높아 역시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 학력보다는 교육과 자격증으로 판단하고자 함을 잘 보여준다(<표 V-27> 참조).

〈표 V-27〉 베이비시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정도

단위 : 사례수(%)

구분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학력	237(23.7)	612(61.2)	150(15.0)	1(0.1)	1,000(100.0)
연령	339(33.9)	562(56.2)	95(9.5)	4(0.4)	1,000(100.0)
자격증	454(45.4)	464(46.4)	81(8.1)	1(0.1)	1,000(100.0)
교육관련내용	543(54.3)	400(40.0)	57(5.7)	-	1,000(100.0)
건강진단서	621(62.1)	357(35.7)	22(2.2)	-	1,000(100.0)
정신병력여부	716(71.6)	276(27.6)	8(0.8)	-	1,000(100.0)
신원보증	693(69.3)	296(29.6)	11(1.1)	-	1,000(100.0)

다음 <표 V-28>은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학력, 자격증,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베이비시터관련 정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련 증명서를 받는데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증명서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정신병력증명서(69.2%), 신원보증서(68.2%), 건강진단서(62.1%)의 순이다. 이를 보면 정보제공과 더불어 동일한 항목에 대해 베이비시터에 대한 근거자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관련 증명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27.5%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을 돌보는데 학력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이 더 신뢰할만하며 정신병력, 건강, 신원보증 등을 더 중시하고 있어 향후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에 참고할 사항이라 하겠다.

〈표 V-28〉 베이비시터 지원자 증명서 필요정도

단위 : 사례수(%)

구분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학력	275(27.5)	550(55.0)	172(17.2)	3(0.3)	1,000(100.0)
자격증	431(43.1)	476(47.6)	92(9.2)	1(0.1)	1,000(100.0)
교육수료증	514(51.4)	417(41.7)	68(6.8)	1(0.1)	1,000(100.0)
건강진단서	621(62.1)	341(34.1)	38(3.8)	-	1,000(100.0)
정신병력진단서	692(69.2)	284(28.4)	24(2.4)	-	1,000(100.0)
신원보증서	682(68.2)	289(28.9)	29(2.9)	-	1,000(100.0)

2.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는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제공 업체 현황과 운영사항 및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양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아동돌봄 서비스 업체 실태

1) 업체 일반사항

조사대상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총 50개소로, 서울·경기 지역에 54%가 소재하고 있었고, 업체의 사업 개월 수로는 3년 이상 업체(40.0%)가 많았으며, 2년 이상~3년 미만 업체(32.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업체(98.0%)가 자사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상근 직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5명~10명 미만 업체(28.0%)가 많았고, 다음으로 5명 미만 업체(26.0%), 10명~30명 미만 업체(20.0%)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상근 직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10명~30명 미만 업체(12.0%)가 많았고, 5명 미만과 30명~50명 미만 및 50명~100명 미만 업체도 각 6.0%씩 나타났다(<표 V-29> 참조).

프랜차이즈 여부를 묻은 결과, 지점(58.0%)이 많았으며, 본점(22.0%)과 프

랜차이즈 아님(18.0%)순으로 나타났다. 본사인 경우 프랜차이즈 수를 묻은 결과, 10개~20개미만(54.5%)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았으며, 5개미만 업체(36.4%), 20개~30개미만 업체(9.1%)순으로 나타났다.<표 V-29>참조

〈표 V-29〉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전 체		빈도(%)	
		50(100.0)	
지역	서울	14(28.0)	
	경기	13(26.0)	
	인천	1(2.0)	
	강원	2(4.0)	
	충남	1(2.0)	
	대전	4(8.0)	
	충북	1(2.0)	
	부산	3(6.0)	
	대구	3(6.0)	
	경남	1(2.0)	
	전남	2(4.0)	
	광주	2(4.0)	
	전북	2(4.0)	
제주	1(2.0)		
설립연도	6개월 미만	2(4.0)	
	6개월~1년	3(6.0)	
	1년~2년	9(18.0)	
	2년~3년	16(32.0)	
	3년 이상	20(40.0)	
홈페이지	유	49(98.0)	
	무	1(2.0)	
상근직원	종일	5명 미만	13(26.0)
		5~10명	14(28.0)
		10~30명	10(20.0)
		30~50명	3(6.0)
		50~100명	1(2.0)
		100명 이상	1(2.0)
	시간	무응답	8(16.0)
		5명 미만	3(6.0)
		5~10명	1(2.0)
		10~30명	6(12.0)
		30~50명	3(6.0)
		50~100명	3(6.0)
	무응답	34(68.0)	

전 체		빈도(%)
		50(100.0)
프랜차이즈 여부	본점	11(22.0)
	지점	29(58.0)
	프랜차이즈 아님	10(20.0)
프랜차이즈인 경우 가맹점 수	5개 미만	4(8.0)
	10개~20개미만	6(12.0)
	20개~30개미만	1(2.0)

2) 업체의 인력모집 특성 및 제한사항

업체의 인력 모집방법은 본인 희망/접수(94.0%)가 가장 많았으며, 타인 추천(28.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을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인성(84.0%)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42.0%)와 육아경험(38.0%)순으로 나타났다. 모집 시 선호하는 자격으로는 보육교사(78.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18.0%)와 선호하는 자격없음(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이 있는 업체(96.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체 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약관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면계약을 하는 업체(90.0%)가 많은 것을 나타냈다.<표 V-30>참조

〈표 V-30〉 업체의 인력모집 특성

인력모집 특성		빈도(%)
모집방법	본인 희망/접수	94.0
	타인추천	28.0
	공개경쟁(면접시험)	18.0
	기타	8.0
	공개경쟁(필기+면접)	2.0
모집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인성	84.0
	건강상태	42.0
	육아경험	38.0
	연령	20.0
	시터로서의 경력	18.0
	육아관련 자격증	18.0
	학력	8.0
	기타	8.0
선호자격	보육교사	78.0
	유치원교사	18.0

인력모집 특성		빈도(%)
	없음	16.0
	간호사	10.0
	기타	10.0
	초등학교 교사	4.0
약관/서면계약 여부	있음	96.0/90.0
	없음	4.0/10.0

업체의 인력모집 제한사항은 학력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업체가 70.0%로 많았으며 제한없음(26.0%), 전문대졸 이상(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의 경우 업체의 80.0%가 경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을 제한하는 업체가 82.0%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제한은 30대 이상~55세 미만의 제한이 많이 나타났다. 모든 업체에서 건강진단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경우 제한이 없는 업체가 4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으며, 기혼 유자녀에 한하는 업체가 41.2%로 나타났다.<표 V-31>참조

<표 V-31> 업체의 인력모집 제한 사항

희망자 제한 사항			빈도(%)	
학력	고졸 이상		70.0	
	전문대졸 이상		4.0	
	제한 없음		26.0	
경력	고려함		80.0	
	고려하지 않음		20.0	
연령	제한 없음		18.0	
	제한	82.0	만20세	2.0
			50세	12.0
			53세	5.0
			55세	71.0
			58세	2.0
		60세	7.0	
건강	건강진단서 받음		100.0	
결혼	기혼 유자녀에 한함		41.2	
	기혼자에 한함		11.8	
	제한하지 않음		47.1	

3) 교육훈련 특성

새로 등록하는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교육은 업체의 98%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자체 직원(57.1%)이 많았으며, 초빙 인사(40.8%)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은 평균 약 37시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60시간 이상(38.0%)인 업체가 많았고, 10시간 미만(22.0%) 업체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교재로는 자체제작(71.4%)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총연합회 공동교재(34.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매우충분+충분)이 82.0%라고 응답하였다. 교육비의 경우 추가부담이 없는 업체(38.0%)가 많았으며, 회비에 불 포함(22.0%) 업체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표 V-32>참조)

〈표 V-32〉 업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일반적 사항

교육훈련		빈도(%)
교육실시 여부	실시한다	98.0
	안한다	2.0
교육담당자	자체직원	57.1
	초빙인사	40.8
	기타	8.2
	외부 위탁	6.1
교육시간	평균	37.2
	10시간 미만	22.0
	10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6.0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
	4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0.0
	60시간 이상	30.0
교육교재	교육없음	2.0
	자체제작	71.4
	총 연합회 공동교재	34.7
	기타	10.2
교육의 업무수행 충분성	외부 단행본	4.1
	매우 충분함	8.0
	어느정도 충분함	74.0
	약간 부족함	16.0
교육비	매우 부족함	2.0
	회비에 포함	38.0
	회비에 불포함	22.0
	기타	18.0
	무응답	22.0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는 지에 대한 결과로 정기적인 교육이 있다는 업체가 73.5%로 나타났으며, 교육이 없는 곳은 26.5%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교육의 실행 주기는 월별 실행(55.6%)이 많았으며, 분기별 실행(25.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시간의 경우 평균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75.0%)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참조)

<표 V-33> 업체의 보수교육 및 교육시간

교육훈련		빈도(%)
보수교육 실시 여부	있다	73.5
	없다	26.5
보수교육 실행 주기	월별	55.6
	분기별	25.0
	기타	19.4
보수교육 시간	평균	2.9
	5시간 미만	75.0
	5시간~10시간 미만	16.7
	10~20시간 미만	8.3

교육내용은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에서 하는 내용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론은 아동발달, 유아교육,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베이비시터 역할과 자세 등이 있고 실습으로는 종이접기, 풍선제작, 마사지, 응급처치 등이 있다.

<표 V-34> 업체의 교육내용

교육 내용		
이론	아동발달	교구교재관련
	유아교육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스트레스 다스리기
	베이비시터 역할과 자세	사례와 경험 정보교환
	직업의식	서비스 개선 교육
실습	종이접기, 풍선제작	공동체 놀이
	마사지	새로 추가되는 교육
	응급처치	아이들과의 놀이
	실습	일지 작성

4) 인력관리 및 평가와 관련한 특성

업체의 서비스 현황은 시간제, 종일제 하루, 종일제 한 달로 구분된다. 최소시간의 경우 최소시간이 3시간(48.0%)인 업체가 많았으며, 금액은 2만원~3만원 미만(64.0%)의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의 경우 9시간~12시간(60.0%)인 업체가 많았으며, 금액은 3만원~5만원 미만(50.0%)의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한 달의 경우 금액은 90만원~100만원 미만(50.0%)의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5>참조)

<표 V-35> 업체의 서비스 현황

근로 형태		임금	빈도(%)	비고
시간제		1만원 미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의 임금임 • 시간당 추가 금액은 업체의 88.0%가 5천원이라고 응답함
		1만원~1.5만원 미만	4.0	
		1.5만원~2만원 미만	20.0	
		2만원~3만원 미만	64.0	
		3만원 이상	4.0	
		무응답	4.0	
종일제	하루	3만원 미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제 하루 시간은 9~12시간임
		3~5만원 미만	50.0	
		5~7만원 미만	24.0	
		7~10만원 미만	12.0	
		무응답	12.0	
	한달	80만원 미만	8.0	-
		80~85만원 미만	8.0	
		85~90만원 미만	6.0	
		90~100만원 미만	50.0	
		100만원 이상	14.0	
		무응답	14.0	

아동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64.0%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6.0%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6.0%로 나타났다.<표 V-36>참조)

〈표 V-36〉 업체의 보험 등록 여부

(단위:%)

보험종류 \ 가입여부	아동보험	도우미 보험	회사 보험
있다	64.0	46.0	16.0
없다	32.0	50.0	80.0
무응답	4.0	4.0	4.0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시간은 신입자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자의 경우 약 104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신입자의 서비스 시간이 20시간 미만(30.0%)인 업체가 많았고, 1년 경력자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120시간 이상(44.0%)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참조)

〈표 V-37〉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시간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시간	평균	20시간 미만	20~50 시간 미만	50~80 시간 미만	80~120 시간 미만	120시간 이상	무응답
신입	58.5시간	30.0%	12.0%	8.0%	18.0%	12.0%	20.0%
경력(1년)	104.1시간	26.0%	4.0%	0.0%	4.0%	44.0%	22.0%

육아일지 기록에 관한 결과는 육아 일지를 기록한다(92.0%)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육아일지를 기록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일지 기록방식에 관한 결과는 아동돌봄도우미가 일지를 쓴 후 부모확인을 받아 제출함(64.0%)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결과 보고방식의 경우 전화(73.3%)가 많았으며, 아동돌봄도우미가 업체에 방문하여 제출(22.2%)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무보고 방식에서 전화보고 양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V-38>참조)

〈표 V-38〉 육아일지 관련사항

육아일지 관련사항		빈도(%)
육아일지 기록여부	기록한다	92.0
	안한다	6.0
	무응답	2.0
육아일지 기록방식	부모확인 후 제출	64.0
	일지 작성 후 제출	16.0
	기타	12.0
	무응답/쓰지 않음	8.0
육아일지 보고방식	전화	73.3
	도우미가 업체 방문	22.2
	서면	15.6
	홈페이지·이메일	4.4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아동돌봄도우미의 불만사항 접수에 관한 결과는 불만접수 사항 없음(64.0%)이 많은 것을 나타냈다. 접수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무리한 집안 일, 부모와의 의견 소통, 시간 변경 등 아동돌봄도우미로서 할 일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고객과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접수된 불만사항이었다.(〈표 V-39〉참조)

〈표 V-39〉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 불만접수 여부

아동돌봄도우미 불만 접수	있음	없음	무응답
빈도(%)	32.0	64.0	4.0

타 아동돌봄도우미 회사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66.0%)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매우 필요+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공동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54.0%)는 업체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매우 필요+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90.0%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제작·제공은 매우필요(50.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매우 필요+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련보험 단체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필요하다(76.0%)

는 업체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매우 필요+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련보험 단체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필요하다(56.0%)는 업체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매우 필요+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9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V-40>참조)

<표 V-40> 업체 운영관련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내 용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하다	필요없다
타아동돌봄도우미 업체와의 교류	28.0	66.0	6.0
아동돌봄도우미 공동교육	36.0	54.0	10.0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68.0	28.0	4.0
관련보험 단체가입 지원	76.0	18.0	6.0
국가공인 자격제도 마련	56.0	34.0	10.0

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실태

1) 일반적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아동돌봄도우미는 100명으로 30~40대가 64%였으며, 2년 미만 경력자가 77%로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57%, 초대졸 이상이 43%였으며, 응답자의 84%가 기혼자로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표 V-41>에서 보면 연령대에서는 40대(37.0%)가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13.0%)과 30대(27.0%)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97.3%)이 높게 나타났고, 경력에서는 1년~2년 사이(41.0%)가 가장 많았고 1년 미만(36.0%), 2년~3년 사이(23.0%)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의 학력은 고졸(29.1%)이 많았으며, 전문대졸(21.6%)과 4년제 대졸이상(20.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84.0%)이 많았으

며, 미혼(7.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300만원 미만(29.0%), 300~400만원 미만(26.0%), 400만원 이상(22.0%), 무응답(23.0%)으로 나타났다.

〈표 V-41〉 아동돌봄도우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 체	빈도(%)
연령	20대	3
	30대	27
	40대	37
	50대 이상	13
	무응답	20
성	여성	97.3
	남성	2.7
경력	1년 미만	36
	1~2년	41
	2~3년	23
학력	고졸	57
	(초)대졸 이상	43
혼인	미혼	7
	기혼	84
	기타	9
소득	300만원 미만	29
	300~400만원	26
	400만원 이상	22
	무응답	23

나) 아동돌봄도우미 경력 및 직업 관련 내용

아동돌봄도우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V-42>와 같다. 아동돌봄도우미를 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무직인 반면에 65%가 직업이 있었으며, 이전 직업으로 응답자의 28%는 아동 양육과 무관한 직업, 다음으로 기타 아동 양육에 관련된 직업(21%), 학습지 교사(9%), 가사도우미(4%), 보육교사(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적성에 맞음을 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간 활용

이 가능해서(32%), 주변의 소개(27%), 구직이 쉬워서(15%),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만이 이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주된 이유는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서(100%, 5명)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2%가 베이비시터로만 종사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가 주업이고 다른 부업과 병행(5%), 다른 주업이 있고 베이비시터를 부업으로 하고 있음(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 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아동돌봄도우미로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외에 다른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7%가 현재의 아동돌봄도우미 일만 하고 있는 반면, 3%는 다른 아동돌봄도우미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아동돌봄도우미 경력 및 직업 관련 사항

전체		빈도(%)
이전 직업	가사도우미	4.0
	학습지교사	9.0
	보육교사	3.0
	기타 아동 양육과 관련한 직업	21.0
	아동 양육과 무관한 직업	28.0
	없음	35.0
아동도우미 일 선택이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59.0
	시간활용이 가능해서	32.0
	주변의 소개로	27.0
	구직이 쉬워서	15.0
	기타	2.0
아동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의향	없음	25.0
	생각해 보지 않음	38.0
	생각해 보고 있음	32.0
	다른 일을 찾고 있음	5.0
아동도우미 외에	다른 주업이 있음	3.0

전체		빈도(%)
다른 일 종사여부	다른 부업이 있음	5.0
	베이비시터로만 종사	92.0
다른 돌봄도우미업체 종사여부	한 곳 베이비시터 업체일만 하고 있음	97.0
	다른 베이비시터 업체일도 하고 있음	3.0

2) 도우미의 활동

아동돌봄도우미 근로 관련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고정 종일제 형태로 주로 아동돌봄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다음은 시간제(35%), 고정반일제(15%), 입주(2%)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활동 시간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50%가 종일제(아침 9시-저녁 6시)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오후(31%), 오전(13%), 저녁(6%)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활동으로 받는 월 평균 급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50~100만원을 주로 받고 있으며, 다음은 30~50만원(16%), 30만원미만(14%), 100~150만원(7%) 순으로 나타났다.(<표 V-44>참조)

<표 V-44> 아동돌봄도우미의 근로시간 및 급여

활동 현황		빈도(%)
활동 상황	시간제	35.0
	고정 반일제	15.0
	고정 종일제	48.0
	입주	2.0
활동 시간대	오전	13.0
	오후	31.0
	저녁	6.0
	종일제*	50.0
월평균 급여	30만원 미만	14.0
	30~50만원	16.0
	50~100만원	63.0
	100~150만원	7.0

* 종일제는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이다.

주 평균 아동돌봄도우미로 일하는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5회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은 3회(17%), 2회(9%), 4회(6%), 6회(6%), 1회(1%), 7회(1%) 등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아동돌봄도우미로 일하는 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30~50시간 사이에 주로 일하고 있으며, 다음은 10~30시간(27%), 5~10시간(16%), 50시간이상(9%), 5시간미만(6%), 잘 모름(4%) 순으로 나타났다.(<표 V-45>참조)

〈표 V-45〉 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의 주평균 일하는 횟수

주평균 일하는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무응답
빈도(%)	1.0	9.0	17.0	6.0	56.0	6.0	1.0	4.0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자격증이 없는 반면에 자격증 보유자는 46%이며,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10%로 많고, 다음은 베이비시터(8%), 유치원 교사 자격증(5%), 초등학교 교사, 레크레이션(각 2%),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아동 지도사, 산모 도우미(각 1%), 기타 자격증(14%) 등으로 나타났다.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아동돌봄 직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자격증과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은 37%로(매우 일치: 22%+다소 일치: 15%) 나타났다.(<표 V-46>참조)

〈표 V-46〉 조사 대상 아동돌봄도우미의 취득 자격증

취득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베이비시터	레크레이션	특수아동지도사	산모도우미	기타	없음
빈도(%)	10.0	5.0	1.0	2.0	1.0	1.0	8.0	2.0	1.0	1.0	14.0	54.0

3) 교육 훈련 관련 내용

아동돌봄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50시간이상을 주로 꼽고 있으며, 다음은 10~30시간(16.1%), 5시간 미만(10.3%), 51~0시간(6.9%), 30~50시간(5.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시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족한 편이다(27.6%), 너무 길다(3.4%), 긴 편이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육아교육을(82.1%) 꼽고 있으며, 다음은 유아돌봄방법(73.1%), 실습(66.7%), 놀이지도(19.2%), 교구제작(11.5%), 응급처치(10.3%)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족한 편이다(24.4%), 많은 편이다(2.6%), 너무 많다(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육내용과 함께 보강되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9.1%가 실습을 주로 꼽고 있으며, 다음은 연령별 놀이 행동 방법(17.2%), 사례를 통한 교육(14.1%), 응급처치(10.9%), 육아교육(9.4%), 이유식 만들기(6.3%), 문제행동지도(3.1%) 순으로 나타났다.(<표 V-47>참조)

<표 V-47> 교육현황

	전 체	빈도(%)
교육시간	5시간 미만	10.3
	5~10시간	6.9
	10~30시간	16.1
	30~50시간	5.7
	50시간 이상	60.9
교육시간에 대한 인식	너무 길다	3.4
	긴 편이다	2.3
	적절하다	66.7
	부족한 편이다	27.6
교육내용	육아 교육	82.1
	육아 돌봄방법	73.1

	전 체	빈도(%)
	실습	66.7
	놀이지도	19.2
	교구제작	11.5
	응급처치	10.3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너무 많다	1.3
	많은 편이다	2.6
	적절하다	71.8
	부족한 편이다	24.4
보강되어야 할 교육내용	실습	39.1
	육아교육	9.4
	연령별 놀이방법	17.2
	응급처치	10.9
	문제행동 지도	3.1
	이유식 만들기	6.3
	사례교육	14.1

아동돌봄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 없이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수교육의 주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개월에 한번과 6개월에 한번(각 30.1%)을 꼽았으며, 1개월에 한번(29%), 1년에 한번(10.8%)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보수교육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연령별 놀이를 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례를 통한 교육(26.2%), 새로운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19%), 육아교육(11.9%), 응급처치(2.4%) 순으로 나타났다.(<표 V-48>참조)

〈표 V-48〉 보수교육 관련사항

전체		빈도(%)
보수교육 필요성	필요하다	93.0
	아니다	7.0
보수교육의 적정주기	3개월에 한번	30.1
	6개월에 한번	30.1
	1개월에 한번	29.0
	1년에 한번	10.8
필요한 보수교육 내용	육아교육	11.9
	연령별 놀이방법	40.5
	응급처치	2.4
	새로운 교재/교구 활용	19.0
	사례교육	26.2

3. 요약 및 논의

가. 아동돌봄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이상에서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돌봄형태와 유료가정보육관련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995명, 아동의 아버지가 5명이며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족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이며 30대가 대부분이며 학력은 대졸이 55.9%, 고졸이 42.7%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취업자는 40.4%, 비취업자는 59.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모두 취업자였다.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72.4%, 자영업이 26.5%이며 남성은 5명중 3명이 임금근로자이며 2명이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6.17시간이며 40시간-50시간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시간-60시간으로 20.9%이다. 출퇴근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출근시간은 9시 45분, 퇴근시간은 18시 41분으로 대체로 9시에서 6-7시 사이에 일하는 근로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평균 자녀수가 1.66명이며 자녀가 2명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6세이상 이 2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4세(17.3%), 5세(16.4%)의 순이다. 응답자의 배

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이며 30-39세가 50.4%로 가장 많아 대체로 30대 연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은 대졸이 68.9%로 가장 많으며 경제활동은 98.9%가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가 77.5%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분포는 180만원-350만원미만인 경우 45.9%, 350만원-500만원미만이 4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돌봄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돌봄의 형태는 직접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98.4%, 시설돌봄 57.4%, 유료가정돌봄 15.0%, 친인척돌봄은 8.1%로 나타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설돌봄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유료가정돌봄 이용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2세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접돌봄과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시설돌봄은 100만원-150만원미만소득자의 경우가 가장 이용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다가 300만원이상 소득자의 경우 다시 이용율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료가정돌봄 이용율이 높고 친인척돌봄은 소득이 중간인 경우에 이용율이 높았다. 월평균가구소득과 돌봄형태의 관계를 보면 직접돌봄은 가구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미만 가구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시설돌봄은 가구소득이 350만원-5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180만원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였다.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오전시간대에 직접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근시간대를 기점으로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취업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후 2-3시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직접돌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비중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10시에서 6시 사이에 10%대의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낮시간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연령별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보면 1세 이하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 다른 돌봄형태를 비교하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낮시간대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시설돌봄보다 유료가정돌봄형태가 약간 더 높았다. 2세 아동은 1세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설돌봄은 대략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대는 직접돌봄을 하거나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료가정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와 4-5세 아동은 2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낮시간대 시설돌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다. 친인척돌봄은 다른 연령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적으며 특히 4-5세 아동은 매우 적었다.

취업상태와 아동 연령별 돌봄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로 일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취업자의 경우 시설돌봄이용비율이 50% 이상이며 유료가정돌봄의 비율도 약 25%정도로 1/4수준이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돌봄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에 있어 비취업자는 이용비율이 매우 낮으며 취업자는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자의 경우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돌봄형태 가운데 가용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인척돌봄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무시간이 돌봄 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 형태보다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형태별 선택사유로는 우선 직접돌봄의 경우 1순위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가 높았으며 2순위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시설에 보내는 이유 1순위로는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가장 높았다. 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는 “돌봄시설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돌봄형태 선택 사유를 종합하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 등 개별 보육을 선호하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과 교육적 효과 등 두가지 목적을 위해 시설을 보내는경향이 있음을 알수 있다.

돌봄담당자는 친인척의 경우 아동의 조부모가 가장 많으며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유치부의 순이었다. 유료가정돌봄은 이웃 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아 업체보다는 주로 믿을만한 주변의 소개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형태별 이용비용에서 친인척돌봄비용은 월평균 비용이 23만8천원이며 30만원-50만원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다. 시설돌봄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26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50만원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다. 유료가정돌봄은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모두 28건이며 월평균이용비용은 1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시터 이용자는 월평균 이용비용이 66만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이용비용에서 최고액수를 살펴보면 친인척돌봄이 100만원, 시설돌봄이 88만원, 아이돌보미가 40만원, 베이비시터가 180만원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장 저렴하고 베이비시터가 가장 비싸다. 평균액수도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으며 가장 비싼 것은 베이비시터이다. 즉 친인척돌봄의 평균비용은 베이비시터와 시설돌봄 다음 순위이지만 실제 가장 고액이 100만원으로 나타나 이용비용에 편차가 심하여 각 개인에 따라 시설이나 아이돌보미에 비해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현재 민간유료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베이비시터의 평균 연령은 47.3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대부분이었다. 자격증은 없는 경우가 58.0%로 나타나 자격증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업무 내용을 보면 아이와 놀아주기(96.0%)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아이먹이기로 90.9%였다.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가사일전반”이 가장 많고 다음이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를 꼽았다. 이를 보면 아동돌봄이 주요 업무인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사일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베이비시터와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유료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인성, 육아경험이며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었다. 또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학력, 연령, 자격증, 교육관련내용,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을 보면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건강진단서 등으로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 관련내용, 자격증 등이 학력이나 연령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역시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 학력보다는 교육과 자격증으로 판단하고자 함을 잘 보여준다.

이상의 돌봄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가정내 돌봄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의 취업여부와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친인척돌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 오전 이른 시간 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가정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아동의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이용

의 경우 돌봄과 교육적 효과 두가지 모두 충족되기를 희망한다는 점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료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아동 돌봄서비스 공급자 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와 아동돌봄도우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인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총 50개소로, 서울·경기 지역에 54%가 소재하고 있었고, 설립연도는 2년 이상인(72%)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근직원 10명(54%)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일반적 사항은 많은 업체(58%)들이 프랜차이즈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의 42% 정도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52% 정도가 유료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관련 업체가 운영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는 대부분 여성(97.3%)이고 그 중 40대 이상(62.5%)이 많고, 학력은 고졸 이상(71.6%)이 많았다. 또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67.8%로 전반적으로 아동돌봄도우미의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의 인력모집은 우선 본인의 희망에 따른 접수가 94%로 가장 많았다. 모집 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인성(84%)이며, 학력 수준은 고졸 이상(70%)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업체(80%)가 경력을 고려하며, 연령 제한도 82%로 나타나고 있어 도우미의 경력과 연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모든 업체가 도우미의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도우미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선호하는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78%)이 가장 많았고, 모집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은 인터넷 광고(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시 약관(96%)이나 관련 약식을 사용하여 서면계약(90%)을 하고 있어 조직의 공식화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업체의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부분의 업체(98%)가 새로 등록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담당자는 자체 직원(57.1%)으로 교육하거나 외부 강사(40.8%)를 활용하고, 교육 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교육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반면에 교육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여 업체(82%)들은 대부분 교육이 아동돌봄도우미의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73.5%로 보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인력관리는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3시간당 2~3만원(64%)으로 시간당 추가 비용은 5천원(88%)으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았다. 한편 종일제의 경우 9~12시간(60%)로 임금은 3~5만원 미만(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일제 한 달은 90~100만원(50%) 정도로 파악되었다. 보험 등록의 경우 아동 대상 보험에는 업체의 64%가 가입되었고, 아동돌봄도우미는 46%, 회사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6%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단체 가입 지원의 필요성은 94%가 공감하고 있어 관련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의 인력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2% 정도가 육아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지역별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작성율이 높았다. 특히 일지 작성의 64% 정도는 부모가 확인하고 있어 육아 일지 작성 및 확인과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고 방식이 주로 전화(73.3%)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형식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아동돌봄도우미의 활동실태결과와 함의이다.

설문 응답 아동돌봄도우미는 100명으로 30~40대가 64%였으며, 2년 미만 경력자가 77%로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57%, 초대졸 이상이 43%였으며, 응답자의 84%가 기혼자로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아동돌봄도우미의 근로현황을 살펴보면 아동돌봄도우미의 48% 정도는 고정적인 종일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간제가 35%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도우

미의 활동이 점차 전업의 형태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50%) 활동하고 있으며 주 평균 일하는 횟수는 응답자의 56%가 5회 였으며 대부분 30대(74.1%)였다. 월 급여는 응답자의 63%가 50~100만원, 16%는 월 30~50만원 정도였다. 월 평균 급여로 50~100만원을 받는 이들의 특성은 30대(74.1%)의 1~2년 경력자(73.2%)로 초대졸 이상(69.8%)임을 고려해 볼때 저임금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전 직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무직이고, 직업이 있던 경우의 28%는 아동 양육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는 도우미 활동 등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우미를 선택한 이유는 응답자의 59%가 '적성에 맞아서'라는 응답하고 5%만이 이직에 관심이 있어 도우미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점과 현재의 업체에서 이 업무만 종사한다는 응답이 92%를 나타냈다는 점은 도우미가 전문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돌봄도우미의 교육인식과 활동은 응답자의 60.9%가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경력이 1~2년 정도로 짧을수록(69.4%) 많은 교육 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의 교육 시간은 응답자의 66.7%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는데 경력별로 1~2년(72.2%)차와 기혼(71.2%)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유아교육(82.1%), 유아 돌봄 방법(73.1%), 실습(66.7%) 순이었으며 이는 추후 자격제도 수립이나 교육 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다수(71.8%)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79.5%)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초대졸 이상은 32.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거나 수준 높은 교육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방법의 진행에 대한 태도는 응답자의 대부분(73%)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습을 더 강조하는 응답은 1년 미만(30.6%)의 경력자와 고졸(3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 내용에서 좀 더 보강되어야 할 분야로 실습

(39.1%)을 꼽고 있어 향후 교육 내용에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보수 교육의 주기는 3개월 혹은 6개월에 1회로 실시하는 방안에 30.1%가 응답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6개월에 한번(41.9%), 30대는 한 달에 한번(44.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수교육의 내용은 응답자의 40.5%가 ‘연령별 놀이’를 꼽고 있다. 한편, 아동돌봄도우미 활동에 대한 만족은 응답자의 44% 정도가 만족하며, 보통은 51%로 나타났다. 도우미 활동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만족의 이유로 가장 높은 의견은 ‘아이가 좋아서’(25%)이다.

이상의 아동돌봄도우미와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돌봄도우미가 이미 전문성을 지닌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업체는 향후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위상 및 사회적 지위 제고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법제화가 미흡하여 사기 저하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보육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고, 복지도 매우 열악하며, 업무 보장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은 낮아지고, 이직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관련 인력 양성 공급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전체 보육 환경 및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관단위가 보육 종사자의 양성, 재직훈련, 전문 역할 및 지위, 전문자격증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되고, 적시에 법규의 적용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보육기관 평가 및 고품질 보육 서비스 등이 지표로 정착되어야 한다.

VI

돌봄 서비스 선택 행위 결정 요인 분석

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분석	159
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분석	162
3. 돌봄 서비스 유형 결정 모형	165
4.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분석 (가상 수요 분석)	174
5. 요약 및 논의	179

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분석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기 및 비정기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사업과 기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서비스 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즉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text{유료가정돌봄서비스 이용} \Leftrightarrow \max_{h,c} TB(h, x_i) - TC(h, c, x_i) \geq 0$$

- h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 c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공급자
- x_i : 가구 i 의 특성 변수들, 예컨대 소득, 가구 구성 등
- TB : (금액으로 평가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해 지불의향이 있는 금액
- TC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비용

이때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 의향이 있는 금액, 혹은 효용 수준은 대상 아동의 특성(연령, 장애 여부), 가구 구성 변수의 특성(맞벌이 부부, 가구 소득, 가구내 기타 영·유아동 존재, 가구내 부모 제외한 다른 성인 존재)에 의존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 어머니의 직접돌봄에 대한 기회비용인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연령, 경력 등의 변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용의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차이로 상이한 가격 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위의 식에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질은 동일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였지만, 이때에도 서로 다른 가격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각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차이로 인해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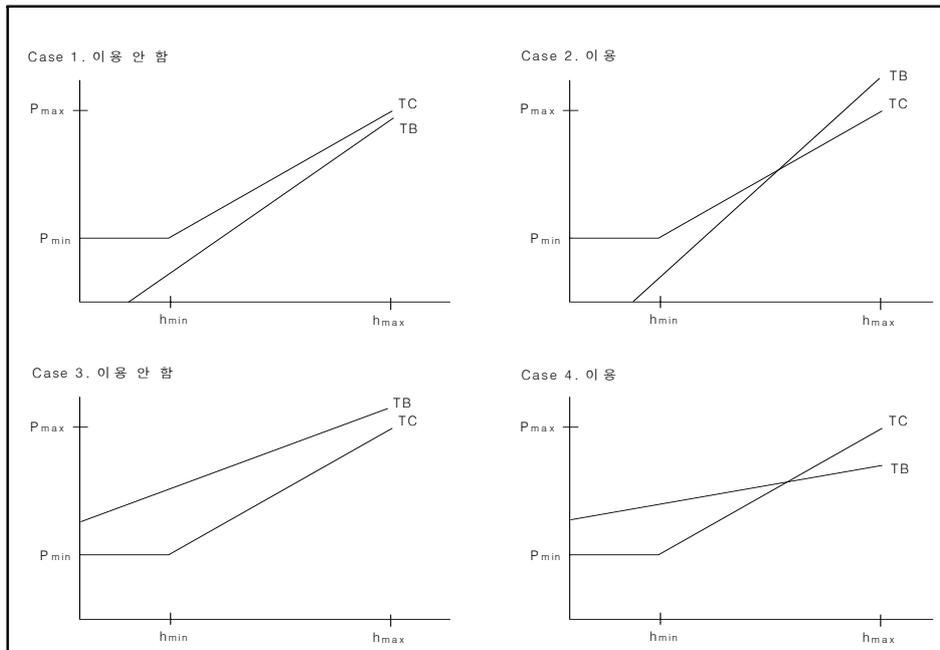
유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변수를 통제하여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아동 연령
- 어머니 연령
- 어머니 대학 졸업 여부
- 어머니 경력(년)
- 가구 월소득 500만원 이상
- 가구내 0~5세의 또다른 아동 존재 여부
- 가구내 부모를 제외한 기타 성인, 예컨대 할아버지, 할머니 존재 여부
- 지역 더미(서울)
- 지역 더미(인천)
-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로그-단위 시간당 비용(2시간)
-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로그-단위 시간당 비용(8시간)

한편 통제된 변수들 중 지역 더미와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TC) 측면에서 추가되었다. 여기서 지역 더미는 지역에 따른 유료가정돌봄 업체의 경쟁 등을 감안한 비용의 차이 혹은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예산 규모와 집행정도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시간당 비용은 대표적인 시장 가격에 대한 변수로 포함되었다. 여기서 2시간과 8시간 이용에 대한 평균 비용을 감안한 것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요금 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는 기본 요금과 기본 시간을 넘는 범위에 대한 추가 시간에 대한 단위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서비스 '가' 형의 경우 최초 2시간에 대한 기본비용 2,000원과 추가시간에 대한 단위 비용 1,000원으로 이루어진다. 8시간을 1회 이용에 따른 최대 시간으로 가정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TB)이 이용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면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TB(h=2, x_i) \geq 2000$ 혹은 $TB(h=8, x_i) \geq 5000$



〈그림 VI-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 연령의 증가는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킨다. 즉,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이용확률이 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또 가구 소득 증가는 유료 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증가시켰다. 즉,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이용 확률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다른 어른의 존재 및 5세 이하 아동의 추가적인 존재 역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며, 두 요인 모두 그 효과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대학 졸업 여부와 경력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적으로 기대한 결

과와 일치하나, 그 크기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비용 구조를 감안하기 위해 통제한 4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돌보미 8시간 이용 비용의 효과가 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2시간과 8시간 이용 비용이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게 설계되어 있어, 두 비용이 서로 선형관계에 있으며, 또한 가구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비용 구조, 예컨대 대표적인 업체 비용 내지 다른 방식으로 비용 측면에서의 변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프로빗 분석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0.763	1.040
아동 연령	-0.162***	0.042
어머니 연령	0.038***	0.015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0.109	0.126
어머니 경력	0.919***	0.129
가구소득(500만원 이상)	-0.019	0.014
가구내 0~5세 추가 아동 (더미)	-0.414***	0.134
가구내 다른 어른 (더미, 부모 제외)	-0.455***	0.206
지역 더미(서울)	-0.044	0.110
지역 더미(인천)	0.014	0.179
로그-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시간당 비용 (2시간)	-2.646	2.264
로그-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시간당 비용 (8시간)	2.443	1.890
N	1000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 유의수준 <10%

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분석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 결정요인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단위 시간당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가격이 높을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앞서 <표 VI-1>의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서비스로부터 누리는 편익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이용 시간에 대한 사전적 예측은 앞서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이 절에서는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회귀 분석을 통해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다.

- $h_i = x_i' \beta + \gamma \times \ln(p_i) + \varepsilon_i$
- p_i : 단위 시간당 이용 비용에 대한 로그값

위의 식에서 $\ln(p_i)$ 의 계수 (γ)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단위 시간당 비용이 100% 증가할 때 이용 시간 기대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gamma = \frac{\partial}{\partial p_i / p_i} E[h_i | x_i, \ln p_i]$$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74가구에 대한 회귀 분석한 결과, 시간당 단위 비용이 100% 증가하면 이용 시간은 약 2.7 시간 감소하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아동 연령의 증가와 어머니 대학 졸업 여부, 가구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아동 연령 1세 상승에 따라 약 0.67시간의 이용시간이 감소되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3.5시간의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회귀 분석)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13.054***	3.142
로그-시간당비용	-2.718***	0.473
아동 연령	-0.664**	0.335
어머니 연령	-0.076	0.099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788**	0.895
어머니 경력	0.022	0.099
가구소득(500만원 이상)	3.500***	0.740
가구내 0~5세 추가 아동 (더미)	-1.700*	1.025
가구내 다른 어른 (더미, 부모 제외)	1.490	1.600
N	174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 유의수준 <10%

Heckman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모형을 통해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식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I-2>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만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들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통해 효용을 얻는 가구들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들만이 샘플로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접근 방식은 self-selection 으로 인한 편향(bias)이 존재함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eckman(1974)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추정식은 회귀분석에서와 같다. 또 선택(selection) 문제를 감안하기 위해 <표 IV-30>에서 사용한 프로빗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inverse-Mills ratio를 구성하여 선택(selection) 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에 들어간 4개의 비용 변수(지역 더미와 정부지원아이돌보미의 단위 시간당 비용)가 배제 제약(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e)을 얻을 수 있다. <표 VI-3>에서 이들 변수가 개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4개 변수 모두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다. 우

선 추가적으로 통제된 inverse-Mills ratio에 대한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는 사실에서 <표 VI-3>의 회귀 분석결과는 선택편의(selection-bias)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로그-시간당 비용 및 어머니 연령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단위 시간당 비용의 경우 비용 100% 상승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2.8 시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기존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표 VI-3>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28.124***	8.425
로그-시간당비용	-2.828***	0.435
아동 연령	0.001	0.498
어머니 연령	-0.291*	0.159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440	1.018
어머니 경력	0.118	0.125
가구소득(500만원 이상)	-1.352	2.598
가구내 0~5세 추가 아동 (더미)	0.206	1.467
가구내 다른 어른 (더미, 부모 제외)	3.139	1.941
inverse-Mills ratio	-6.126**	3.063
N	1000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 유의수준 <10%

3. 돌봄 서비스 유형 결정 모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주된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아래의 대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 부모에 의한 직접돌봄
- 친척에 의한 돌봄

- 시설돌봄 서비스 이용
-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정부지원 아이돌보미 포함)
 - 정부지원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기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함
 - 즉, 단지 가격 차이 혹은 이용시간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 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

그런데 영유아 돌봄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여 충족됨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아동돌봄 욕구가 충족되는 서비스 유형을 파악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유형을 주된 서비스로 정의하였다³²⁾. 분석 모델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 가정은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utility)이 있으며, 개별 서비스의 가격, 각 가정의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가 서비스로부터 효용수준을 얻는다고 가정하였다.

- 개인 i 가 $j(=1,2,3,4)$ 라는 돌봄서비스를 얻게 되는 효용수준을 $u_{i,j}^* = x_j' \beta_1 + x_i' \beta_{2j} + \epsilon_{i,j}$ 라고 함
- x_i : 가구 i 의 특성 변수
- $x_{i,j}$: 서비스 j 의 유형 변수

이 경우 개인 i 가 j 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j: u_{i,j}^* \geq u_{i,k}^*, k \neq j\} \quad k \neq j$$

위의 식에서 ϵ 은 개인별, 대안별 $i.i.d.$ 조건을 만족하는 Weibull 분포를

32)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이 동일한 경우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 시설돌봄, 직접돌봄 순으로 정렬하였다.

따른 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가구 i 가 서비스 유형 j 를 주된 서비스로 이용할 확률 (p_{ij})은 다음과 같다.

$$p_{ij} = \frac{\exp(x_i' \beta_1 + x_i' \beta_{2j})}{\sum_j \exp(x_j' \beta_1 + x_j' \beta_{2j})}$$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x_i)는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 가구내 5세 이하의 추가적인 아동 존재 여부, 가구 소득,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의 동거 여부, 학력·경력 등 아동 어머니의 특성 변수 등을 포함한다. 이 모형에서 설명변수 $x_{i,j}$ 로는 각 서비스의 특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들어가야 한다. 주요 변수로는 서비스 이용가격,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특히 어머니에 의한 직접돌봄인 경우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서비스의 가격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타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Powell(2002)의 접근방식을 차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로는 다음을 포함시켰다.

- x_{ij} : 로그-서비스 이용가격,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지의 여부
- x_i :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 가구내 5세 이하의 추가적인 아동 존재 여부, 가구 소득,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의 동거 여부, 학력·경력 등 아동 어머니의 특성 변수

아동돌봄 서비스가 아동의 거주지에서 제공되는지에 대해 직접돌봄, 시설 돌봄,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단순하게 분류가 가능하나, 친인척돌봄은 구체적인 돌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구분하였다. 가정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월소득 구간에 대한 정보만이 있고, 이 또한 노동시장 참가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 학력과 연령 정보를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표 VI-4> 에 제시된 학력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을 프락시로 사용하는 전략이다³³⁾.

〈표 VI-4〉 미성년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률 분포
(단위 : 원/시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무학~중등	-	3,868	4,128	4,119	4,052
고등	5,452	5,358	5,177	-	5,296
대학	7,535	11,820	9,354	-	10,693
대학원	8,654	14,118	23,302	-	17,198
평균	6,564	7,985	6,231	-	7,189

자료: 김현숙·성명재(2006) p.128에서 인용

기타 돌봄 비용의 경우에는 각 아동에 대해 개별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질문과 이용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당 가격을 산출하였다. 개별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정보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구들의 서비스 이용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격식 추정이 필요하다.

$$\ln p_{ij} = z_{i,j}'\alpha_j + v_{ij}$$

- 여기서, $v_{ij} \sim N(0, \sigma^2_v)$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selection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Lee(1983)의 제안을 따라 다음과 같이 selection-bias 항목을 조정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33) 김현숙·성명재(2006)의 임금률 분포는 2004년 노동패널의 미성년 유자녀가 있는 가구 내 기혼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에 기반하였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 참가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얻어졌으므로, 잠재적으로 selection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ln p_{ij} = z_{i,j}'\alpha_j + \lambda(x_{ij}'\beta_j) + \widetilde{v}_{ij}$$

- 여기서, $\lambda(x_{ij}'\beta_j) = \frac{\Phi(\Phi^{-1}F(x_{ij}'\beta_j))}{F(x_{ij}'\beta_j)}$
- $\Phi(\cdot)$, $\Phi(\cdot)$, $F(\cdot)$ 은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밀도함수, 누적분포함수와 Weibull 분포의 누적분포함수임
- 위 수식은 돌봄 서비스 j 유형을 주된 돌봄 서비스로 이용하였다는 조건 하에 지출하는 시간당 비용식
- 따라서, 이 추정식 결과를 이용하여 가격 정보가 없는 가구외에 서비스 j 를 주된 서비스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가구의 정보를 업데이트함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얻어진 가격 정보와 다른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가격식 추정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특성 변수들, 예컨대 가격변수 및 아동 주거지에서 서비스 제공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 축약형(reduced form) multinomial logit 을 추정하여 β_j 를 구했다. 이로부터 $\lambda(x_{ij}'\beta_j)$ 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가격식에 포함시킨후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축약형 multinomial logit 에 포함된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가격식에 포함되어야 식별(identification)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시설돌봄 비용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연령별·지역별 가격상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로그값을 포함시켰다. 유료가정돌봄 비용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 대한 더미를 포함시켜, 지역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예컨대, 정부지원아이돌보미의 경우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 유형의 가격 보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가격에만 배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친인척에 의한 가정돌봄에 지출하는 금액은 가정내 잠재적인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미취업 기타 성인의 동거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어진 자료 한계상 여기서는 8세 이상 아동 존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가격식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대상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설돌봄 평균 비용은 증가하고, 기타 돌봄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친인척돌봄 비용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내 돌봄비용의 경우 영유아 아동에 대한 시간 등의 투입이 보다 높은 비용을 요하고, 반대로 시설돌봄의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돌봄 이외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었던 바와는 달리 소득 수준에 대한 효과는 모든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균 비용에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없어졌다. 5세 이하의 추가적인 아동의 존재는 모든 돌봄의 단위시간당 비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 구매시 규모의 경제가 얻어지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인 부담 야기로 인해 낮은 금액의 서비스를 얻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현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지출하는 유료가정돌봄 시간당 비용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돌봄 비용과 친인척돌봄 비용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시간당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 역시 친인척돌봄 단위 시간당 비용을 낮추었다. 돌봄에 대한 일부 서비스들이 이들 가구원에 의해 이루어져 낮은 가격이 지불되는 것인지 혹은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로 인해 지출액을 줄이는지에 대한 식별이 요청된다.

〈표 VI-5〉 서비스 단위 시간당 비용 추정 결과

변 수	ln(시설돌봄비용)	ln(가정돌봄비용)	ln(친인척돌봄비용)
상수항	-1.256	1.900***	0.530
	(1.10)	(0.54)	(0.70)
아동 연령	0.111**	-0.146**	-0.172
	(0.05)	(0.06)	(0.16)
가구월소득≥500만원	-0.077	-0.070	0.364
	(0.05)	(0.33)	(0.37)
0-5세 추가 아동	-0.207***	-0.291	-0.384*
	(0.07)	(0.28)	(0.19)
기타 어른	-0.018	0.697**	-0.286
	(0.08)	(0.31)	(0.26)

변 수	ln(시설돌봄비용)	ln(가정돌봄비용)	ln(친인척돌봄비용)
ln(보육시설가격상한)	0.561 (0.43)		
지역더미 (서울)		-0.279** (0.12)	
지역더미 (인천)		-0.054 (0.20)	
8세 이상 아동			-0.280 (0.51)
inverse-Mills ratio	0.034 (0.16)	-0.287 (0.35)	0.188 (0.34)
N	498	135	33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 유의수준 <10%

()는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된 돌봄 서비스 선택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5>을 통해 얻은 추정식을 바탕으로 계산된 가격변수를 포함하여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VI-6>과 같이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 이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는 다르게 개별 서비스의 평균 이용가격이 주된 서비스 선택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association)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개별 서비스 가격 증가가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나 언급한 바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제 가격이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실제로 주된 돌봄 서비스 선택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과 높은 가격이 지불되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가 아동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 주된 돌봄 서비스로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동 연령의 증가는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연령 상승에 따라 시설 돌봄으로의 이동 및 어머니의 취업 등의 요인을 반영한다. 어머니의 특성 변수와 관련해서는 연령과 경력이 유의한 수준의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 보육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

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접 돌봄을 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려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일수록 직접 돌봄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다. 단, 대학졸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가져 오지는 않았다. 이들 요인은 취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취업상황이 실제 직접돌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취업여부와 이들 3개 요인에 대해 단순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취업할 확률은 1.3%p 낮아지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9.3%p 취업확률이 증가하며, 경력 1년 증가는 취업확률을 5.4%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적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고, 이는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암시한다.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든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 여부가 높은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소득 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회 비용 증가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가정내 5세 이하 아동이 추가적인 존재하는 경우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고, 친인척돌봄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내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이 함께 거주 여부는 주된 서비스 유형 결정과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Ⅶ-6〉 주된 돌봄 서비스 선택 모형 분석 결과

변수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
상수항	1.987*	4.557**	-2.551**
	(1.11)	(2.21)	(1.22)
ln(시간당비용)	0.026	0.026	0.026
	(0.17)	(0.17)	(0.17)
아동거주지 서비스	3.082***	3.082***	3.082***
	(0.53)	(0.53)	(0.53)

변수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
아동 연령	1.364***	0.185	0.629***
	(0.10)	(0.22)	(0.12)
어머니 연령	-0.079**	-0.209***	-0.005
	(0.03)	(0.08)	(0.04)
어머니 대학 졸업	-0.255	-0.459	-0.189
	(0.23)	(0.53)	(0.30)
가구 월소득>=500만원	4.029***	5.202***	5.384***
	(0.74)	(0.84)	(0.75)
어머니 경력	0.108***	0.212**	0.043
	(0.03)	(0.07)	(0.04)
0-5세 추가 아동	-0.560**	0.556	-1.586***
	(0.22)	(0.47)	(0.37)
기타 어른	0.104	-0.134	-0.633
	(0.40)	(0.69)	(0.58)
N	1000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유의수준 : <10%

()는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가정내 직접 보육을 기준(base) 으로 설정

<표 VI-6>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해진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0.0049로 나타났다. 가격 탄력성 계산을 위해 다른 돌봄 서비스 가격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평균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가격만을 변화시켰다. 여기서 상대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 선택이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가격이 1% 감소하였을 때 실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선택할 확률은 0.49% 증가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별 가구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가격이 25% 감소하였다는 가상적인 상황 하에 개별 가구의 주된 돌봄 서비스 선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다른 요인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개별 가구별로 효과를 분석한 후, 개별 가구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선택할 확률에 대해 평균치를 보고하였다.

4.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분석(가상 수요 분석)

본 설문조사에서는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가상적 수요를 모든 설문 대상 가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개별 가구가 직면하는 가격 체계와 동일하게 최초 2시간 이용에 대한 기본 요금과 추가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을 가격 체계로 하여 4가지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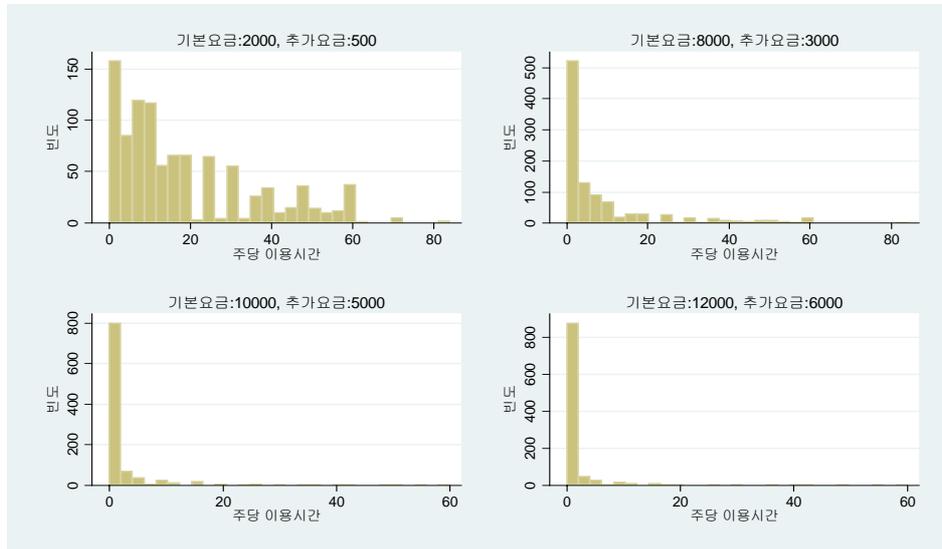
〈표 VI-7〉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가상적 수요 조사 문항

문57) ○○님께서 베이비시터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이 다음과 같다면, 매주 평균 몇 회 몇 시간의 이용의사가 있으십니까?

요금 2시간 미만 기본 요금 적용	주 평균 이용 횟수	1회 평균 이용 시간
57-1) 기본요금 2,000원, 추가 시간당 500원	회/1주	시간/1회
57-2) 기본요금 8,000원, 추가 시간당 3,000원	회/1주	시간/1회
57-3) 기본요금 10,000원, 추가 시간당 5,000원	회/1주	시간/1회
57-4) 기본요금 12,000원, 추가 시간당 6,000원	회/1주	시간/1회

<그림 VI-2>은 각 가격체계에 따라 개별 가구가 희망하는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시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7-1의 가격체계하에서는 92%의 가구가 1주일에 적어도 평균 1회 이상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가격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함이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57-2에 제시된 가격하에서는 이용률은 61.2% 수준에 머물며, 57-3 가격이 상승한다면 33.8%의 응답자만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다. 57-4 수준에서는 이용률은 더욱 떨어져 24.6%만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낮은 가격 체계하에서 많은 수요를 표출하는 방향의 응답을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해당 문항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대답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³⁴⁾

34) 이 사실이 설문에 기반한 응답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근거로 삼기는 무리이다. 설문 응답에 관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McFadden et. al. (2005)를 참조하라. 또한,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본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1회 이



〈그림 Ⅶ-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격별 주당 희망 이용시간 분포

서로 다른 4가지 가격 하에서 가구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수요함수를 프로빗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장의 ‘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절에서 분석한 유료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한 프로빗 분석 모형과의 차이점은 우선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와는 달리 동일한 가구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상황에서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앞서와 같이 i 는 개인에 대한 지수(index), j 는 가격체계에 대한 지수라고 하면 기본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j} = 1 \Leftrightarrow y_{ij}^* = x_{i,j}'\beta + \varepsilon_{ij} \geq 0$$

용시 1시간을 선택하는 것보다 2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보다 바람직함에도 일부 가구가 1시간을 선택했다는 점은 여전히 돌봄 도우미의 가격 체계 또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 교란항 $\varepsilon_{i,j} = \alpha_i + \varepsilon_{ij}$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란항 α_i 와 나머지 부분 ε_{ij} 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α_i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_α 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ε_{ij}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_ε 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 가정한다. 또한, ε_{ij} 는 서로 다른 가격 체계 하에서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 하에 얻어진 추정결과가 <표 VI-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비용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용여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본비용과 단위 비용이 1000원씩 상승할 때 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각각 3%p와 9%p 하락하였다.³⁵⁾ 흥미로운 사실은 비용과 관련한 2 변수, 즉 기본요금과 추가 시간당 요금의 효과는 가구 소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구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비용의 효과는 커지나 추가 시간당 비용의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격 변동에 대한 고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한 변화가 주로(1회당) 적은 시간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발생함을 암시한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우(1회당) 이용시간이 많은 가구에서 비용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주로 발생함을 암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비용보다는 추가 비용의 조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할 때, 비용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경우 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과 사전적으로 기대되었던 방향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장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의 직장 경력만이 유의수준 5%에서 서비스 이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경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인 듯하다.

가구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샘플과 비교할 때, 가구 소득 700 만원 이상인

35) 한계 효과는 샘플의 평균값 수준에서 평가되었다.

가구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이거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적은 샘플 사이즈(N=19)로 인한 결과인지 혹은 소득에 따라 다른 파라미터 값을 갖기 때문인지 식별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다른 가구 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추정치의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에서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집단에 대한 추정치에서 어머니의 경력(년수)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대신에, 어머니의 대학 졸업 여부 더미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제 가상적인 가격체계하에서 주당 희망 이용시간을 이용해 돌봄도우미 서비스 수요를 추정해보자. h 를 주당 희망 이용시간, p_j 는 시간당 평균 비용이라고 하면 개별 가구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 \max(x_i \beta + \gamma \times \ln p_j + \epsilon_{ij}, 0)$$

앞서와 같이 패널구조를 가정한 상태에서 토빗(Tobit)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자. 교란항 ϵ_{ij} 에 대해서는 <표 VI-8>에서와 동일한 가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추정치는 <표 VI-9>에 나타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350만원 이상 더미 변수)와 단위 시간당 비용 변수(로그-평균비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가구 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대략 주당 3.4시간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가구가 직면하는 평균비용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주어진 식에 따르면 이 경우 기대되는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시간의 변화는 $-2 \times \gamma$ 이다. 따라서, 추정결과를 여기에 대입하면 평균비용의 50% 저하는 개별 가구가 평균적으로 20시간을 추가로 더 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평균 비용의 수요함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희망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시간이 보다 가격탄력적이란 결과가 확인되었다. 앞서 가정한 것처럼 50% 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월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는 주간 18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려함에 비해, 월소득 350~700만원인 가구와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각각 21시간과 29시간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프로빗 분석에서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패턴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더 큰 가격변동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제공만으로 인해 현재 전업주부인 여성이 전일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50%의 비용 저하가 있는 경우 주간 18시간의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 즉 1일 평균 약 3.6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전일제 취업 여성의 보육서비스를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비용하락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방식과 결합하여 보육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구에서만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8〉 패널 구조를 이용한 프로빗 모형

변수	전체		소득 350만원이하		소득 350~700만원		소득 700만원 이상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아동 연령	0.098	0.22	0.208	0.20	-0.116	0.25	5.082***	1.58
어머니 연령	-0.168	0.10	-0.187*	0.08	-0.095	0.11	-1.641***	0.53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463	1.17	1.377***	0.53	0.509	1.25	1.051	4.16
가구 소득 (>=350만원, 더미)	1.077	0.63						
어머니 직장 경력 (년)	0.185**	0.09	0.148	0.07	0.162*	0.09	1.856***	0.39
5세 이하 추가 아동수	0.834	0.62	0.417	0.57	0.550	0.73	-6.210**	2.42
다른 어른 동거 (더미)	-0.515	0.97	-0.601	1.07	-0.096	1.08	11.484**	4.47
서울(더미)	0.934	0.59	1.157	0.53	0.858	0.66	0.525	3.31
경기(더미)	-0.558***	1.27	0.783***	0.83	-2.683*	1.45	-4.001	4.93
기본비용(천원)	-0.724***	0.24	-0.801*	0.28	-0.951**	0.32	-2.440**	1.37
추가비용 (시간당, 천원)	-2.123***	0.41	-2.044*	0.50	-1.800**	0.51	-0.900	2.47
상수항	17.331	3.49	17.361	2.58	17.900	4.08	55.830***	17.62
N	1000		475		506		19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유의수준 : <10%

〈표 VI-9〉 패널구조를 이용한 주당 (희망) 이용시간에 대한 토빗 분석

변수	전체		소득 350만원이하		소득 350~700만원		소득 700만원 이상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아동연령	-0.032	0.27	0.286	0.38	-0.527	0.40	2.978*	1.81
로그-평균비용	-10.009***	0.14	-9.016***	0.19	-10.586***	0.20	-14.946***	1.07
어머니 연령	-0.258	0.10	-0.441***	0.14	-0.168	0.15	-1.632	0.70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521	0.76	1.005	0.96	1.868	1.29	-3.672	6.45
가구 소득 (>=350만원, 더미)	3.401***	0.86						
어머니 직장 경력 (년)	0.098	0.10	0.119	0.14	0.166	0.13	1.358	0.58
5세 이하 추가 아동수	-0.142	0.83	0.900	1.08	-1.280	1.24	-13.865*	5.42
다른 어른 동거 (더미)	1.262	1.24	1.570	2.00	1.430	1.62	6.046	5.66
상수항	13.873***	3.23	18.651***	4.34	13.377*	4.91	54.892	24.47

***: 유의수준<1%, **: 유의수준<5%, *유의수준 : <10%

5. 요약 및 논의

이상의 돌봄서비스 선택 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1)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료 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낮아지고, 2)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료 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3) 가구 소득 증가는 유료 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증가시켰으며, 4) 가구 내 다른 어른의 존재 및 5세 이하 아동의 추가적인 존재는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5) 어머니의 대학 졸업 여부와 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6)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비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료가정돌봄 시간에 대해서는 1) 시간 당 단위비용이 100% 증가하면 이용 시간은 약 2.7~2.8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아동 연령이 1세 증가할 경우 0.67시간 감소하였다. 또한 유료가정돌봄 시간은 예상대로 가계 소득과 비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약 3.5시간의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돌봄 서비스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제 이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는 달랐다. 즉 개별 서비스의 평균 이용가격이 주된 서비스 선택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 (association) 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 연령의 증가는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 변수와 관련해서는 연령과 경력이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돌봄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줄어들며, 고려된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일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요인의 변화와 관련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적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은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든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가정내 5세 이하 아동이 추가 존재하는 경우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고, 친인척돌봄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내 부모를 제외한 다른 어른의 거주 여부는 주된 서비스 유형 결정과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의 가격이 1% 내려가면 이용률이 0.49%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금액을 100% 낮춘다고 하면 현재보다 이용율이 49%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간을 약 3시간 정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의 가격정도로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4인 가구의 평균적인 도시 근로자를 가정하였을 경우, 주된 돌봄 형태에 따른 경제적 차이는 연간 약 107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가정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사이의 돌봄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는 주로 영유아를 가정내에서 돌보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시설돌봄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돌봄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되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료가정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가 제시하듯이 유료가정돌봄에 대한 지원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공급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 4 부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VII

가족내 아동돌봄 제도화 방향
및 정책과제

1. 제도화의 기본방향	187
2. 정책과제	189

1. 제도화의 기본방향

우선 가정내 아동돌봄지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원칙임을 밝히면서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Ⅶ-1>은 한국의 아동돌봄 형태에 대하여 시설 대 가정내 보육, 공공 영역 대 민간영역이라는 두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시설과 가정내 보육은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공공영역 대 민간영역은 시설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Ⅶ-1〉 아동돌봄 형태별 제도화 방향

구분		공적 영역(Public)	민간 영역(private)
시설보육 (Institutional -Based Child Care)	현재	-시설평가인증 -보육교사자격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시설평가인증 -보육교사자격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향후	-접근성 강화 -서비스질의 향상	-접근성 강화 -서비스 질의 향상
가정내 보육 (Home-Based Child Care)	현재	없음	없음
	향후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인력관리 -공적 공급체계	-규제 및 감독 -서비스인력관리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급 체계

가정내 보육은 공적 영역에서는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돌봄 형태이며 그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6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전국 65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 민간비영리단체가 공공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단위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을 뿐 공적 영역에서 가정내 보육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민간영역의 가정내 보육 역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베이비시터 업체 문제,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은 영역이다. 특히 민간영역의

가정내 보육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아동돌봄 지원방안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그러나 시설보육과 더불어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와 가정내 보육은 상호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요이기도 하여 보육정책의 틀안에서 대체관계로 설정될수는 없다. 특히 현재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내 보육 수요자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영아보육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정내 보육에 대해 시설보육의 대체라기 보다 보완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VI-1>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수요대비 공급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족 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위상이 시설보육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국가 보육정책에서 보육시설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그 이외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한 선택권 보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다. 그러므로 인력의 양성, 자격 부여,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돌봄인력에 대해 공식적인 자격부여 기관도 없으며, 사후관리도 개별 사업주체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장기적으로 아이돌봄이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이돌보미, YMCA아가야 시간제 보육 등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간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그 이상이다. 현재 상황은 아이돌보미 등 가정내 보육 이용자는 취업모와 미취업모가 혼재되어 있고 이용하는 유형도 보육시설과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음이 사실이며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아동돌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대부분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비교적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구이다. 부모의 선택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보육사업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모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공보육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존의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재 베이비시터 파견, 소개 기능을 하는 기구는 정부의 위탁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영리회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활동하고 서로간의 교류나 협력은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가. 가정중심 아동돌봄 지원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조사에서 하루시간대별 아동돌봄 형태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돌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전 이른시간 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가정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이외의 돌봄형태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유료베이비시터에 대해 전문성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점, 채용시 선정 기준으로 학력보다는 경력과 교육 이수경험을 꼽고 있다는 점은 아동 돌봄지원에 대해 단순한 돌봄이외에 교육적 효과를 함께 기대하는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시설돌봄의 보완재로서 재가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서비스 시간의 다양화

24시간 보육, 주야간보육 등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낮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돌봄 이외에 가족 내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공적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종일제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개발

국가정책에서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상시적으로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보다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에 대한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돌봄으로 인해 취업에 제약이 될 경우 가구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장시간 근로나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의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비용의 다양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유료가정보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측면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비용이 가장 저렴하였고 친인척돌봄, 시설돌봄의 순이었다. 친인척돌봄은 개인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형태로서 향후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의 대안으로 제안할 수 없는 돌봄형태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시설 이용 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에 맞는 가정내 돌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용료 또한 소득수준에 맞게 선택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④ 유료베이비시터의 다양한 시간대 서비스 개발

유료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 등에 서비스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시간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유료가정돌봄시장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규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등록가정보육사제도는 등록된 가정보육사를 이용할 경우에만 아동의 부모에게 소득공제 및 보육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가정보육사에 대해 일정 정도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5인 이하의 아동을 본인의 집에서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지역사회 아동돌봄도우미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수요과 공급을 중개해준다면 민간 영역의 아동돌봄도우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⑤ 시설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병행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경우 월단위로 가정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이것은 수혜자간의 형평성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돌봄시설 이용 시간외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해당 아동당 총 지원액수를 정한 뒤에 시설과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총량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돌봄 이용 실태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기에 이르다고 판단되는 나이, 즉 영아의 경우는 시설돌봄보다는 친인척이나 가족 내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정내 돌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아니어서’ 였음을 고려할 때, 단지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즉 영아시설이 있는 보육원을 이용할 수 없어 친인척이나 전문가에게 돌봄을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 돌봄이라는 동일한 재화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혜택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사람이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는 차등보육료에 서도 알 수 있었듯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인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아이를 시설돌봄에 보내는 경우와 가정내에서 돌봄 혹은 유료가정돌봄을 한 경우를 비교하면서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돌봄일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보는 것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가늠하고자 한다. 향후 서비스이용율 및 이용시간에 대한 시나리오별 추정치, 경제적 지원방안, 그리고 소요재원 분석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50,100 ~ 111,600원을 보육료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만 3살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55,5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원래 만3살 연령대의 아동이 지불하여야 할 보육료는 185,000원 이므로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는 월 129,500원, 연간 1,554,000원 이다. 이 부모의 소득이 월 평균 398만원이라하고, 기타 공제 및 입학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근로자는 자녀의 보육료로부터 약 4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 월 평균소득을 398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연간 소득은 약 4,668만 원이며, 이 금액의 한계세율은 26%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액 $1,554,000 \times 0.26 = 404,040$ 즉, 약 40만원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여기에 보육료 보조금 666,000원 ($=55,500 \times 12$)을 고려하면 연간 약 107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가정내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 즉 완전히 동일한 가구에서 시설돌봄이 아니라 가정내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물리적 비용은 들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지원도 없으며, 세금혜택도 없다. 즉 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비해 약 107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이 가족이 시설과 유사한 서비스로 예상되는 월 185,000정도의 유료 아이돌보미 이용하였다고 하면, 이 경우 연간 비용은 222만원이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한 경우 돌보미 이용료 222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료가 그대로 비용으로 계상된다. 결국 시설돌봄을 이용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이 가구의 경우 시설돌봄을 이용한 가구에 비해 연간 107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이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것 처럼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가정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사이의 보육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는 주로 영유아를 가정내에서 돌봄을 하는데서 기인하는데,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시설보육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보육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 까지는 가정내 돌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이 고려될 필요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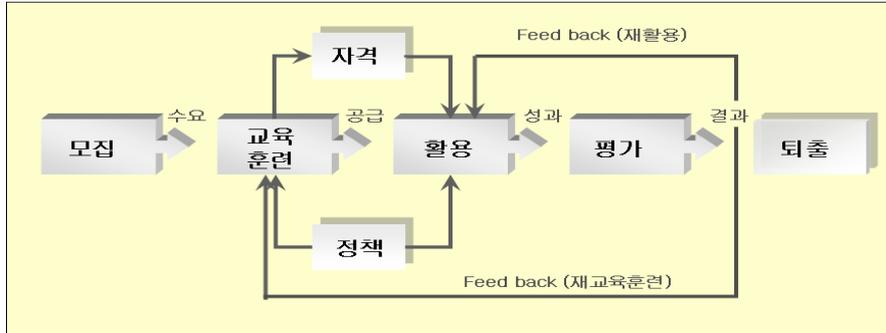
다. 그런데 경제적 형평성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유료가정보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도 노정되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행의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가정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방안

1) 인력관리 모형과 과정

현재의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 시스템은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아동돌봄도우미 노동시장의 미성숙과 이를 관리하는 업체의 영세성 및 제도적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동돌봄도우미의 역할과 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제고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으로 과정 중심의 시스템적 인력관리가 요구된다.

인력관리는 모집으로부터 퇴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그림 VI-1>). 인력관리는 첫째,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으로서 노동 능력의 향상, 노동의욕의 향상, 노동력의 유지 보존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둘째, 비용 절감으로써 원재료, 경비, 시간, 생산비, 영업비,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셋째, 경영 질서의 유지로서 조직의 유지·발전 및 종업원 질서의 유지·안정을 목표로 하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노사관계 질서의 유지·안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만족에는 생활 만족, 직무만족, 직장만족, 기업만족 등이 포함된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도 이러한 인력관리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일련의 과정으로 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림 Ⅶ-1〉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 과정 모형(안)

인력관리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모집(채용) 관리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직무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구해서 배치하는 것을 인력 채용 또는 충원(staffing)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력을 모집(recruitment)한 후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각 지원자를 평가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selection)하고, 그들을 필요한 직무에 배치(placement)하기 까지가 채용 관리의 대상이 된다(임창희, 2008). 따라서 인력관리 활동의 시작은 직무 설계와 분석에서 시작되지만, 인력관리의 실질적 출발은 채용관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의 출발점은 모집이라고 볼 수 있다. 모집단계에서 도우미의 수요와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용관리의 초점은 아동돌봄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는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관리의 주요 초점은 현재 또는 미래에 필요한 도우미 인력을 분석·예측하고, 유능한 인력에 대한 공급원을 개발하여 모집·선발하고, 적합한 수요처에 배치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관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아동돌봄도우미의 모집은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모집·선발하는 관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발 절차가 끝나면 배치와 이동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을 가장 적합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각 아동돌봄도우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성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등급이나 능력향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아동돌봄도우미가 다른 직무나 다른 곳

으로 재배치되는 것을 배치전환이라 하는데, 승진·승급 및 이동 등이 있다. 특히, 승진이나 승급의 경우 인력관리의 동기부여요소가 되므로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관리를 들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직업의 다양화 등 사회변화가 빠르고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아동돌봄도우미도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모집 전후 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도우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아동돌봄도우미 본인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실무를 익혀 자아실현은 물론 자신의 경력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은 아동돌봄도우미의 서비스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직무에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향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더 나은 직무수행을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대상은 신규 아동돌봄도우미는 물론 경력 아동돌봄도우미에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아동돌봄도우미의 학습능력과 학습동기, 그리고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이란 사회적 수요와 아동돌봄도우미 각 개인의 필요성 파악을 의미한다. 아동돌봄도우미의 신분과 욕구에 따라 교육 니즈(needs)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사회의 수요 수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은 <표 VI-2>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표 Ⅶ-2〉 교육·훈련의 다양한 유형

분류기준	구 분	교육·훈련 유형	
교육·훈련 대상	아동돌봄 사업자	작업층 훈련, 관리층 훈련, 임원교육	
	아동돌봄도우미	신입 아동돌봄도우미 교육·훈련, 임시 아동돌봄도우미 교육·훈련, 정규직 아동돌봄도우미 교육·훈련	
교육·훈련 실시 장소	업체 내 교육·훈련	직장 내 교육·훈련 OJT 직장 외 교육·훈련 Off JT	
	업체 외 교육	대학·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교육·훈련 내용	신입 아동돌봄도우미	입직 훈련·오리엔테이션	
	경력 아동돌봄도우미	직무훈련	도제훈련·실습장 훈련
		교양훈련	일반교양강좌·기초훈련
교육·훈련 방법	강의식	직접강의·TV 강의	
	회의식	자유토의·배석토의·담화·분반토의	
	시청각	영화·OHP·컴퓨터·TV 강의	
	참여식	역할연기·감수성 훈련·비즈니스게임·인바스켓 훈련	
	사례연구	토론과 발표	
	자기개발	사외위탁·언어교육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교육자들이나 교육 담당자들에게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훈련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해 개선점이 지적되어 교육·훈련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나 공헌도가 결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 비용 측면, 아동돌봄도우미의 반응 측면, 학습내용 측면, 아동돌봄도우미의 행동변화 측면, 아동돌봄서비스 업체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저임금이 돌봄 현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 관리 중 임금관리는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의 유효성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수준에 따라 유능한 아동돌봄도우미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고, 아동돌봄도우미의 사기가 향상되며, 아동돌봄도우미의 능력개발이 가능해지고, 아동돌봄서비스의 문화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임금관리의 목표와 기준을 보면, 안정성 유지가 중

요한데, 안정성은 아동돌봄도우미들의 생계유지 수단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유지의 필요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배분의 공정성이 필요한데, 배분 공정성이란 회사(업무)에 공헌한 만큼에 해당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 역시 필요하다. 임금결정까지의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나타내는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결정 기준이 되는 정보의 정확성, 임금결정 오류를 항의·수정할 수 있는 제도, 임금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즉 사회 가치관이나 상식수준의 임금산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돌봄도우미 임금관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로 임금 수준(wage level)과 체계 및 형태의 관리를 들 수 있다. 임금 수준 결정시 고려할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국가·사회적 상황과 업체의 현황 및 업계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체계(wage system) 관리는 임금제도를 선정하는 문제로 아동돌봄도우미들에게 임금 총액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업무나 학력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임금구조(wage structure)의 문제로 적절한 기준 설정과 이에 근거한 공정한 배분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임금형태(wage form) 관리는 아동돌봄도우미에게 정해진 임금 총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업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급이 있을 수 있고, 연봉제로 하여 월급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도우미 개인의 만족도나 생활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형태 관리 역시 중요하다.

한편, 복리후생은 아동돌봄도우미의 저임금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복리후생(fringe benefits)은 노동의 대가 이외에,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관리, 지급방식, 지급요구, 지급효과 등에 있어서 임금과 차이가 있다(<표 VII-3>).

〈표 Ⅶ-3〉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이

구별 요인	차 이 점
지급관리	임금은 사원의 업무성과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직접보상이지만 복리후생은 업무성과나 직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간접보상이다.
지급방식	임금은 개별 종업원마다 차등지급 되지만 복리후생은 조직구성원 전체 혹은 집단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다.
지급요구	임금은 요구 없이 당연한 노동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복리후생은 법정복리후생 말고는 종업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
지급효과	임금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 만큼 경제적 이윤을 회사에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경제생활에 사용하지만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인간적 문화생활에 공헌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만족보다는 심리적 만족을 얻고 공동체의식을 높인다.

복리후생은 크게 법적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을 들 수 있다. 법정 복리후생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고, 법정 외 복리후생에는 차량 지원, 식당과 보육시설 운영, 헬스센터 설치, 문화·체육관 운영, 전세지원금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아동돌봄 현장에서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산재관리 역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사고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으로 아동돌봄도우미 선발 시 능력이나 적성·성격 등에 대한 고려, 전문적 기능교육과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안전 관련 보상과 포상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평가는 인사고과로, 평가는 성과향상³⁶⁾과 공정한 보상³⁷⁾, 효과적인 인력계획과 배치³⁸⁾, 아동돌봄도우미의 능력개발³⁹⁾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인사고과)의 관리 기준으로 기준의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등이 중요하다. 타당성은 평가(고과)요소 선정이 고과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타당성 증대를 위해서는 목적별로 고과하거나 평가(고과)집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신뢰성은 고과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

36) 평가를 통한 결과의 피드백은 만족과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

37) 능력급, 성과급, 보너스, 포상, 칭찬을 가리킨다.

38) 효율적인 선발과 방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를 의미한다.

39) 능력개발 유도, 본인에게 강점과 약점 피드백

로 고과 오류방지가 중요한데, 신뢰성 증대 방안으로 상대고과와 절대고과의 적절한 사용과 고과결과의 공개 및 다면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성은 평가(고과)방식과 결과를 피고과자가 인정·수용하는 것으로 수용성 증대 방안은 아동돌봄도우미의 고과 참여와 고과제도 및 방식과 결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용성은 고과에 드는 비용보다 이득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성 증대 방안은 적절한 투자와 평가의 분별력 및 쉽고 짧은 고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에 대한 미래형 인사고과의 방향으로 아동돌봄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고, 업적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 고과가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가점주의와 고과결과를 누적하거나 수시로 고과하여 능력 개발형 평가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안별 고과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퇴출이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조직 또는 업체에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고, 다른 한편으로 인력이 떠나는 것이다. 인력의 퇴출 역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유능한 아동돌봄도우미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무능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은 퇴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돌봄도우미의 경우 퇴출에서 이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직관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직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갖는다. <표 VII-4>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이직은 불만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퇴출기회가 되고, 새로운 인력 채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잔류 도우미에게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등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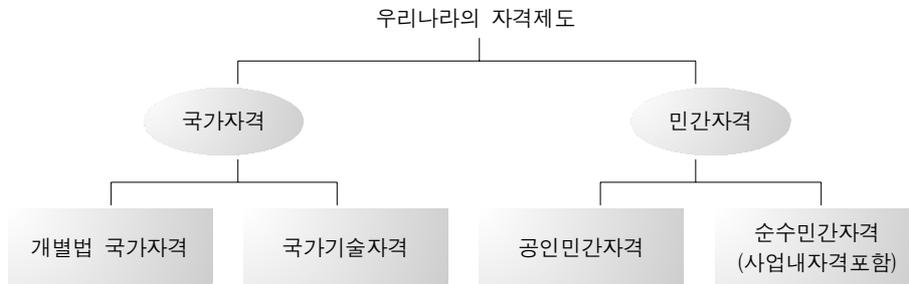
<표 VII-4> 자발적 이직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순기능	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아동돌봄도우미 조직 활성화 · 무능 또는 불만 아동돌봄도우미의 퇴직 · 잔류 아동돌봄도우미의 이동 및 승진 기회 · 인력수급 유연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비용(신규채용, 훈련비) 발생 · 경력 아동돌봄도우미 상실 · 조직 위화감, 불안감 조성 · 잔류 아동돌봄도우미의 업무량 증가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직 원인으로 업무의 환경요인, 업체요인, 직무요인, 인간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있다. 업무의 환경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업체(회사)요인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 직무요인으로 직무(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적 요인으로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교육수준 및 가족부양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직에 대한 대책은 이러한 이직 원인에 대한 파악과 불만 요인의 제거, 교육과 훈련, 직무환경 개선, 제도개선과 관리층의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qualification)이란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주는 주요한 신호기제(signal)로서 교육훈련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의 목표로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닌 직업능력의 증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OECD, 1996; 신명훈 외, 1998). OECD의 자격 개념은 ‘모든 학습의 결과 인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학습이란, 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학교, 대학, 기업 내·외 훈련) 것과 비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 학습 모두를 의미한다(OECD, 2002; 이동임 외, 2003). 따라서 자격의 유형에는 직업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학위, 훈련결과 이수증, 면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구별되는 직업자격을 통상 자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검정(testing service)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격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격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 자격의 유형을 자격의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VI-2>).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과 각종 협회나 관련단체에서 임의로 발급하는 순수민간자격, 그리고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업내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Ⅷ-2〉 우리나라 자격제도 체계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개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으며, 현재 66개 법령에 의해 23부처청위원회에서 128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격으로 19개 소관부처별로 관장하고 있지만, 제도의 총괄 운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 검정실시, 등록관리, 보수교육 등 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동법시행령(제 29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⁴⁰⁾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등록된 민간자격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한하여 국가에서 공인을 받을 수도 있다(국가공인민간자격).⁴¹⁾

국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표 Ⅷ-5>).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주로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격 중 검정을 통해 발급하는 자격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2개의 자격이 있다. 이들 민간자격은

40) 민간자격 등록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검정을 통해 발급하는 자격에 한정한다. 즉,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수료증 형태의 자격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

41)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신청 후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은 후, 공인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아동돌봄도우미 시장이 활성화되고 도우미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성하고자 하면서 도우미가 여성 유망 취업 직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신설되었다. 민간자격은 주로 4~5개 과목⁴²⁾에 대하여 4지 선택형 객관식 검정을 통해 자격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취득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여 배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수요자가 개별 자격 취득자들의 수준 정도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Ⅶ-5〉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

유형	자격(등급)	세부분류	활용
국가자격	보육교사 (1급, 2급, 3급)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영유아보육법)	의무배치자격 (보육시설)
민간자격 ⁴³⁾	아동돌봄도우미 영아전담전문 지도사 (1급, 2급, 3급)	순수민간자격	능력인정자격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을 민간 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격제도가 운영될 수 있고,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경쟁과 국가공인 민간 자격제도를 통해 자격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격 검정을 위한 기관의 인력 및 조직·검정 시행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과 아동돌봄도우미 분야의 전문성 등의 결여로 국가공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발급할 경우 국가공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자격을 활용한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민간자격은 아동돌봄도우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관련 민간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2) 유아교육개론, 유아놀이지도, 유아심리, 유아교육의 실제, 신생아 돌보기

43)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국가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 및 자격검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아동돌봄도우미를 배출할 수 있어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여 아동돌봄도우미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보육교사와 같은 기존의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새로운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을 활용할 경우 보육교사의 직무와 아동돌봄도우미의 직무가 동일한 내용과 수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⁴⁴⁾의 보육⁴⁵⁾,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이 포함되는데, 대상과 직무내용 및 수준에 있어서 아동돌봄도우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돌봄도우미는 가정내에서 만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과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놀이 활동, 보육시설·학교 등 송영서비스, 이용자의 이야기 들어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준에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3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 2급의 경우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동돌봄도우미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40,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졸 이하가 전체의 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아동돌봄도우미 모집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전문 지식보다는 인성, 건강상태, 육아경험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돌봄도우미는 보육교사와 다른 내용과 수준의 직무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을 활용하기보다 아동돌봄도우미 직무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은 보육교사와 달리 특정 기관 또는 시설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법적인 활용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자격의 활용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44)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45) 보육이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재정보조가 보육시설서비스에 국한되고, 이용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서비스는 제외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아동돌봄형태의 시간대별 이용실태와 이용비용 분석, 그리고 도우미의 인력특성 등을 통해 시설과 재가 아동보육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모색하려는 어려운 시도를 하였다. 각각의 개별연구과제 수행결과 발견된 이슈들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분석의 근거자료로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이슈들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대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서비스의 실시를 표방하는 가운데 유급돌봄도우미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양육지원 및 여성의 취업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급돌봄도우미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이용가정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유급돌봄도우미 활용이 없이는 취업유지가 어려운 계층만을 겨냥하여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원칙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총 가용예산의 규모와도 연결되어 있어 총 가용예산의 제약이 큰 상태라면 소득계층과 무관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료돌봄도우미 활용시간에서 시설보육 정규서비스 시간 외나 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시간에 활용도가 높은 경향이 포착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통근시간이 긴 부모의 경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임을 고려할 때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어떻게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로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유료도우미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가정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우미의 고유 업무영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따라서 임금수준, 인력양성과정의 주요 내용, 보수교육의 체계 등과도 관계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호반영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인숙·홍성희. 2000. “기혼취업남녀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71-183.
- 권건일(1996). “영유아보육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집: 121~137.
- 권경옥(2005). “3교대근무 병원 간호사의 자녀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2008. 07. 08)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사업확대로 2만명추가 수혜”. 보도자료.
- 김경혜(1998).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보육 실태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주(2000).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제27권. 제2호: 325~343.
- 김승권 외(2006).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모(2000). “21세기 아동보육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21권.
- 김지경(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_____(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김진·우석진·김현숙(2007). 『합리적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숙(2005).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정책세미나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_____(2006). “영유아 보육재정지출방식: 기존보조금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 제119호. 한국조세연구원.
- _____(2007).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 김현숙·성명재(20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숙·원중학(20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김혜란(2005). “여성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및 효과성 평가: 경기지역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3집: 179-199.
- 나정 외(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업무계획」, 2008.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보고자료.
- 대한민국정책포럼(2008. 05. 07). “아이 맡기는 고민 덜어드립니다”. 보도자료.
- 민혜윤(2003). “기혼 취업여성의 보육실태와 직장보육시설 요구도 조사: 수도권내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2003).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취업모의 보육현황과 보육 욕구도 조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장하(2007). “맞벌이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어린이집 접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섭(1998).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태와 영·유아 보육 정책의 발전방향”. 『복지사회연구』. 제2집: 109~128.
- 백선희(2001). “보육시설에서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5집: 103-130.
- _____(2003). 『한국 아동보육사업의 진단과 과제 -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 백선희·김교성(2001).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7집: 210~237.
- 백혜리(2004). “부천시 공장지역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집』. 제16집: 283-309.
- 백혜숙(2008).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내 영아보육서비스 발전 방안 : 생태학적관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문희(2008). “가정내 보육사업을 통해 본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활성화 방안”. 경기북부보육발전심포지엄. 경기도·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
- 서문희·이상현(2002).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 베이비시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_____(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2007). 『한국의 베이비시터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지미 외(2006).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설치를 위한 연구」. 노동부.
- 송승민(200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 체계 비교: 보육 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기준으로”. 「EU학 연구」. 11(1): 73-97.
- 송주미(2000). “한국보육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0집: 193~219.
- 신명훈 외(1998).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여성가족부(2007). 「보육통계 자료(2006. 12. 31)」.
- _____ (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 _____ (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 _____ (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 _____ (2007. 11. 22). “아이돌보미 사업,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 보도자료.
- _____ (2008). 「2008년 보육사업 안내」.
- 유길상(2006).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추세와 시사점: 호주·미국·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4): 1-25.
- 유희정(2007). “보육정책의 과제: 어디로 가야 하나”.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희정·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2008」.
- 이동임 외(2003).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순형 외(2006).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옥(2000). “한국 영유아보육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3집: 1-24
- 이옥 외(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 이옥·노성향·유정희(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제18집 2호: 67~88.
- 임윤옥(2007). 「효과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제안」. 한국여성노동자회.
- 임창희(2008). 「인적자원관리」. 비엔엠북스.
- 장혜경 외(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12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 장혜경·홍승아·김영란·이상원·강은화·김고은(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외(2006). 「돌봄노동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홍승아·김영란·이상원·강은화·김고은(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김혜영·홍은아 외(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영국, 프랑스·호주·핀란드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장혜경·김영란·조현각·김고은·박경희(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전병휴 외(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노동부.
- 전형준·이만우(2006).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21(1): 207-234.
- 정민자 외(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정재훈(2005). “돌봄노동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을 통해 본 한국형 복지국가 유형 연구”. 「사회복지연구」. 27권.
- 조성은(2007). “2007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보고 및 평가토론회.
- _____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윤영·김정호(2008).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KDI정책포럼」. 제195호.
- 조정신·황성원(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36: 45-72.
- 지성애·백선희·채영란(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제도”. 「유아교육연구」. 27(5): 135-155.
- 최보가·문경영(200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대한가정학회지」. 42(1): 39~51.
- 최재성·장신재(2001).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조명한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제도의 성격에 관한 소고”. 「한국아동복지학」. 11(1): 125-150
- 표갑수(1997). “한국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2집“ 57~76.
- 표갑수·백선희(1998). “아동보육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 「한국영유

- 아보육학」. 제13집: 139~175.
-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교육이론과 실천」. 12(1).
- 현진권(2004).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March, 1996). Child Care Australia, Act No.4402.0, Canberra.
- Beaujot, Roderic(1997). “Parental Preferences for Work and Childcare”. Canadian Public Policy / Analyse de Politiques. 23(3): 275-288.
- Capizzano, J. & Adams, G.(2000). *The number of child care arrangement used by children under five: Variation across states. Number B-12 in Series, New Federalism: National Survey of American's Families*, Urban Institute.
-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Plan for RHODE ISLAND FFY 2008-2009
- Cleveland, G. and M. Krashinsky(2003).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Discussion paper.
- Commonwealth Dep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2000).
- Daly, M & Lewis, J.(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March). *Australian Economic papers*.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6). *Employment in Social Care in Europe*.
- Fine-Davis, M.(2004). *Fathers and Mothers: Dilemmas of the work-life bala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ILO(2004). *Government Programmes in France*. National Family Allowance Office. www.ilo.org
- 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2007). *INA Nanny Salary and Benefits Survey 2003-2004 Part I*.
- Kalenkoski, C. D. R. & Stratton, L.(2005). “Parental Child Care in Single Parent,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 Families: Time Dairy Evidence from the United Kigdom”. American Economic Review. 95(2).
- Krashinsky(1998). *The Benefit and Costs of Good Child Care: The Economic*

- Nationale for Investment in Young Children: A Policy Study*. University of Toronto.
- Lokshin, Michael(2004). "Household Childcare Choices and Women's Work Behavior in Russia". *Journal of Human Resources*. 39(4): 1094-1115.
- Martin, C. A. Math, & E. Renaudat(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d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 Morgan, G. et al(2001). *Non-Licensed Forms of Child Care in Hom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State Support.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OECD(1999).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Norway*.
- OECD(1999).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 OECD(2000).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 OECD(2000).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OECD(2004).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 OECD(2006). *Start Strong II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Powell, Lisa M.(1997). *The Impact of Child Care Cost on the Labour Supply of Married Mothers: Evidence from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0(3): 577-594.
- Powell, Lisa M.(2002). *Joint Labor Supply and Childcare Choice Decisions of Married Mother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7(1): 106-128.
- RI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Sayer, L. S. B. & Robinson, J.(2003).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Shriner, M., Schlee, B. M., Mullis, R. L., Cornille, T. A., & Mullis, A. K.(2008).

- Family Home Childcare Providers: A Comparison of Subsidized and Non-subsidized Working Environments and Employee Issu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2): 165-176.
- U.S. Census Bureau,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Winter 2002.
- Wilson, V., Hall, S. & Davidson, J.(2007). *Do the Benefits Justify the Costs?: An Evaluation of the 'Sitter Service' in Scotland.* Children & Society. 21: 214-227.
- Zick, C.(1996). *A new look at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Primary and Secondary Time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 260-280.
- 黃志成(1999). 幼兒保育概論(Early Childhood Care). 臺北：揚智.
- 郭靜晃・黃惠如(2001). 托育家政的管理與佈置(The Management andl Setup of Daycare Families). 臺北：揚智.
- 流翠華(2007). 托育服務概論：政策，法規，趨勢(Day Care Services: Policies, Regulations and Trends). 臺北：揚智.
- 日本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ッター協會(2007). 베이비시ッター利用 가이드.
- 日本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ッター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ッター協會 15年 あゆみ
- 日本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ッター協會(2007). 2006 베이비시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 日本 財團法人 ども未來財團(2007). 베이비시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 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12feb20041500/edocket.access.gpo.gov/cfr_2004/julqtr/pdf/29cfr552.1.pdf
- <http://www.americannannyjobsearch.com>
- <http://blog.naver.com>
- <http://www.babysitter114.com>
- <http://www.babysos.com>
- <http://www.bestbear.co.uk>
- <http://www.bumomaum.co.kr>
- <http://www.civilnet.net>
- <http://www.dir.nsw.gov.au/rights/employer/relation/parttime.html>

216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1)

<http://www.idolbom.or.kr>

<http://www.irang.co.kr>

<http://www.kinds.or.kr>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_7143-20878--,00.html

<http://www.nanny.org>

<http://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http://www.nannytaxusa.com>

<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http://www.sitters.co.uk>

<http://www.suffolk.gov.uk>

<http://www.women-net.net/index.jsp>

<http://yfs.org.au.legal>

Abstract

A Study for Systematising Plans of Carework in Childcare within Families

Hye-Kyung Chang
Young-Ran Kim
Phil-Sook Kim

The policy for child care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services. Although the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services have been helpful to many households who raise children, it is still not sufficient for the households who have individualized demands for child care. Although home-based child care may cover those individualized and various demands as a complement for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it couldn't be the center of political interest for child care so far.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plans to support home-based child care.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with home-based child care were

surveyed by KWDI, KIPF and KRIVE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verse demands for child care that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services can hardly meet. For example, the parents need the home-based child care services after the facilities are closed because of night shifts etc. But unlike the institutional-based care services,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for using the home-based child care services provided from nonofficial companies. For procuring equity in using different types of care services, the financial support need to be offered to the households who employ home-based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providers(companies and each individual caregiver) of home-based child care services in nonofficial area are also surveyed.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panies and the caregivers suffer financial problem and low wages respectively. For managing the human resources of home-based child care systematically,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home-based child carers needs to be promoted.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8-01
2008 연구보고서-13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77-9 94330 <정가 13,500 원>
978-89-8491-276-2 94330 (세트)